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일 시 2020. 6. 16.(화) 14:00 ~ 17:00

장 소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 일시: 2020. 6. 16.(화) 14:00~17:00
- 장소: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3층)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10	개회사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좌장 : 서창록 (한국인권학회 회장)		
14:10~14:50	1. 국가인권통계 추진 배경 및 경과	·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2.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분석 -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3. 2019년 한국의 인권통계 분석 -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14:50~15:00	휴식	
지정토론		
15:00~16:30	1.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주운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 · 이희길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3.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센터장)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16:30~17:00	종합토론 및 마무리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준비해 주신 한국 인권학회 서창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를 담당해주실 한준 교수님과 국가인권통계 연구진, 모든 토론 참여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는 인권의식도 높아지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새로운 인권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권환경과 요구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세부화된 통계의 생산·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통계 모델을 개발·체계화하여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운영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인권지표와 인권지수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통계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인권통계로는 최초로 국가 통계로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및 차별피해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실태조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작년에 실시한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인권 통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실태조사>는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담긴 함의와 시사점을 짚어 보고 공신력 있는 국가인권통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위원회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계에서 국가인권통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뤄져 궁극적으로 인권정책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한국인권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목 차

주제발표1. 국가인권통계 추진 배경 및 경과	1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주제발표2.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분석	11
-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주제발표3. 2019년 한국의 인권통계 분석	131
-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지정토론 1.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173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179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82
 지정토론 2.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189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	192
이희길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195
 지정토론 3.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센터장)	201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204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207

주제발표

1. 국가인권통계 추진 배경 및 경과
2.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분석
 -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3. 2019년 한국의 인권통계 분석
 -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1. 국가인권통계 추진 배경 및 경과

-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국가인권통계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가. 국내

- ‘통계에 기반한 정책’ 입안 및 평가는 국가정책에 필수적 사항이나, 현재 인권통계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인권상황과 시계열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움.
 - ※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과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관련 통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인권상황을 요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권통계의 체계적 작성이 매우 중요함.
- 국회에서도 ‘선제적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통계모델을 개발·체계화하여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운영체계’(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국가 인권 수준 제고’(2018년도 제363회 임시국회 국회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시함.
- 위원회는 2008년 사회권 지표 개발 시도, 2011년부터 인권지수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도함.

<위원회 인권지표(지수)·인권통계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연구명	연구기관	주요 결과
2008	사회권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강대 산학협력단	사회권 85개 지표 작성
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196개 지표 설정 지수 구성 방법론 제안
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구축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지수 측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안 인권지수의 지표체계 제안
2013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84개 지표 선정
2014	국가인권지수 모의 측정 및 관리 방안		선행연구 지표(84개) 검증최종 지표 79개 선정
2015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410개 지표 선정
2017	인권통계 생산 및 축적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조사연구학회	410개 지표 실제 값 산출 110개 주요 지표 선별
2018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용역	한국삶의질학회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인권통계 454개 발굴 국가인권실태조사 조사표(안) 마련
2019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 용역		국가인권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등 454개 발굴 통계표 검토 및 재구성(최종 318개)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나. 국제

- 세계인권대회(1993년 비엔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실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 검토를 권고함.(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V. 이행 및 감시방법. 1993)
- 2012년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인권지표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국 정부가 인권지표를 수립하도록 함. (『인권지표 : 측정과 이행을 위한 가이드』, 2012)

-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통계 생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2019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쟁점 6.)
-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기본권위원회의 아동권리지표, 장애인 정치적 참여 권리 통계, 캐나다인권위원회의 평등권 통계, 여성권리지표, 덴마크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리지표, 영국인권위원회의 평등과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가 있음.

2. 주요 추진 경과

- 국가인권통계 개발은 2018년 4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통계청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협력 사업으로 추진함.
- 국가인권통계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함. 하나는 대한민국 거주자들의 ‘인권 의식’,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피해 경험’, ‘인권 관련 쟁점’ 등을 조사하여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가인권통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향은 기존 국가통계로부터 자료수집 및 지표작성을 통하여 국가인권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18년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확정, 인권통계 발굴, 국가인권실태조사 조사표(안)을 마련함.
- 2019년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8월 4일 국가통계로 승인받음.

3. 핵심 성과

가.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및 인권통계 생산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결과물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2018년과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와 이에 대한 인권통계를 생산하게 됨.

<인권영역별 인권통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거버넌스(37)	평등권(7)	정치참여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30)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1
		양심의 자유	0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19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3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67)	시민·정치적 권리(67)	안전할 권리	51
		사생활 보호 권리	8
		공정한 재판 권리	4
		사법적 구제 권리	3
		임의 체포와 구금	1
물질적 생활수준(2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4)	사회안전망 권리	18
		인권과 빈곤	6
주거와 교통(35)	시민·정치적 권리(10)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5)	적절한 주거 권리	25
가족(4)	시민·정치적 권리(4)	가정폭력	4
노동(68)	평등권(29)	고용에서의 평등	17
		노동조건의 평등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39)	일할 권리	7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2
건강(54)	평등권(7)	보건서비스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9)	생명권	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38)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적절한 식생활 권리		6
	의료 접근권		15
	모성 및 아동 보호		4
교육(32)	평등권(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4)	교육선택의 자유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3)	교육받을 권리	23
문화·미디어·정보(39)	평등권(23)	다양성 존중	23
	시민·정치적 권리(0)	표현의 자유	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16)	문화적 생활 권리
	정보 접근권		3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환경(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13)	쾌적한 환경 권리	11
		식수 및 위생 권리	2
가치와 의식(8)	-	인권실태 평가	4
		인권 인식과 교육	4
합계			381

※ () 안은 해당 인권영역 및 권리유형으로 분류된 통계 수

권리유형 통계 건수 : 평등권 71건, 시민·정시적 권리 163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73건
 '0'은 미발굴된 통계

나. 통계청과의 공동연구협력 추진

- 국가통계 전담 기관인 통계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 전담 인력의 부재 공백을 메우고 공동으로 국가인권통계 구축 기반을 마련함.
- 통계청에서 국가인권실태조사를 2년간(2019~2020년) 대행함으로써 통계 기획, 표본 설계, 조사 실시 등 조사통계 개발 전 과정에서 통계청의 전문적 조력 상시 확보함.

다.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 및 실시

-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 실시 기반 조성
 통계청의 품질관리를 통한 조사의 대표성·신뢰성 제고 기반을 마련함.
- 2019년 대한민국 최초 전국단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표 인지실험을 통해 조사표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사전조사, 전문가 자문, 국립국어원 감수 등의 절차를 진행함.
 - (조사기간) 2019. 8. 20. ~ 9. 2.(14일간)
 - (조사대상) 국내 거주 19세 이상 개인(7,443가구의 가구원 13,978명)
 - (조사내용)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피해 경험, 인권 관련 쟁점, 인권교육 및 개선 등 종합적인 실태 파악

라.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을 기반으로 국가인권통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취약했던 업무의 연속성과 집중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인권통계 예산 및 전담인력>

구분	예산	전담 인력
2019년	600백만원	-
2020년	690백만원	1명(임기제 6급)

4. 향후 계획

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기관과의 협력 추진

-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일반 조사이며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에 이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지속적인 국가인권통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추진 사업의 연도별 일관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채널을 확보하고, 국가인권통계 구축 및 활용 전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권 및 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다. 국가인권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안정적인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인권통계 생산, 관리, 총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며, 위원회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통계표의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과 총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사회보장 통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통계 제출의 법적 근거 마련

제32조(사회보장통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라. 인권지표 및 지수 개발 추진

- 안정적인 국가인권통계 생산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선정하여 인권지표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인권지수 개발에 노력하고자함.

2.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분석

-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분석

-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 인권상황의 변화 :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목 차

1. 머리말	14
2. 분석 방법	15
3. 인권인식	15
4. 인권침해	39
5. 차별 경험	70
6. 인권 관련 쟁점	84
7. 혐오표현 경험	107
8. 인권 교육 및 개선	114
9. 결론	128

1. 머리말

- 한국 사회는 식민지 시기와 권위주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 경험이 많았으며 독립과 민주화 이후 인권 침해의 과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광범하게 이루어져 왔음
- 한국은 민주화 이후 국제인권 규범의 영향과 함께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1966년 채택 및 1976년 발표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에 1990년 가입했음
- 주요 주제 및 집단별 협약으로 한국은 인종차별철폐 협약(1978), 여성차별철폐협약(1984) 가입에 이어 아동권리협약(1991)과 고문방지협약(1995), 장애인권리협약(2008)에 가입했음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정책적 노력의 주체가 만들어짐
- 정책 노력의 결과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인권지수(Fariss, 2019)에서 한국은 1990년 183개국 중 122위로 열악했던 인권상황이 2000년 193개국 중 91위로, 2010년에는 194개국 중 57위로 개선. 반면 이후 악화되기 시작해 2017년 195개국 중 67위로 후퇴.
- 최근 정부는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각종 차별과 성폭력, 고용 및 계약관계에서의 부당행위, 청년층 중심의 불공정에 대한 비판 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의 압축적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임. 2000년 정치 집권세력 주기적 변화, 소수자 중심 사회운동 발전, 고용관계 재편에 따른 노사문제 개인화 등의 변화의 영향이 인권상황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는 다양하지만 객관적 자료의 한계와 정보의 신뢰성 등의 이유로 단일 자료를 이용하여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음. 국가인권실태 조사는 이러한 자료 제약의 개선과 보다 종합적 평가를 위한 시도임
- 인권실태 혹은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는 일반 종합사회조사의 일부로 실시된 경우 (KGSS 2011, 2018)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의식에 대해 실시한 조사(2005, 2011, 2016)가 있음. 국가인권실태조사가 2019년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통계청 대행으로 실시됨

-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의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인권상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2. 분석 방법

- 본 심층분석 보고서는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의견 및 평가와 경험,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음
- 국제 비교 및 시계열적 추세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및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음. 비교 결과의 통계적 검정은 국제 비교의 경우 원시자료가 가용하지 못하고, 시계열적 추세의 경우 표집 및 조사방법의 상이함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워 적용하지 못하였음
- 배경변수별 문항 분석에서는 리커트 척도 문항들에 대해서는 교차표 분석 및 집단별 평균 비교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변수와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변수, 그리고 사회 및 개인에 대한 선호가치 등이 포함됨
- 추가적으로 대응분석과 회귀분석이 보다 심층적 분석을 위해 적용되었음. 대응분석은 범주형 배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2차원 평면에서 근접성으로 표현하는 분석임. 회귀분석은 다양한 배경변수들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사용하였음

3. 인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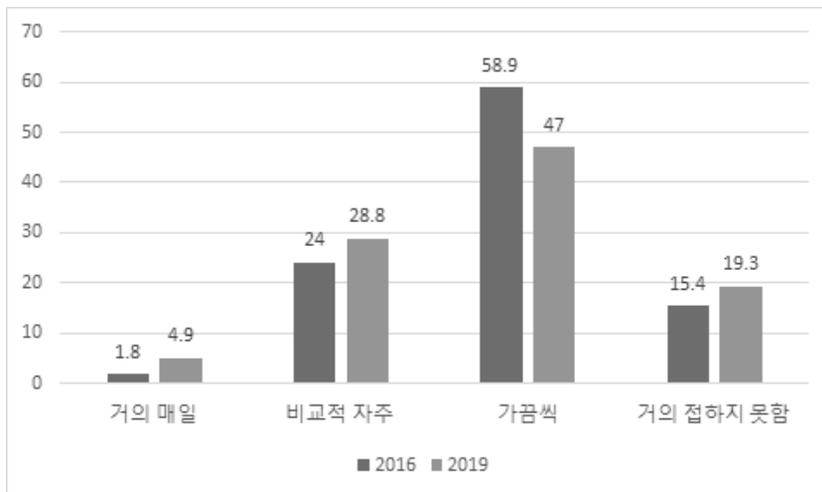
3.1. 인권에 대한 관심

3.1.1. 인권에 대한 관심의 변화

- 인권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발전하기보다는 인권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 저항을 통해 발전해 왔음. 따라서 인권에 관한 관심 증가는 인권의 보호와 존중의 확대에 필요한 조건임

-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자주 접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1에서 보듯이 2016년과 2019년 사이 거의 매일(1.8%→4.9%) 혹은 비교적 자주(24%→28.8%) 접했다는 비율과 거의 접하지 못했다(15.4%→19.3%)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가끔 접했다(58.9%→47%)는 비율은 감소.
-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은 집단과 관심이 거의 없는 집단이 각각 조금씩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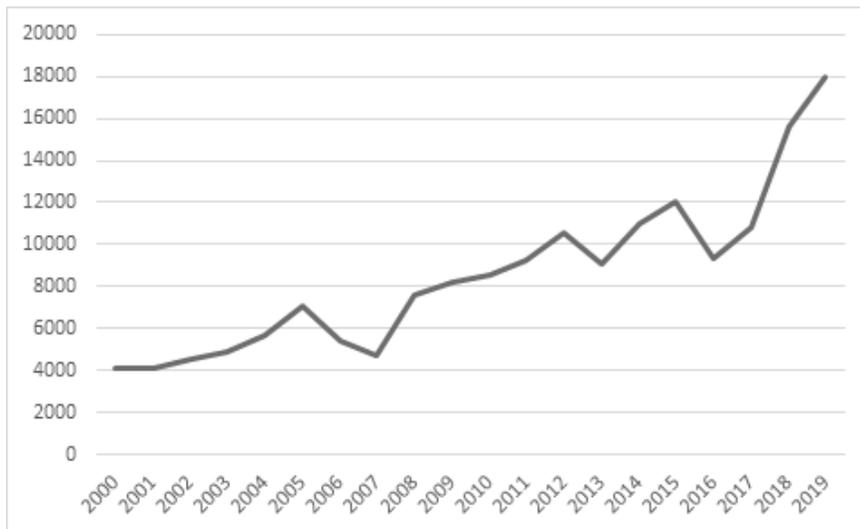
[그림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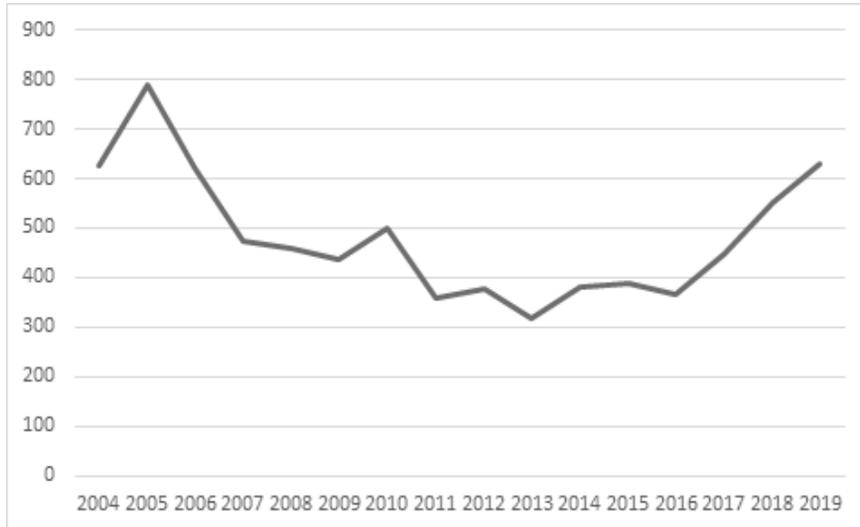
- 중앙 일간지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를 언론진흥재단 DB를 통해 살펴본 아래 [그림 3.2]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신문의 언급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2017년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짐
- Google trend 검색을 통해 ‘인권’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검색된 횟수를 보여주는 [그림 3.3]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관심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
- 신문 지상에서의 ‘인권’ 언급 횟수가 일반 독자들이 ‘인권’을 접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Google을 통한 검색은 더 적극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2] 중앙 일간지에서 ‘인권’ 언급 횟수의 추이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DB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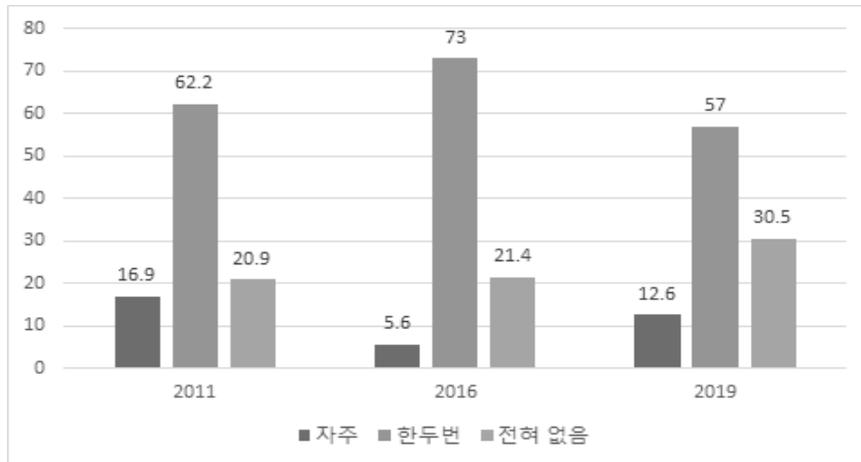
[그림 3.3] Google에서의 국내 이용자 '인권' 검색 횟수



출처: Google trends 검색

- “UN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를 물어본 것에 대한 2011년, 2016년, 2019년의 응답 분포를 비교한 [그림 3.4]에 따르면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계속 증가했음(20.9%→21.4%→30.5%)
- 2016년과 2019년 사이 자주 들어보았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5.6%→12.6%)한 반면,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73%→57%)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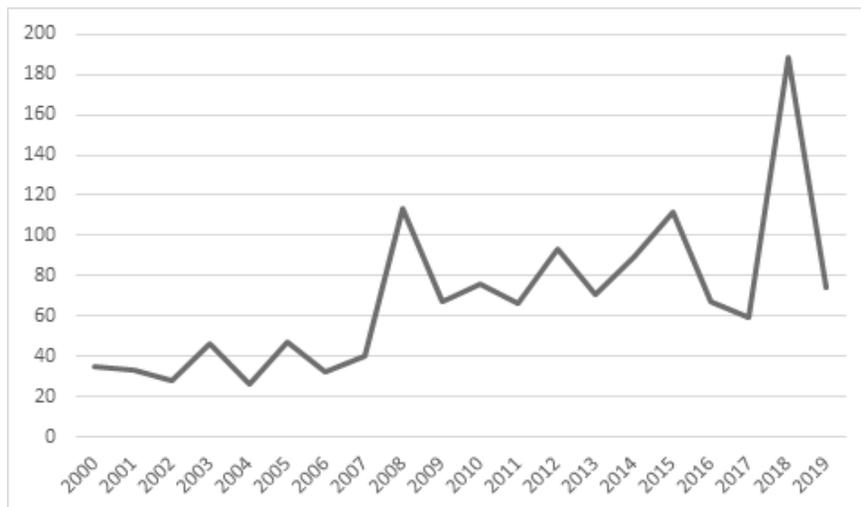
[그림 3.4] ‘세계인권선언’을 들어본 비율의 변화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세계인권선언’이 중앙 일간지에 언급된 횟수를 나타낸 [그림 3.5]를 보면 ‘인권’의 언급 횟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8년과 2018년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과 70주년이었다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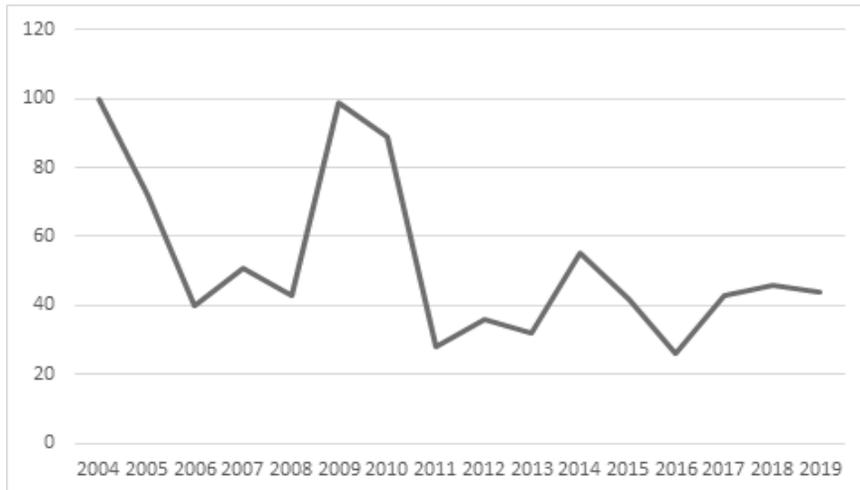
[그림 3.5] 중앙 일간지에서 ‘세계인권선언’ 언급 횟수의 추이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DB 검색

- 언론의 ‘세계인권선언’ 언급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달리 Google의 ‘세계인권선언’ 검색 횟수는 2009~10년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임

[그림 3.6] Google에서 ‘세계인권선언’ 검색 횟수의 변화



출처: Google trends 검색

3.1.2. 인권에 대한 관심의 배경변수별 차이

- 20대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지 않았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접한다고 응답했음
- 이는 40대 사이에서 60대 사이의 여성들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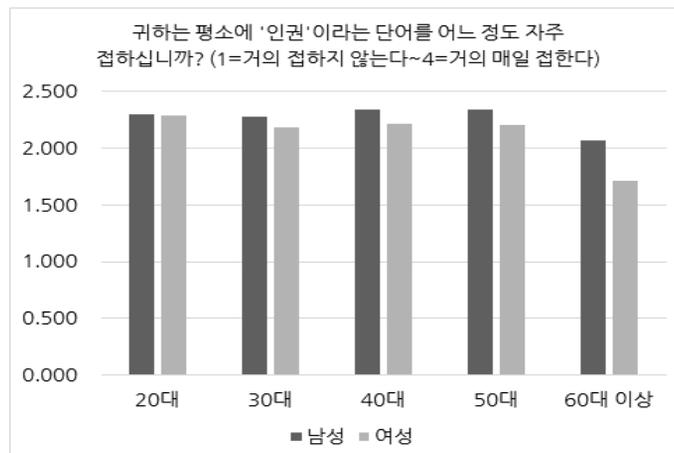
<표 3.1>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자주 접하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303	0.013	0.038	0.348	0.728
20대 여성	2.290				
30대 남성	2.279	0.090*	0.035	2.592	0.010
30대 여성	2.189				
40대 남성	2.342	0.129***	0.030	4.246	<0.001
40대 여성	2.213				
50대 남성	2.345	0.140***	0.030	4.626	<0.001
50대 여성	2.205				
60대 이상 남성	2.068	0.350***	0.024	14.467	<0.001
60대 이상 여성	1.718				

*p<0.05 **p<0.01 ***p<0.001

1) 1=거의 접하지 않는다 ~ 4=거의 매일 접한다

[그림 3.7]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자주 접하십니까?



□ 20대, 30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접해본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지 않았음. 40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세계인권선언을 더 자주 접한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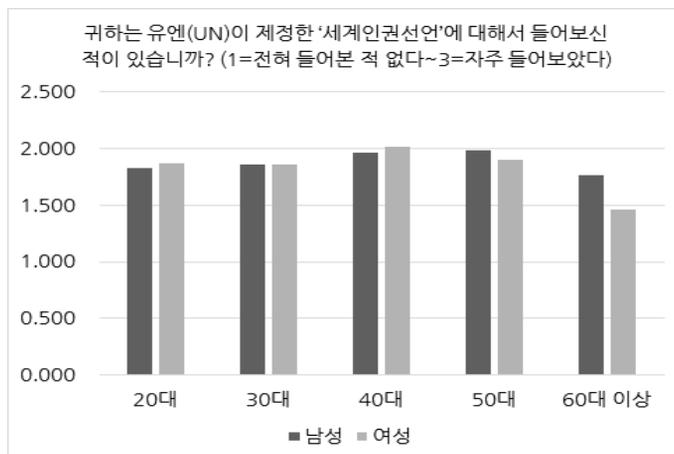
<표 3.2> 귀하는 유엔(UN)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1.833	-0.035	0.030	-1.148	0.251
20대 여성	1.867				
30대 남성	1.859	-0.001	0.027	-0.023	0.982
30대 여성	1.859				
40대 남성	1.963	-0.058*	0.023	-2.559	0.011
40대 여성	2.021				
50대 남성	1.988	0.087***	0.024	3.682	<0.001
50대 여성	1.901				
60대 이상 남성	1.771	0.306***	0.019	15.899	<0.001
60대 이상 여성	1.465				

*p<0.05 **p<0.01 ***p<0.001

1) 1=전혀 들어본 적 없다 ~ 3=자주 들어보았다

[그림 3.8] 귀하는 유엔(UN)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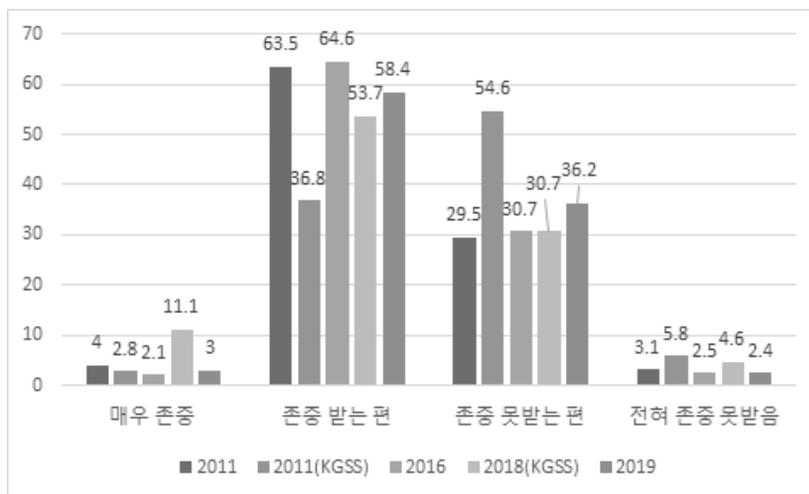


3.2. 한국의 전반적 인권상황 평가

3.2.1. 전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의 변화

-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11년 KGSS를 제외하면 대체로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존중 못받는다는 응답을 60 : 40 정도 비율로 앞서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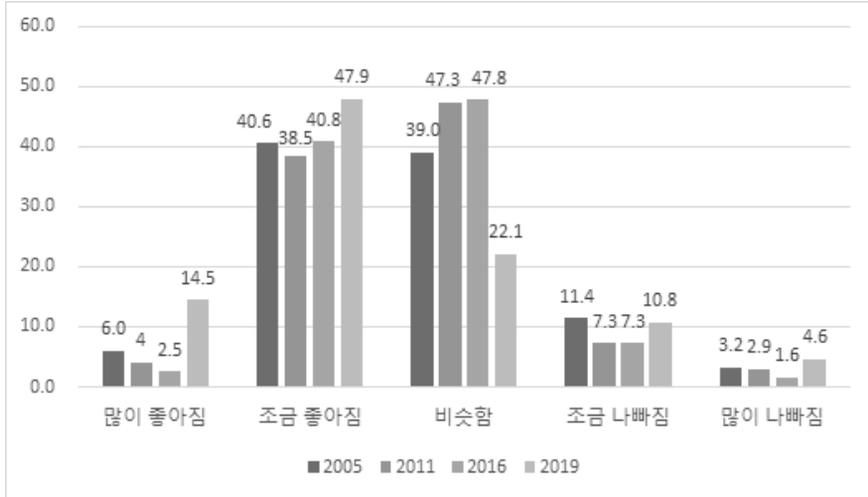
[그림 3.9] 한국의 전반적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지 변화



자료: KGSS(2011, 2018),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빠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05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증가(46.6%→62.4%)한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은 감소함(39%→22.1%). 나빠졌다는 응답은 큰 변화가 없음

[그림 3.10] 인권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의 변화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3.2.2. 전반적 인권상황 평가의 배경변수별 차이

- 30대, 40대, 50대에서는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지 않았음.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본인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성별 인권에 대한 인식차이가 세대로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20대 여성의 경우는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성평등 의식이 높기 때문에 취업시 여성이 좀 더 저임금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취업하는 경향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임. 60대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고등교육의 혜택을 젊은 세대에 비해서 덜 받고,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인 성역할 분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대해서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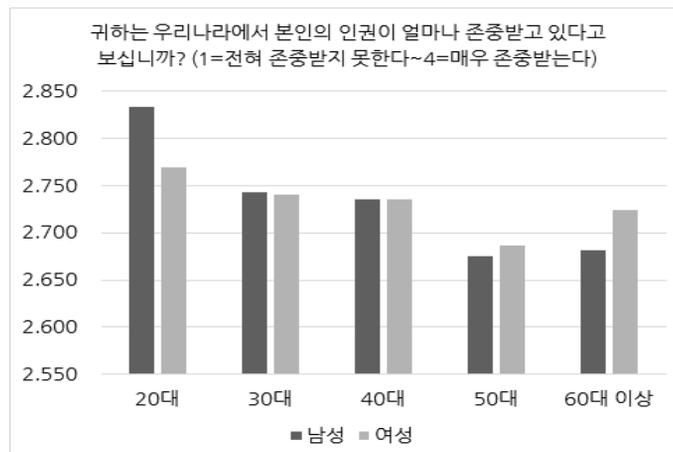
<표 3.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834	0.065*	0.027	2.354	0.019
20대 여성	2.769				
30대 남성	2.743	0.002	0.023	0.099	0.921
30대 여성	2.741				
40대 남성	2.735	0.001	0.020	0.028	0.978
40대 여성	2.735				
50대 남성	2.675	-0.011	0.022	-0.506	0.613
50대 여성	2.686				
60대 이상 남성	2.682	-0.042*	0.017	-2.430	0.015
60대 이상 여성	2.724				

*p<0.05 **p<0.01 ***p<0.001

1) 1=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 4=매우 존중받는다

[그림 3.11]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 20대, 30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응답한 정도에 성별 차이가 나지 않았음.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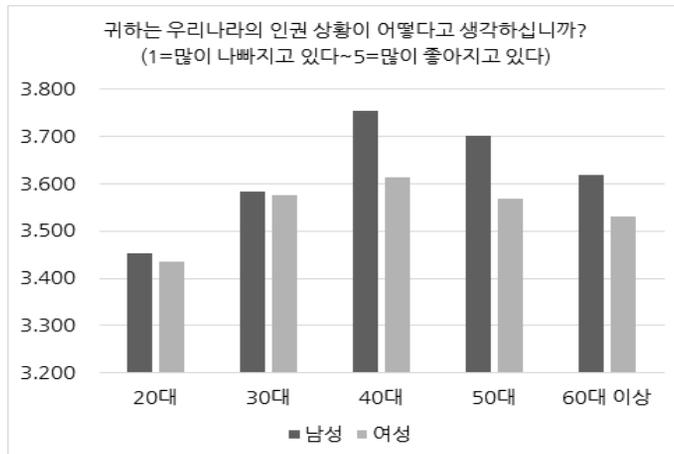
<표 3.4> 귀하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3.454	0.018	0.051	0.348	0.728
20대 여성	3.436				
30대 남성	3.584	0.008	0.045	0.167	0.867
30대 여성	3.577				
40대 남성	3.754	0.139***	0.038	3.670	<0.001
40대 여성	3.615				
50대 남성	3.702	0.135***	0.038	3.508	<0.001
50대 여성	3.568				
60대 이상 남성	3.620	0.089**	0.031	2.909	0.002
60대 이상 여성	3.531				

*p<0.05 **p<0.01 ***p<0.001

1) 1=많이 나빠지고 있다 ~ 5=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림 3.12] 귀하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3. 인권의식

3.3.1. 인권의식의 개념과 모형

1) 인권의식의 중요성

-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식, 즉 개인이 인권에 대하여 갖는 의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됨
- 인권 개념 자체가 개인을 모태로 형성되었고 인권의 핵심에 개인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
-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인권의식이 중요함. 인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식수준이 높고 인권에 호의적이면 인권정책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행됨

2) 인권의식의 개념과 차원

- 인권의식이란 개인이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것을 의미함
- 인권의식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각성으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태도’를 의미함. 태도는 “어떤 대상 또는 대상들의 집합에 대해 일관적으로 호의적/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Allport, 1935)으로서, 인지-정서-행동으로 구성.
 - ① 인권의식의 인지적 요소: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대상에 대한 사실과 신념들이 포함됨
 - ▶ 인권지식
 - ▶ 인권판단: 인권 관련 상황을 평가함
 - ② 인권의식의 정서적 요소: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감성으로서 인권에 대한 공감과 감수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포함됨
 - ▶ 인권감수성
 - ▶ 인권지지, 인권헌신

③ 인권의식의 행동적 요소: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나 의도를 뜻하는 것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함

- ▶ 인권옹호
- ▶ 인권(개선)활동

3) 인권의식의 요소와 측정

□ 인권의식의 요소와 측정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인권인지	인권평가	인권지지	인권감성	인권옹호	인권활동
문1 인권 용어 접촉 빈도 문2 세계인권선언 인지도	문8-9 인권침해/차별의 심각성의 심각성 문12 자유권, 사회권 존중도	문21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지지도	문24-25 사회적 거리감: 이웃/친구 문25 사회적 거리감: 정치적 대표자	문28-29 자신과 타인의 인권옹호	문34 인권개선 참여 활동

□ 인권의식의 측정값 계산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인권인지	인권평가	인권지지	인권감성	인권옹호	인권활동
문1-2 값을 역환산해서 평균	인권침해차별 심각성: 문8-9 값을 역환산해서 평균 인권판단: 문12 값을 역환산해서 평균(자유권 판단, 사회권 판단)	문21 값을 인권친화적으로 환산해서 평균	사적 개방성: 문24-25의 평균 공적 개방성: 문25의 평균	문28-29 값을 역환산해서 평균	문34 참여활동의 횟수 합산
범위 1~4					범위 0~7

4)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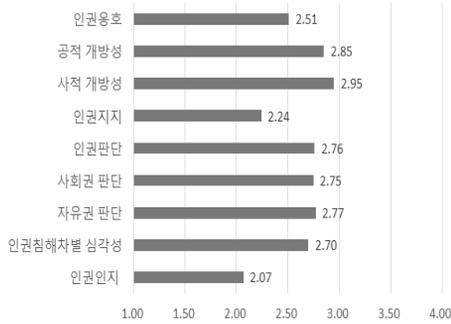
- 인권의식은 도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덕성 발달을 높이는 요인이 인권의식을 높이는 요인임
 - ▶ 성별(여성), 연령, 교육수준, 종교 등
 - ▶ 정치적으로 리버럴 성향이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와 상관성을 보이고 보수주의, 편견적 태도는 인권 제한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임
- 인권의식의 문화적 전파를 무시할 수 없으며, 국제인권규범의 확산이 인권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
 - ▶ 인권교육(세계시민의식)

3.3.2. 인권의식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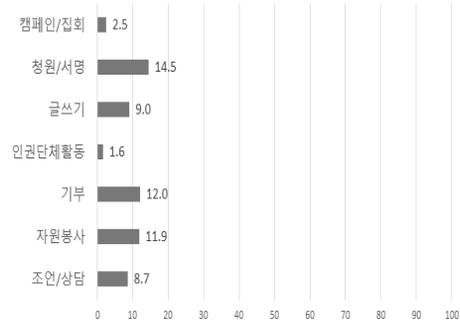
1)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인권의식 수준

- 평균 범위가 최소 1점~ 최대 4점이므로 3점 이상이면 높은 인권의식, 2점 이하면 낮은 인권의식으로 간주함. 인권의식의 각 요소들의 평균이 모두 3점 이하로 별로 높지 않은 수준임. 특히 인권인지, 인권지지, 인권옹호의 평균이 다른 요소들보다 더 낮은 상황이고, 인권활동의 평균은 0.60점(7점 기준)에 불과함. ‘지난 1년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각 인권활동의 참여율은 모두 15% 이하로 매우 낮음
- 인권에 대한 인지수준은 2.07점으로 ‘모른다’ 쪽에 가까움. 인권이라는 용어를 ‘가끔씩 접하거나’(47.0%), ‘거의 접하지 않는’(19.3%) 것으로 나타남.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한두번 들어보거나’(58.9%),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25.3%) 상황임. 인권쟁점에 대한 태도는 2.24점으로 인권에 지지적이지 않음. 오히려 ‘사형제도 유지’(86.0%),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95.0%), ‘국가보안법 유지’(77.4%), ‘학생 체벌 허용’(66.3%) 등의 의견을 보임. 반면 타인에 대한 개방성(사회적 거리감의 逆)은 3점(‘불편하지 않음’)에 가까워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임

[그림 3.13] 인권의식 요소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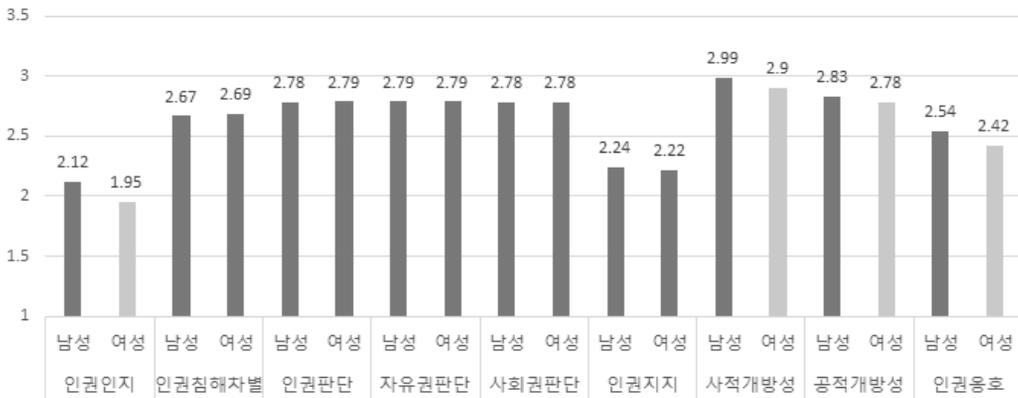
[그림 3.14] 인권활동 참여율(%)



2) 연령 코호트 효과: 가장 취약한 노인의 인권의식이 가장 낮은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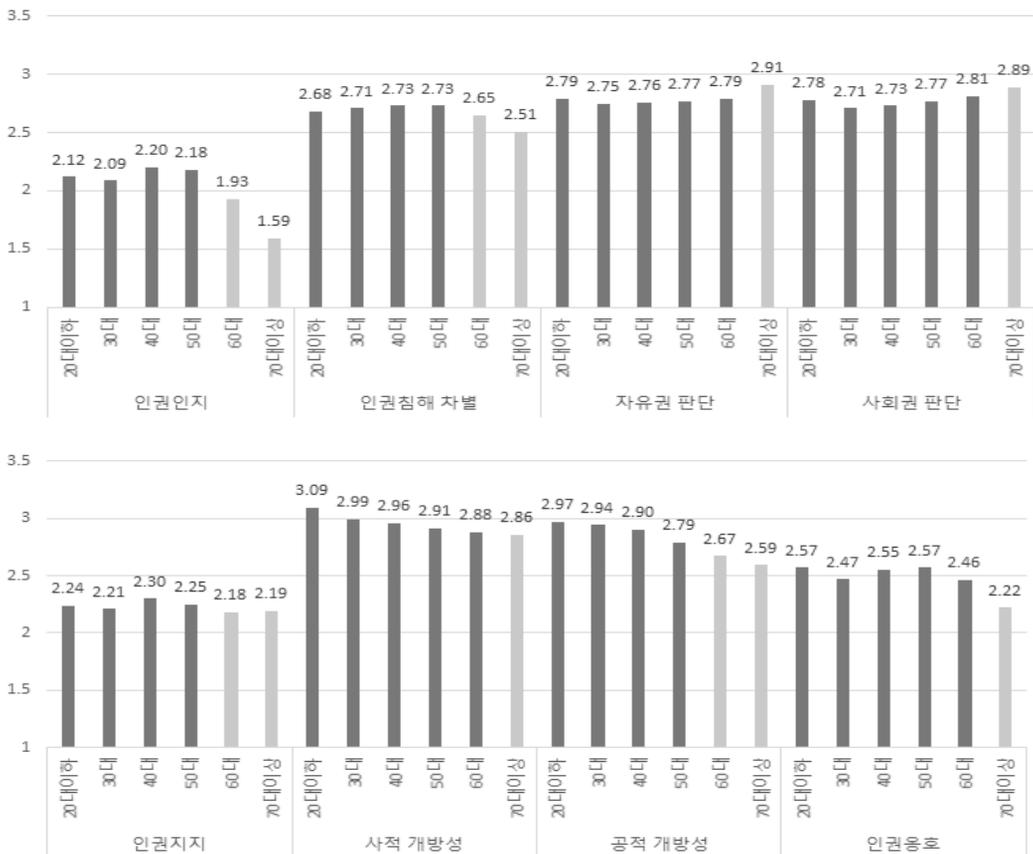
□ 취약집단은 인권침해의 경험들로 인해 인권의식이 높을 수 있다는 기대과 달리 취약 집단인 여성, 노인의 인권의식이 남성, 청년·장년의 인권의식보다 낮게 나타남.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인권인지, 사적개방성, 공적개방성, 인권옹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이 더 높고 다른 요소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음. 또한 인권활동에서도 남성(0.55)과 여성(0.56)의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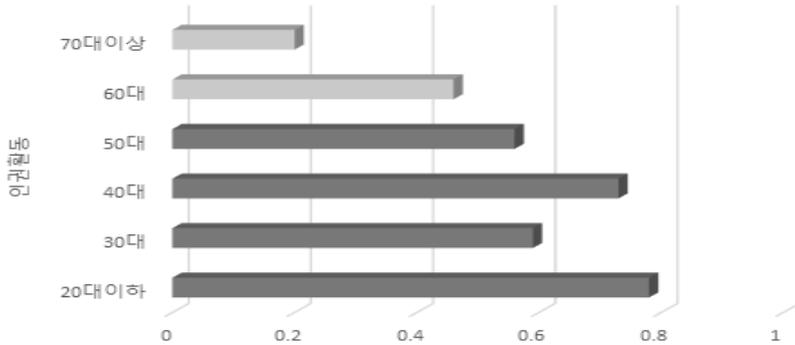
[그림 3.15] 성별 인권의식 비교



- 반면 연령별로 비교할 때는 인권의식의 모든 요소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 특히 인지적 요소에서 60-70대 이상의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인권인지 수준이 매우 낮음. 평소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전혀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33.2%), 농어촌(25.4%), 중학교이하(41.5%), 농림어업종사자(30.8%), 단순노무직(2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이는 노년층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 세계 인권선언을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 역시 60대 이상(45.0%), 농어촌(37.4%), 중학교 이하(56.2%), 농림어업종사자(46.2%) 등에서 비율이 더 높음
- 또한 노년층은 인권침해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고,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음. 정서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를 살펴봐도 60대,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인권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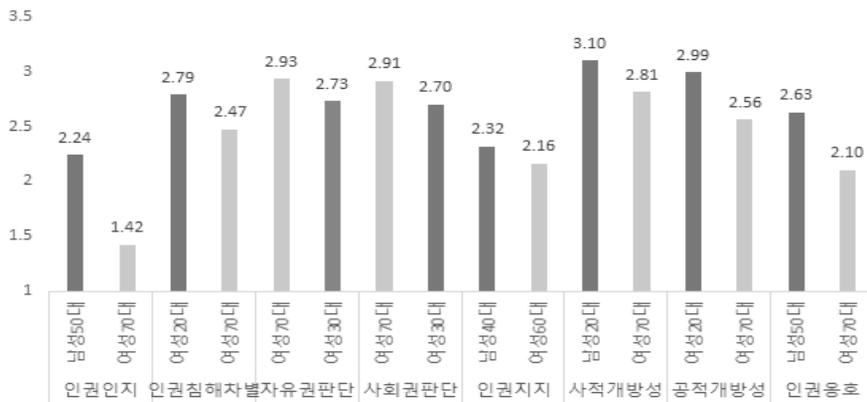
[그림 3.16] 연령별 인권의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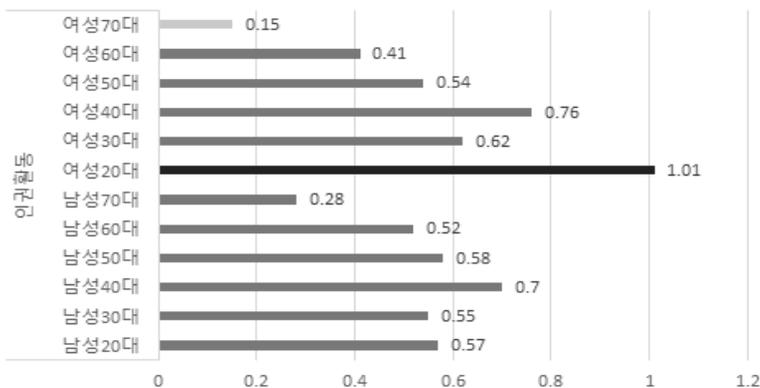




□ 성별과 연령을 교차하여 인권의식의 각 요소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보여준 집단을 비교하면,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집단이 가장 열악한 인권의식을 갖고 있음이 잘 드러남. 즉 삶의 질이 가장 낮고 인권이 취약한 집단인 노인층, 특히 여성 70대 이상 응답자의 인권의식이 가장 낮음. 이들은 만성질환 및 건강 저하, 저학력, 빈곤, 관계망 부재 등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인권에 대해 거의 모르고 현재 인권상황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있고, 인권옹호 및 개선 활동에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취약집단이면서도 여성 2030대는 인권의식이 다소 높은 편인데, 이는 학력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그림 3.17] 성별×연령별 인권의식 비교(최고-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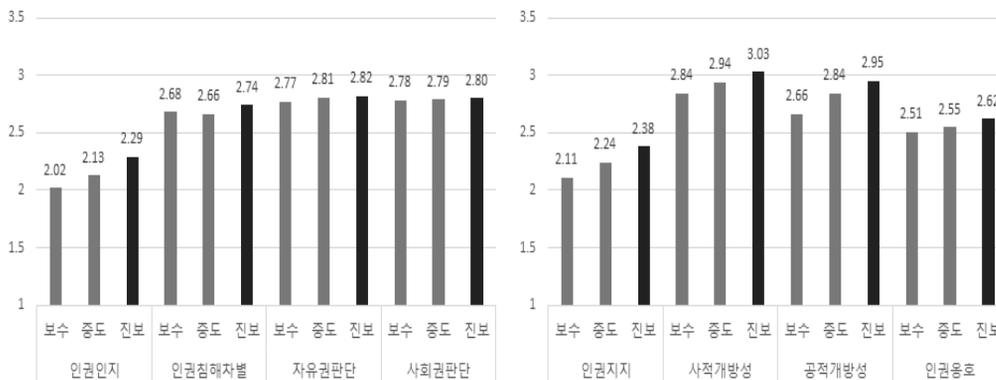


3) 인권의식과 관련된 성향/가치

□ 인권의식은 ‘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 신념, 성향 등이 인권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인권의식과 관련 있는 가치, 성향으로는 정치적 ‘진보 성향’ > 보수 성향,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서 ‘인간이 존엄한 사회’ 지향, 개인의 삶의 가치로서 ‘의미와 보람 있는 삶’ 지향 등으로 나타남. 반면 종교는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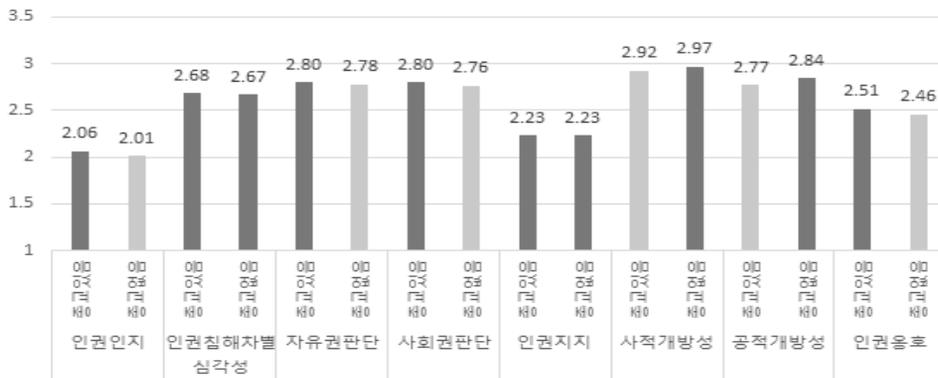
○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일관되게 인권의식이 더 높음. 인권개선 활동에 대한 참여도 역시 진보(0.93)가 보수(0.45)보다 2배 가량 높음. 정치적 무관심층은 보수 성향과 비슷한 인권의식을 보임

[그림 3.18] 정치성향별 인권의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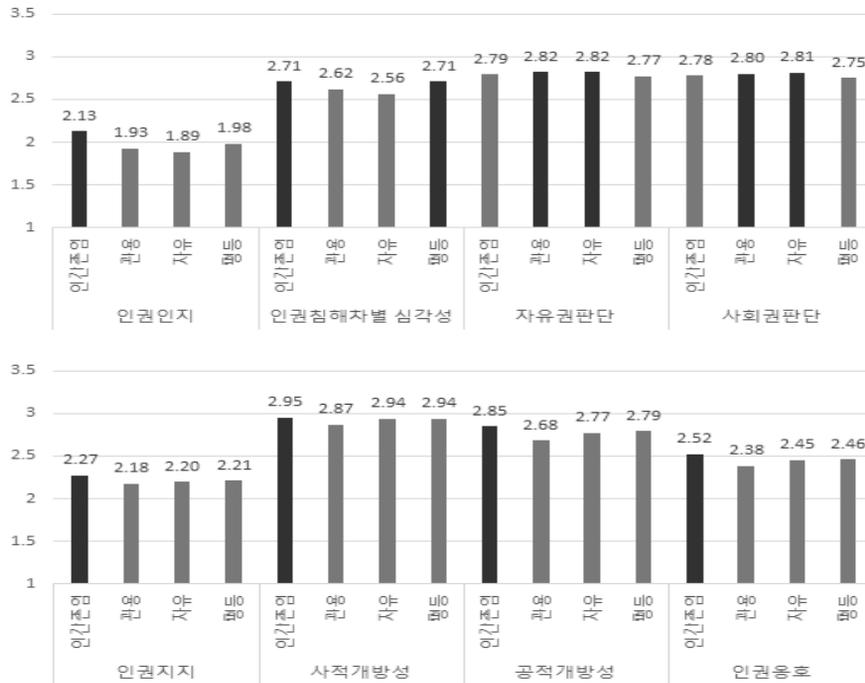
- 인권의식과 종교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음.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인권인지, 인권행동에서 평균이 더 높는데 인권활동은 유종교자(0.63)가 무종교자(0.49)보다 참여도가 조금 높음. 반면 유종교자는 무종교자보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은(타인에 대한 개방성이 더 낮음) 것으로 나타남. 종교의 영성, 도덕성보다 조직화 측면이 유종교자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그림 3.19] 종교유무별 인권의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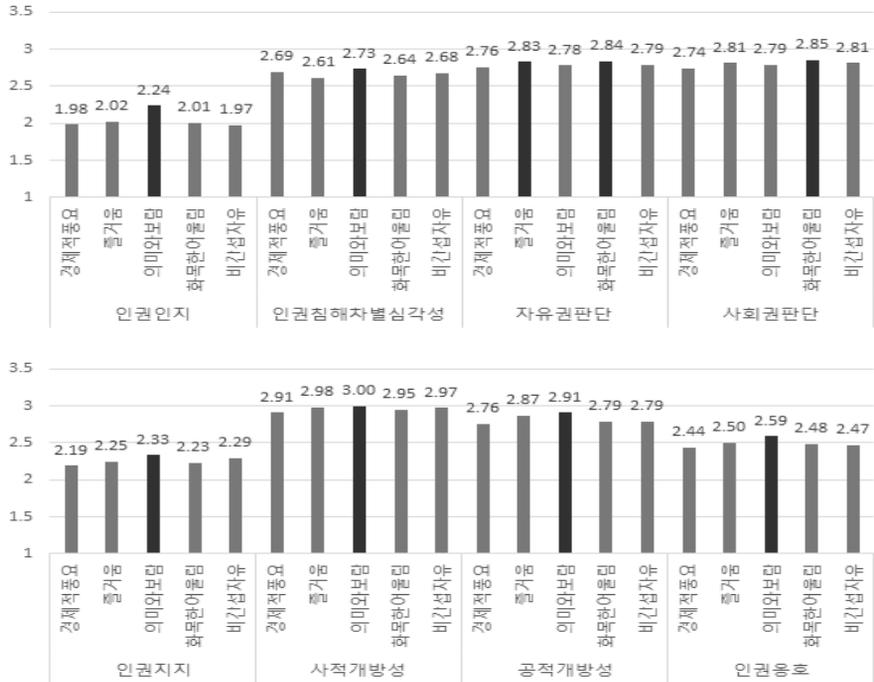
-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서 ‘인간존엄’ 지향이 ‘평등’, ‘관용’, ‘자유’를 지향하는 경우보다 인권의식이 더 높은 편임. 인권활동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간존엄’ 지향(0.61)이 ‘평등’(0.55), ‘관용’(0.51), ‘자유’(0.41) 지향보다 참여도가 더 높음. 또한 ‘관용’, ‘자유’를 지향하는 경우는 인권상황을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편임

[그림 3.20] 사회의 중요한 가치별 인권의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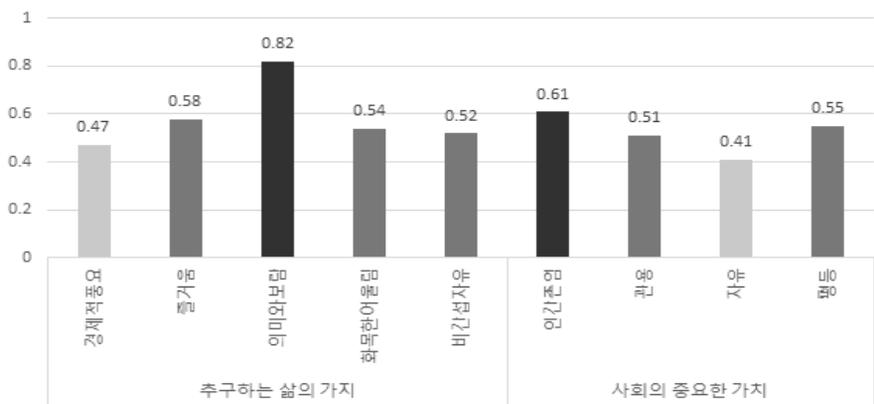


- 개인적 삶의 가치로서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인권의식이 더 높고, 인권활동에서도 ‘의미와 보람’(0.82) 추구가 ‘즐거움’(0.58), ‘화목한 어울림’(0.54), ‘비간섭 자유’(0.52), ‘경제적 풍요’(0.47) 보다 참여도가 높은 편임. 또한 ‘즐거움’, ‘화목한 어울림’을 지향하는 사람은 현 인권상황을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림 3.21] 개인의 중요한 가치별 인권의식 비교



[그림 3.22] 사회의 가치 및 개인 삶의 가치에 따른 인권활동 비교



3.3.3. 인권의식 영향 요인

1) 인권의식의 인지적 요소

- 인권의식의 인지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인권교육, 정치성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침. 즉 고연령층일수록 인권침해차별의 심각성, 현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함. 중도 성향에 비해 진보 성향의 사람은 인권침해차별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반면 보수 성향의 사람은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권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규교육과 인권교육이며, 정치적 무관심층은 보수성향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
-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간존엄을 강조한 사람은 다른 가치를 강조한 사람에 비해서 인권의식이 높음

<표 3.5> 인권의식의 인지적 요소에 대한 회귀분석

		인권인지	인권침해 차별 심각성	자유권판단	사회권판단
	(상수)	1.229	2.843	2.670	2.562
인구학적 요인	성별(남성)	.066***	-.013	-.024	-.025*
	만나이	.009	-.085***	.098***	.119***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연수	.300***	.025	.002	.024
	가구소득	.038**	-.030*	-.019	-.005
인권교육	인권교육받았음	.167***	.004	.038**	.040**
종교	종교있음	.044***	.019	-.005	.019
정치 성향#	보수성향	-.009	.034*	-.052***	-.039**
	진보성향	.079***	.048***	.012	.010
	무관심층	-.111***	.009	-.053***	-.047**
사회의 중요한 가치##	관용적인사회	-.036***	-.033**	.016	.008
	자유로운사회	-.065***	-.088***	.008	.014
	평등한사회	-.030**	.007	-.025*	-.037**
추구하는 삶의 가치###	즐거움	.008	-.052***	.049***	.039**
	의미와보람	.073***	.007	.014	.024
	화목한어울림	.025*	-.012	.047***	.054***
	비간섭자유	.016	.002	.021	.039**

'중도층' 기준 ## '인간이 존엄한 사회' 기준, ###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 기준으로 더미변수

* p < 0.05, ** p < 0.01, *** p < 0.001

2) 인권의식의 정서적 및 행동적 요소

- 인지적 요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행동적 요소에도 연령, 인권교육, 정치성향이 영향을 미침. 특히 정규교육 및 인권교육은 인권행동적 요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고학력, 인권교육을 받으면 인권을 지지하는 태도 뿐만 아니라 행동 참여가 높아짐.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은 확실히 인권 지지적인 반면 보수 성향은 인권 지지적인 태도와 거리를 두고 있음
-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서 인간존엄을 강조한 사람이 다른 가치를 강조한 사람에 비해 인권지지적이고 사회적 거리감이 낮음. 또한 개인의 삶의 가치로서 경제적 풍요를 강조한 사람은 다른 가치를 강조한 사람에 비해서 인권 지지적이지 않음
- 종교는 인권인지, 인권의 행동적 요소에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권의식 제고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은 정규교육, 인권교육, 진보 성향, 인간존엄 사회 지향, 의미와 보람된 삶 지향임

<표 3.6> 인권의식의 정서적 및 행동적 요소에 대한 회귀분석

		인권지지	사적 개방성	공적 개방성	인권옹호	인권활동
	(상수)	2.044	3.057	2.850	1.780	.140
인구학적 요인	성별(남성)	-.008	.064***	.008	.051***	-.033**
	만나이	.045**	-.093***	-.111***	.059***	-.034*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연수	.078***	.004	.080***	.242***	.118***
	가구소득	.008	-.025	.028*	.024	-.006
인권교육	인권교육여부	.014	.031*	.044***	.181***	.220***
종교	종교유무	-.007	-.010	-.021	.036**	.072***
정치 성향#	보수성향	-.106***	-.041**	-.056***	.007	-.025*
	진보성향	.144***	.051***	.052***	.026*	.085***
	무관심층	-.020	.025	-.011	-.109***	-.073***
사회의 중요한 가치##	관용적인사회	-.048***	-.044***	-.054***	-.025*	-.007
	자유로운사회	-.031*	.002	-.016	-.007	-.033**
	평등한사회	-.029*	-.015	-.027*	.009	-.002
추구하는 삶의 가치###	즐거움	.065***	.050***	.048***	.016	.028*
	의미와보람	.111***	.072***	.072***	.047***	.086***
	회복한어울림	.040**	.054***	.050***	.034**	.027*
	비간섭자유	.051***	.028*	.013	.023*	.007

'중도층' 기준 ## '인간이 존엄한 사회' 기준, ###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 기준으로 더미변수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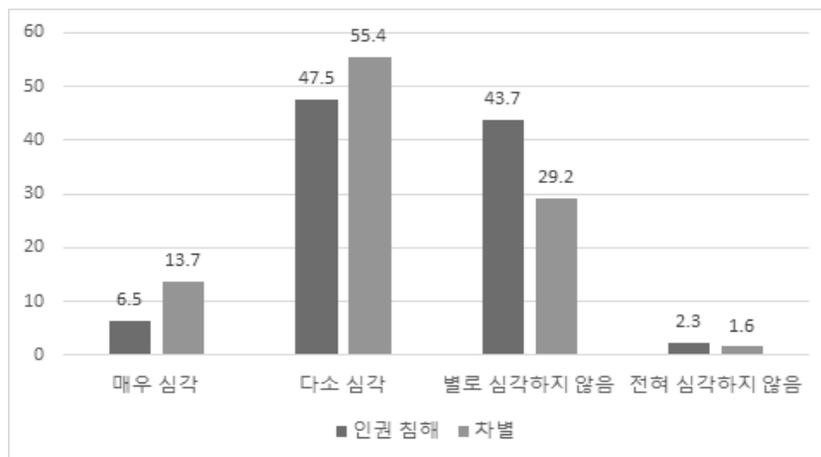
4. 인권침해

4.1. 인권침해와 차별의 평가

4.1.1. 인권침해와 차별 평가 수준과 국제 비교

□ ‘인권침해’와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각하다는 비율이 각각 54%와 69.1%인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은 46%와 30.8%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우세. 심각도 면에서는 차별이 인권침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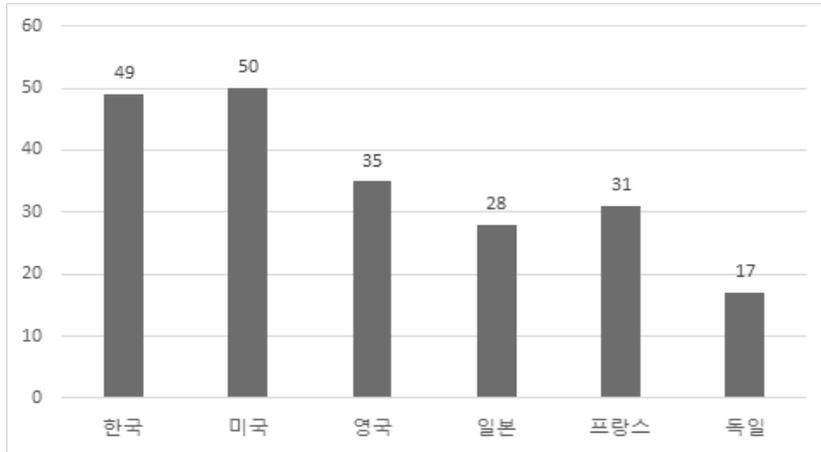
[그림 4.1] 인권침해와 차별의 심각도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2005년 조사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69.8%(매우 심각 11.1%, 대체로 심각 58.7%)로 이에 비해 2019년 심각하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했으며, 반대로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은 30.2%(별로 심각하지 않음 29.8%, 전혀 심각하지 않음 0.3%)로 이에 비해 2019년에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은 증가함
-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글로벌 서베이 기관인 Ipsos의 2018년 국제인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림 4.2]에서 보듯이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이 49%로 50%인 미국과 함께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4.2] 인권침해 심각성 인지*의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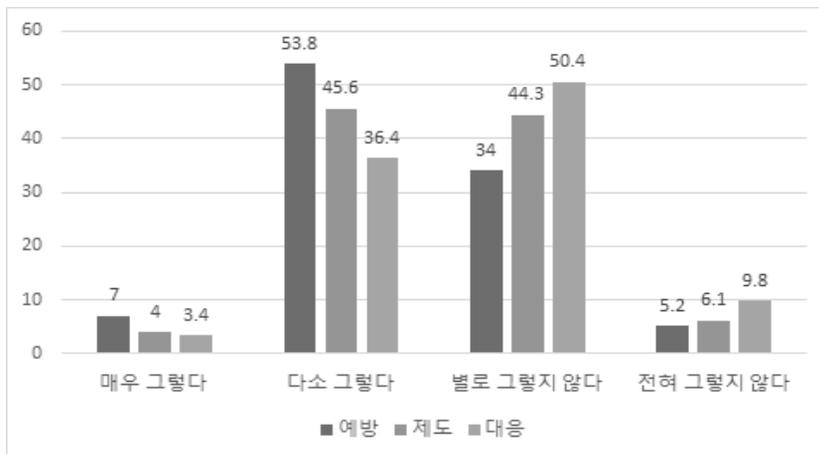


출처: Human Rights in 2018: A Global Advisor Survey, Ipsos

* “Human rights abuses are a problem in some countries but they are not really a problem in this country“에 대한 반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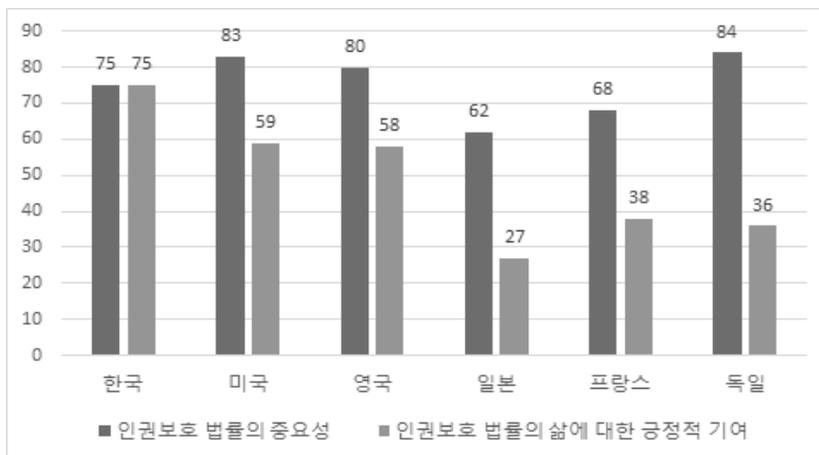
- 2019년 조사에서 정부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예방 노력과 인권보호제도,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평가하도록 한 문항에 대해 예방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60.8%)이 우세한 반면, 사후적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60.2%)이 우세함.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 인권보호 법률의 중요성과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국제비교한 [그림 4.4]를 보면 한국은 인권보호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가 75%로 독일(84%), 미국(83%), 영국(80%)에 비해 낮지만 프랑스(68%), 일본(62%)에 비해 높음. 인권보호 법률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한국은 75%로 비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은 27%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3] 정부의 인권 관련 노력과 제도에 대한 평가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그림 4.4] 인권보호 법률에 대한 인식의 국제 비교



출처: Human Rights in 2018: A Global Advisor Survey, Ipsos

문항: "It is important to have a law that protects human rights in this country"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What difference, if at all, do you think laws protecting human rights make to your life?"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4.1.2. 인권침해와 차별의 배경별 평가

- 20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인권침해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의 인권침해의 성별차이를 느끼는 집단은 20대라고 나타난 사실에서 20대 여성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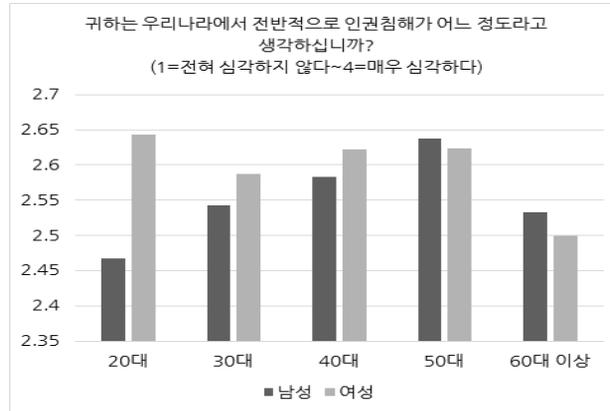
<표 4.1>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467	-0.175***	0.031	-5.583	<0.001
20대 여성	2.643				
30대 남성	2.543	-0.044	0.028	-1.553	0.121
30대 여성	2.588				
40대 남성	2.583	-0.039	0.025	-1.589	0.112
40대 여성	2.622				
50대 남성	2.637	0.013	0.025	0.527	0.598
50대 여성	2.624				
60대 이상 남성	2.533	0.033	0.021	1.561	0.119
60대 이상 여성	2.500				

*p<0.05 **p<0.01 ***p<0.001

1) 1=전혀 심각하지 않다~4=매우 심각하다

[그림 4.5]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침해뿐 아니라 차별의 문제에서도 20대, 30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리나라의 차별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40대, 50대에서는 우리나라 차별 정도에 대한 응답에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었음. 반면 60대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리나라의 차별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고령층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가정내 문화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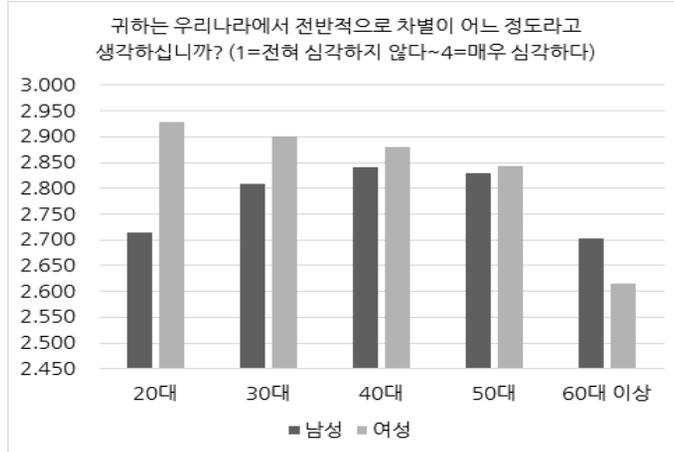
<표 4.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715	-0.213***	0.033	-6.373	<0.001
20대 여성	2.928				
30대 남성	2.808	-0.093**	0.030	-3.155	0.002
30대 여성	2.902				
40대 남성	2.840	-0.041	0.025	-1.664	0.096
40대 여성	2.881				
50대 남성	2.830	-0.013	0.026	-0.492	0.623
50대 여성	2.843				
60대 이상 남성	2.702	0.086***	0.022	3.953	<0.001
60대 이상 여성	2.616				

*p<0.05 **p<0.01 ***p<0.001

1) 1=전혀 심각하지 않다 ~ 4=매우 심각하다

[그림 4.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20대, 30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리나라의 차별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40대, 50대에서는 우리나라 차별 정도에 대한 응답에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었음. 반면 60대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리나라의 차별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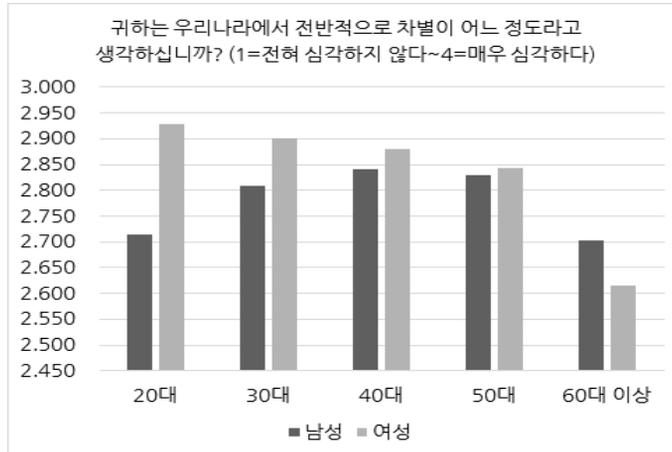
<표 4.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715	-0.213***	0.033	-6.373	<0.001
20대 여성	2.928				
30대 남성	2.808	-0.093**	0.030	-3.155	0.002
30대 여성	2.902				
40대 남성	2.840	-0.041	0.025	-1.664	0.096
40대 여성	2.881				
50대 남성	2.830	-0.013	0.026	-0.492	0.623
50대 여성	2.843				
60대 이상 남성	2.702	0.086***	0.022	3.953	<0.001
60대 이상 여성	2.616				

*p<0.05 **p<0.01 ***p<0.001

1) 1=전혀 심각하지 않다 ~ 4=매우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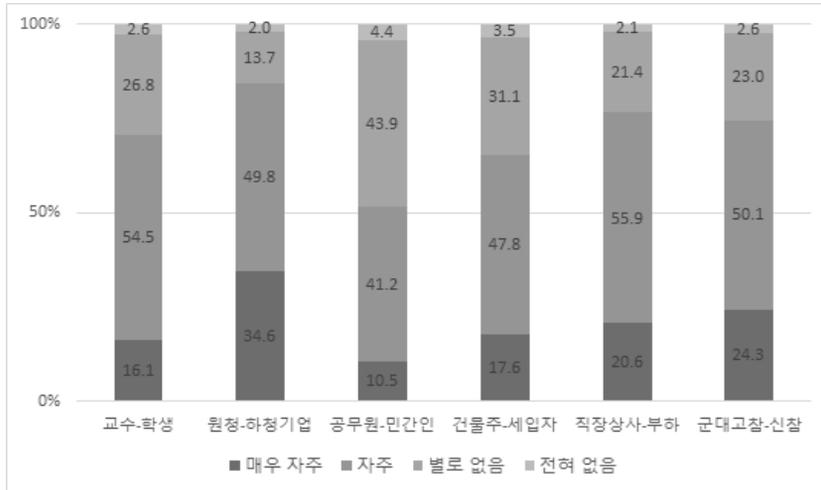
[그림 4.7]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1.3. 인권침해와 차별 가능성이 높은 관계의 평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혹은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관계들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아래 [그림 4.8]에서 보듯이 공무원과 민간인 관계를 제외 하면 대부분의 관계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자주 혹은 매우 자주 있을 것으로 응답함
- 대학교수와 지도학생 간에는 70.6%가, 기업간 원청과 하청기업 간에는 84.3%가,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는 65.4%가,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는 76.5%가, 그리고 군대 내 고참과 신참 간에는 74.5%가 자주 혹은 매우 자주 인권침해와 차별이 일어날 것으로 응답함
- 대학교수와 지도학생 간의 관계가 권위 관계라면, 원청-하청, 건물주-세입자 관계는 계약관계, 직장과 군대는 위계적 권력 관계라고 본다면, 위계적 권력 관계인 직장 상사나 군대 고참보다 원청기업이 더 인권침해와 차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주목할 점으로 경제적 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강함을 보여줌

[그림 4.8] 인권침해 혹은 차별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관계



- 성별 및 연령별로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묻은 결과 여성 30, 40대는 모든 관계에 대해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20대는 건물주, 직장상사, 군대고참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음. 남성 30, 40대는 교수, 원청기업, 건물주의 인권침해와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남성 30대가 군대 고참의 인권침해 및 차별 가능성을 높게 봄
- 50대 이상의 남녀와 20대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성-연령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와 차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비율이 낮지만 이들도 공무원-민간인 관계를 제외하면 모두 절반 이상의 가능성을 이야기함. 전반적으로 연령에서는 30, 40대가, 또한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인권침해와 차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표 4.4> 성·연령별 인권침해 혹은 차별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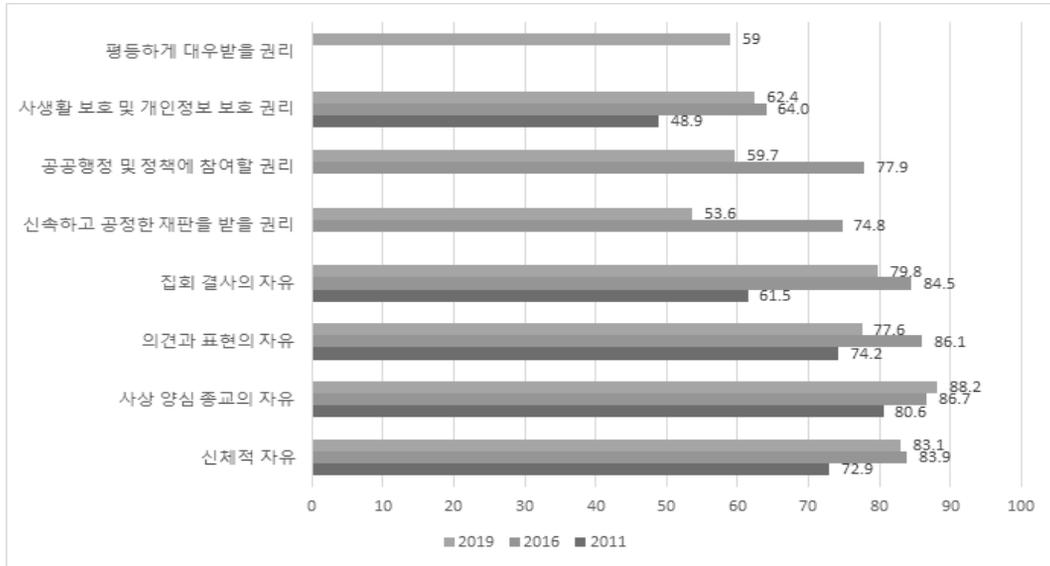
		교수 -학생	원청 -하청기업	공무원 -민간인	건물주 -세입자	직장상사 -부하	군대고참 -신참
남성	20대	2.23	1.91	2.54	2.24	2.01	1.98
	30대	2.06	1.67	2.37	2.11	1.98	1.84
	40대	2.01	1.68	2.30	2.09	2.02	1.97
	50대	2.11	1.77	2.38	2.18	2.09	2.11
	60대	2.30	1.96	2.52	2.36	2.18	2.20
여성	20대	2.10	1.73	2.41	2.07	1.79	1.84
	30대	1.96	1.62	2.26	2.00	1.84	1.77
	40대	1.97	1.67	2.29	2.07	1.93	1.89
	50대	2.11	1.79	2.37	2.18	2.03	2.06
	60대	2.42	2.13	2.60	2.42	2.25	2.26

4.2. 자유와 권리 존중 정도의 평가

4.2.1. 자유와 권리 존중 정도의 평가와 변화

- 인권의 항목별로 한국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그림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에 비해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 반면, 2016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감소한 편임
- 인권 항목별로 비교하면 자유권(신체적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평등권, 참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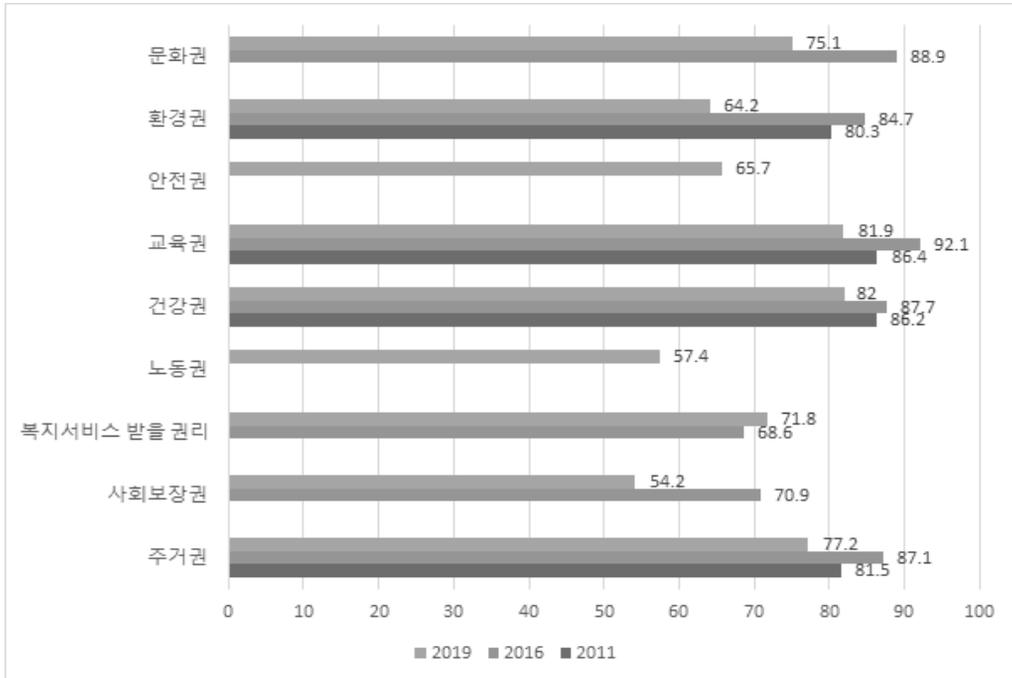
[그림 4.9]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 평가의 변화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항목별로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2011년 ~ 2019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그림 4.10]임

[그림 4.1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존중 정도 평가의 변화



자료: 국민인권인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 중에서 교육(81.9%), 건강(87.7%), 주거(77.2%), 문화(75.1%)에 대한 권리는 비교적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사회보장권(54.2%), 노동권(57.4%), 환경권(64.2%) 등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경제적 양극화와 고용관계에서의 갑질 논란, 그리고 미세먼지에 따른 불편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대체로 2011년과 2016년에 비해 2019년에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11년과 2016년에 조사된 항목들이 많지 않아 항목별 비교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음

4.2.2. 자유와 권리 존중 정도의 요인분석과 영향 요인

□ 우리나라에서 자유나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를 17개 문항으로 질문한 뒤(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환경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신속 공정 재판권리, 공공행정 및 정책참여권리,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주거권, 안전권), 1=매우 존중된다 ~ 4=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음. 즉,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임.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 주거권, 안전권의 공통성 값은 0.5보다 작으므로, 해당 변수들을 제외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음

<표 4.5> KMO와 Bartlett의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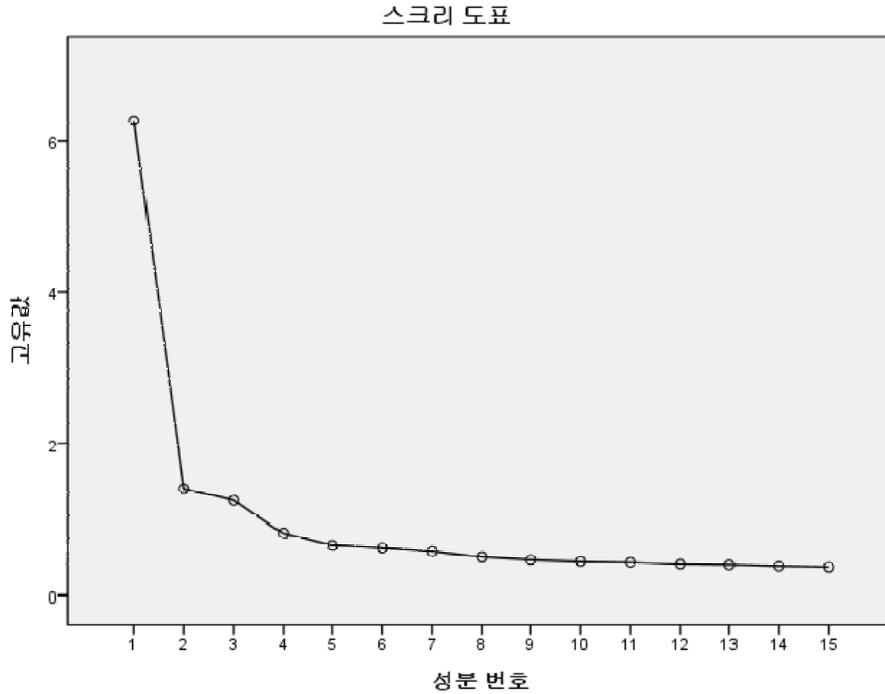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924	80328.052	105	<0.001

○ 역-이미지 행렬표 상에서 모든 MSA 값은 0.5보다 큼. 설명된 총분산과 스크리도표는 아래와 같음

<표 4.6> 설명된 총분산과 스크리 도표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6.276	41.838	41.838	6.276	41.838	41.838	3.431	22.871	22.871
2	1.405	9.370	51.208	1.405	9.370	51.208	2.907	19.379	42.251
3	1.246	8.310	59.518	1.246	8.310	59.518	2.590	17.267	59.518
4	.824	5.491	65.009						
5	.657	4.383	69.392						
6	.624	4.160	73.553						
7	.577	3.844	77.397						
8	.503	3.356	80.753						
9	.465	3.099	83.852						
10	.443	2.951	86.803						
11	.430	2.867	89.671						
12	.407	2.711	92.381						
13	.397	2.646	95.028						
14	.380	2.530	97.558						
15	.366	2.442	100.000						

[그림 4.11] 스크리 도표



- 요인분석 결과, 전체 분산의 59.52%를 설명하는 세 개의 요인이 드러남. 첫 번째 요인은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환경권, 노동권, 사회 보장권을 포함함. 두 번째 요인은 신속 공정 재판권리, 공공행정 및 정책참여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포함함. 세 번째 요인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포함함

<표 4.7>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건강권	.745	.104	.242
교육권	.703	.057	.324
문화권	.676	.141	.195
복지서비스를받을권리	.668	.291	.107
환경권	.651	.284	.148
노동권	.612	.422	.087
사회보장권	.555	.471	.092
신속공정재판권리	.137	.781	.213
공공행정및정책참여권리	.167	.747	.209
평등하게대우받을권리	.331	.708	.190
사생활보호및개인정보보호권리	.254	.672	.215
사상양심종교의자유	.208	.068	.799
의견과표현의자유	.165	.293	.739
집회결사의자유	.163	.223	.738
신체의자유	.231	.217	.663

- 회귀분석 결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20대 남성, 여성에 비해 30대, 40대 남성, 여성은 요인 1, 2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되지 못한다고 응답했음. 한편 20대 남성에 비해 50대 남성은 요인 3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되지 못한다고 응답했음
- 고졸 이하 남성에 비해 대학원 이상 남성은 요인 1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된다고 응답했으며, 고졸 이하 여성에 비해 대졸 이상 여성은 요인 1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된다고 응답했음. 고졸 이하 남성, 여성에 비해 중졸 이하 남성, 여성은 요인 2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된다고 응답했음. 고졸 이하 남성, 여성에 비해 대졸 이상, 대학원졸 이상 남성, 여성은 요인 3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된다고 응답했음

-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서비스/판매직종 및 생산/기술직종은 요인 1, 2, 3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농업/어업 직종은 요인 1, 2, 3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된다고 보았음
-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요인 1, 3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음
- 정치성향에 "관심 없음"으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중도 집단과 진보 집단은 요인 1, 2, 3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존중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음

<표 4.8> 회귀분석 결과 (1=매우 존중된다~4=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요인 1		요인 2		요인 3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대 (ref: 20대)						
30대	0.097*** (0.025)	0.041 (0.026)	0.109*** (0.029)	0.042 (0.031)	0.035 (0.025)	-0.010 (0.027)
40대	0.098*** (0.026)	0.006 (0.027)	0.096** (0.030)	-0.001 (0.032)	0.040 (0.027)	-0.009 (0.028)
50대	0.043 (0.027)	-0.038 (0.028)	0.058 (0.031)	-0.023 (0.033)	0.070* (0.028)	-0.027 (0.029)
60대 이상	-0.008 (0.029)	-0.132*** (0.030)	0.008 (0.034)	-0.085* (0.036)	0.031 (0.030)	-0.058 (0.031)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중졸 이하	-0.018 (0.020)	-0.022 (0.018)	-0.058* (0.024)	-0.065** (0.021)	-0.024 (0.021)	-0.036 (0.018)
대졸 이상	-0.019 (0.015)	-0.036* (0.016)	0.005 (0.018)	0.011 (0.019)	-0.047** (0.016)	-0.055*** (0.016)
대학원 이상	-0.066* (0.028)	-0.064 (0.033)	-0.008 (0.033)	0.013 (0.039)	-0.121*** (0.029)	-0.089** (0.034)
직업 (ref: 일하지 않음)						
관리자/전문가	0.007 (0.023)	0.002 (0.022)	0.014 (0.027)	-0.003 (0.025)	0.031 (0.024)	0.009 (0.022)

	요인 1		요인 2		요인 3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무직	0.002 (0.025)	0.028 (0.022)	-0.044 (0.029)	0.044 (0.026)	-0.000 (0.025)	0.030 (0.022)
서비스/판매직	0.023 (0.020)	0.031* (0.015)	0.036 (0.023)	0.063*** (0.018)	0.056** (0.020)	0.047** (0.016)
생산/기술직	0.039 (0.022)	-0.006 (0.037)	0.086*** (0.026)	0.032 (0.044)	0.071** (0.023)	-0.002 (0.038)
농업/어업	-0.069** (0.026)	-0.089*** (0.025)	-0.059* (0.030)	-0.078** (0.029)	-0.046 (0.026)	-0.037 (0.025)
단순노무직	0.032 (0.023)	0.048* (0.022)	0.000 (0.027)	0.012 (0.025)	0.012 (0.024)	0.047* (0.022)
군인	0.185* (0.076)	0.469 (0.263)	-0.008 (0.088)	-0.004 (0.309)	0.021 (0.077)	0.161 (0.270)
월 가구소득 (100만원)	-0.007** (0.003)	-0.007** (0.003)	-0.001 (0.003)	-0.002 (0.003)	-0.003 (0.003)	-0.006* (0.003)
정치적 성향 (ref: 없음)						
보수적	-0.019 (0.018)	-0.014 (0.018)	0.001 (0.021)	0.022 (0.022)	-0.013 (0.019)	-0.004 (0.019)
중도	-0.054*** (0.016)	-0.047*** (0.014)	-0.034 (0.018)	-0.033* (0.016)	-0.096*** (0.016)	-0.073*** (0.014)
진보적	-0.074*** (0.018)	-0.061*** (0.016)	-0.025 (0.020)	-0.002 (0.019)	-0.156*** (0.018)	-0.107*** (0.017)
결혼 (ref: 배우자 있음)						
미혼	-0.020 (0.020)	-0.017 (0.023)	-0.011 (0.023)	0.030 (0.026)	-0.020 (0.020)	-0.022 (0.023)
사별	-0.041 (0.035)	-0.034 (0.019)	-0.089* (0.041)	-0.074*** (0.022)	-0.033 (0.036)	-0.082*** (0.019)
이혼/별거	0.030 (0.026)	-0.017 (0.024)	0.021 (0.030)	0.000 (0.029)	-0.018 (0.026)	-0.029 (0.025)
상수	2.269*** (0.032)	2.334*** (0.030)	2.358*** (0.038)	2.426*** (0.036)	2.086*** (0.033)	2.170*** (0.031)
N	6273	6804	6273	6804	6273	6804

괄호 안에 표준오차가 기재되어 있음.

* p < 0.05, **p < 0.01, ***p < 0.001

4.3. 인권침해와 차별의 조건과 대상 평가

4.3.1. 인권침해와 차별 조건과 대상 평가의 변화

-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받기 쉬운 조건의 사람을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것에 대해 2011, 2016, 2019년의 응답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2011년과 2016년은 응답 선택지를 통합해서 선택하도록 한 반면, 2019년에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쉽지 않음
- 하지만 2019년을 앞의 연도들과 유사하게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빈곤층과 저학력이 가장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기 쉬운 상황에 있다는 응답이 지배적임. 2011, 2016, 2019년을 비교하면 인구학적 집단 중에서 여성이 2011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 2016년에 처음 등장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주목할 변화임. 반면 노인은 2011년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여성에 의해 밀려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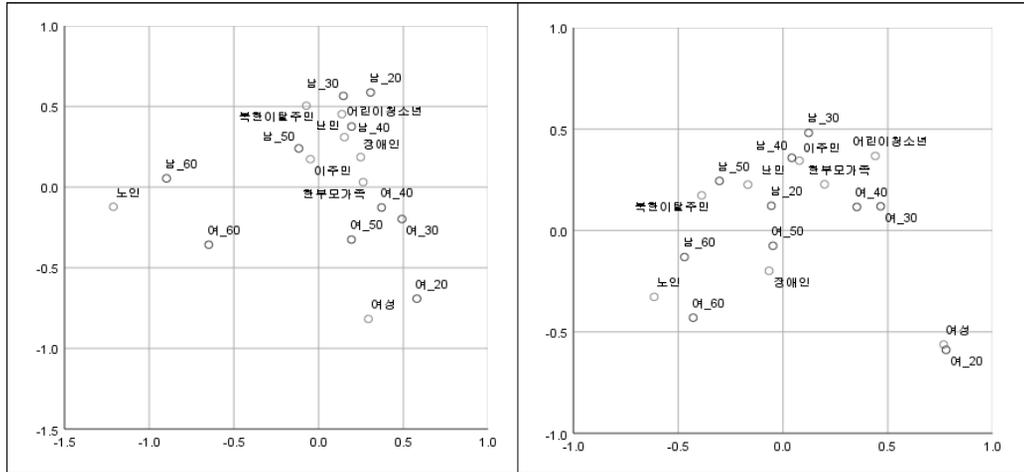
<표 4.9>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혹은 받기 쉬운 조건의 사람

	2011	2016	2019
1	빈곤층	빈곤층	빈곤층
2	저학력	저학력	저학력
3	이주민	장애인	이주민
4	장애인	이주민	여성
5	노인	여성	장애인

4.3.2. 인권침해와 차별 조건과 대상의 배경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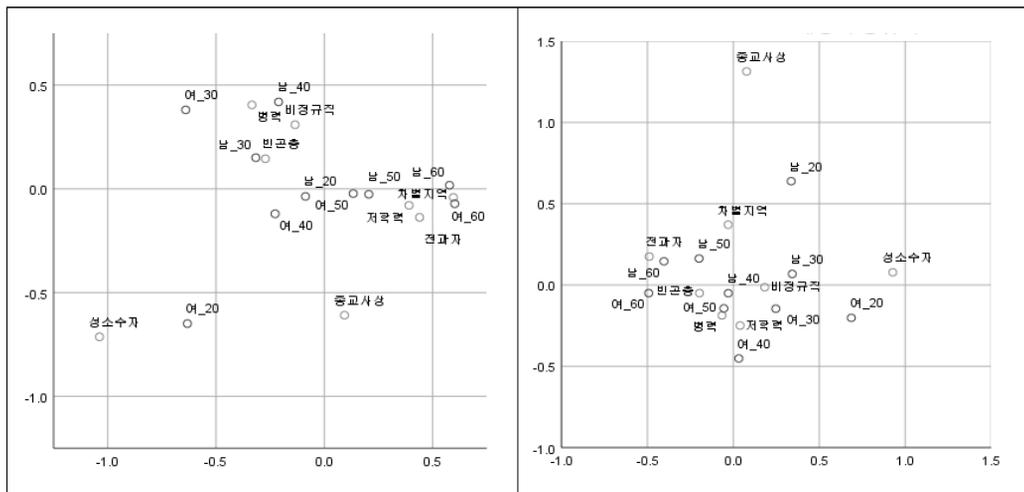
-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1순위(왼편)와 2순위(오른편) 고른 것을 성별, 연령별로 나눈 집단과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점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구분을 파란 점은 인권침해와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대상집단을 나타냄. 남성과 여성 60대가 노인을, 20대 여성이 여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다른 집단들에서는 일관된 패턴을 찾기 쉽지 않음

[그림 4.12]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응분석



-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기 쉬운 조건에 있는 사람을 1순위(왼편)와 2순위(오른편)로 선택한 것과 성별, 연령별 구분을 대응분석 적용한 결과 여성 20대가 성소수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또한 남성 3, 40대가 비정규직과 빈곤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3]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기 쉬운 조건에 있는 사람: 대응분석



□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뒤, 조사 대상자 중 1순위가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으로 정의하여, 전체 여성 표본과 차별 인식 여성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음

○ 전체 여성 표본에 비해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 20대 이하, 30대, 5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원졸 이상의 비율이 낮았음

○ 전체 여성집단과 비교할 때 직업은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관리자/전문가, 일하지 않음의 비율이 낮았음. 월 가구소득은 저소득층 (100~200만원 등)의 비율이 높음. 다시 말해서 여성 중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정치적 성향은 관심 없음의 비율이 높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성향은 여성의 차별과 특별한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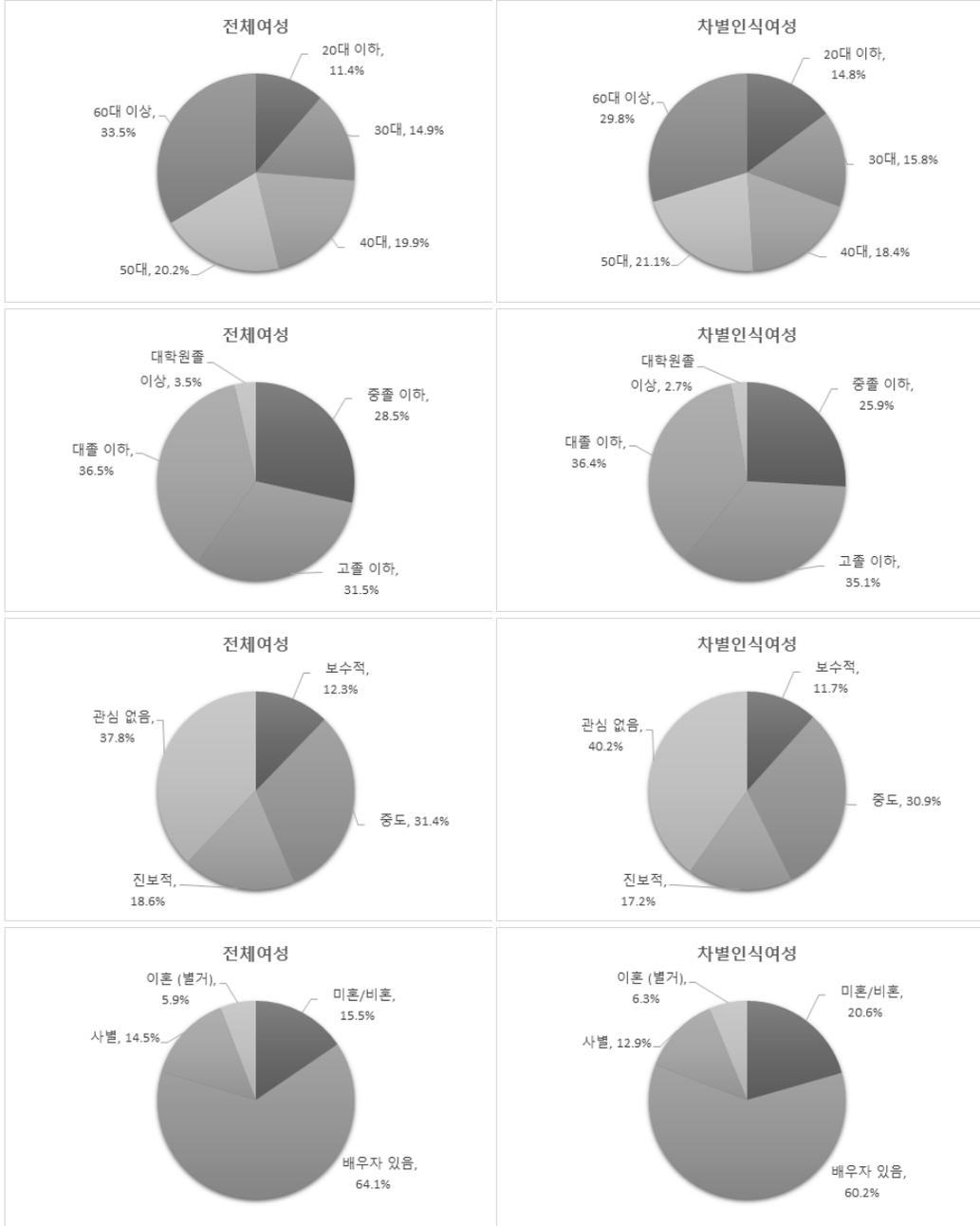
○ 결혼 상태는 미혼/비혼과 이혼 (별거)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결혼형태를 유지하지 않은 여성들, 법적인 배우자 없이 사는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10> 전체 여성 표본과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명	전체 여성 (N=6,804명)		차별 인식 여성 (N=1,462명)	
	N	비율 (%)	N	비율 (%)
연령대				
20대 이하	775	11.39%	217	14.84%
30대	1,016	14.93%	231	15.80%
40대	1,357	19.94%	269	18.40%
50대	1,376	20.22%	309	21.14%
60대 이상	2,280	33.51%	436	29.82%

변수명	전체 여성 (N=6,804명)		차별 인식 여성 (N=1,462명)	
	N	비율 (%)	N	비율 (%)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38	28.48%	378	25.85%
고졸 이하	2,142	31.48%	513	35.09%
대졸 이하	2,483	36.49%	532	36.39%
대학원졸 이상	241	3.54%	39	2.67%
직업				
관리자/전문가	674	9.91%	132	9.03%
사무직	603	8.86%	129	8.82%
서비스/판매직	1,532	22.52%	354	24.21%
생산/기술직	162	2.38%	31	2.12%
농업/어업	414	6.08%	89	6.09%
단순노무직	543	7.98%	120	8.21%
군인	3	0.04%	1	0.07%
일하지 않음	2,873	42.23%	606	41.45%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222	17.96%	244	16.69%
100~200만원	1,016	14.93%	231	15.80%
200~300만원	1,228	18.05%	299	20.45%
300~400만원	1,043	15.33%	232	15.87%
400~500만원	740	10.88%	146	9.99%
500~600만원	568	8.35%	138	9.44%
600~700만원	274	4.03%	50	3.42%
700~800만원	193	2.84%	36	2.46%
800~900만원	154	2.26%	31	2.12%
900~1000만원	123	1.81%	12	0.82%
1000만원 이상	243	3.57%	43	2.94%
정치적 성향				
보수적	835	12.27%	171	11.70%
중도	2,134	31.36%	452	30.92%
진보적	1,263	18.56%	252	17.24%
관심 없음	2,572	37.80%	587	40.15%
결혼 상태				
미혼/비혼	1,056	15.52%	301	20.59%
배우자 있음	4,360	64.08%	880	60.19%
사별	987	14.51%	189	12.93%
이혼 (별거)	401	5.89%	92	6.29%

[그림 4.14] 전체 여성 표본과 차별 인식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 20대, 30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양한 집단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음. 40대, 50대, 60대에서는 응답에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었음. 이는 앞서의 결과와 같은 흐름인 것으로 젊은 층의 여성일수록 인권의식이나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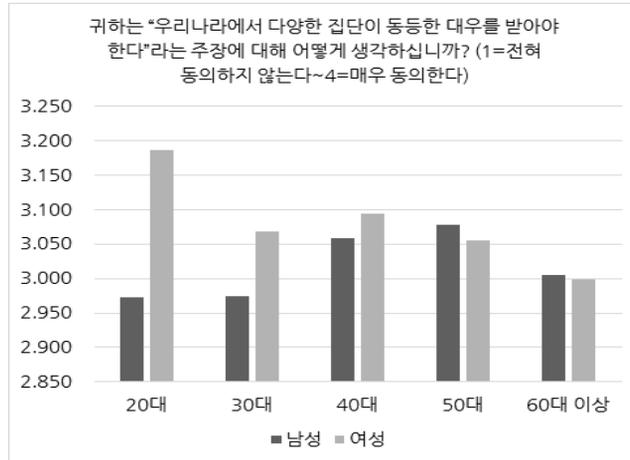
<표 4.11>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집단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972	-0.215***	0.037	-5.742	<0.001
20대 여성	3.187				
30대 남성	2.974	-0.095**	0.035	-2.744	0.006
30대 여성	3.069				
40대 남성	3.059	-0.035	0.030	-1.171	0.242
40대 여성	3.094				
50대 남성	3.078	0.022	0.030	0.729	0.466
50대 여성	3.056				
60대 이상 남성	3.005	0.007	0.024	0.288	0.773
60대 이상 여성	2.998				

*p<0.05 **p<0.01 ***p<0.001

1)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매우 동의한다

[그림 4.15]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집단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물었음. 1순위로 지목된 장소를 연령대, 성별에 따라 나타내었음

- 직장이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을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냈음. 젊은 층의 경우 취업, 승진, 배치 등에서 받는 고용차별 때문에 직장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다음은 가정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가정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20대와 30대에서는 특히 그러한 경향이 높은 반면 이는 젊은 세대들의 경우 맞벌이가 증가해가고 여성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사를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도 높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는 가정내에서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임. 평등한 가사노동의 배분을 둘러싼 가정내에서의 협상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남성들의 경우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보아왔던 어머니가 전적으로 가정일을 하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사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50대 이상이 될수록 가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가정이라고 응답한 남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50대 이상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정내에서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됨

- 직장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 지목된 군대의 경우 연령별 응답율은 흥미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군복무의 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군대를 지목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 군대가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고 응답한 50대 여성의 비율이 34.67%로 가정(14.9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이는 아마 아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연령이 50대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임

<표 4.12>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여성								
유치원	4.73%	4.13%	6.81%	8.56%	6.94%	6.41%	8.52%	9.59%	10.26%	12.89%
학교	10.68%	10.97%	6.07%	7.09%	5.08%	8.70%	5.61%	6.47%	7.28%	7.06%
직장	35.19%	44.26%	31.83%	30.41%	32.12%	29.77%	30.81%	34.08%	32.52%	29.21%
가정	32.52%	17.81%	32.57%	17.32%	23.16%	15.84%	19.30%	14.90%	16.42%	12.76%
군대	16.38%	22.19%	22.30%	36.52%	32.20%	39.06%	35.47%	34.67%	33.21%	37.85%
보호시설	0.49%	0.65%	0.42%	0.10%	0.48%	0.22%	0.29%	0.29%	0.32%	0.22%

-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물었음. 1순위로 지목된 상황을 연령대, 성별에 따라 나타내었음

- 전반적으로 구직, 취업과 경, 검찰 수사가 가장 많이 지목되었음. 20대, 30대 남성, 여성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상황은 구직, 취업과 경, 검찰 수사였음. 4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상황은 경, 검찰 수사와 구직, 취업이었음. 4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상황은 구직, 취업과 경, 검찰 수사였음. 5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상황은 경, 검찰 수사와 구직, 취업이었으며, 5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상황은 구직, 취업과 경, 검찰 수사였음. 6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상황은 구직, 취업과 경, 검찰 수사였고, 6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상황은 구직, 취업과 경, 검찰 수사였음

<표 4.13>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여성								
구직, 취업	52.67%	54.84%	44.71%	42.42%	36.16%	41.56%	37.00%	44.26%	36.61%	40.22%
입학	2.79%	1.68%	1.26%	0.89%	0.89%	0.88%	1.09%	1.16%	1.12%	1.10%
공무원 업무	5.95%	5.29%	7.02%	5.81%	7.18%	6.63%	9.03%	7.78%	10.26%	8.73%
경검찰 수사	23.54%	20.90%	29.84%	34.25%	39.71%	34.27%	37.51%	32.70%	35.81%	27.32%
병원 치료	2.06%	1.94%	2.20%	3.44%	2.82%	3.61%	3.35%	4.65%	5.15%	9.39%
재판	6.92%	8.13%	10.16%	9.94%	10.57%	10.83%	9.69%	7.19%	7.39%	7.32%
물건 구입	3.40%	4.90%	3.25%	1.77%	1.61%	1.62%	1.09%	1.67%	2.23%	3.42%
대중교통	1.58%	1.68%	0.63%	1.28%	0.65%	0.44%	0.80%	0.58%	1.17%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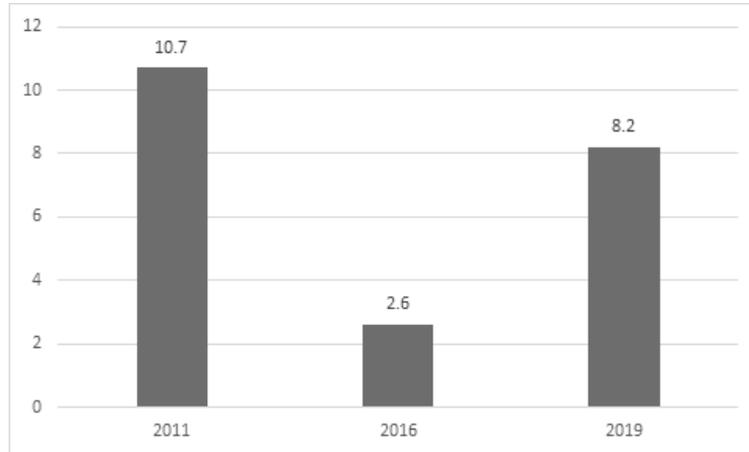
4.4. 인권침해 경험

4.4.1.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각 항목별로 침해를 본인이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것에 대해 하나라도 침해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계산한 결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그림 4.16]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8.2%로 나타남

○ 2011년과 2016년의 결과를 마찬가지로 종합하여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10.7%와 2.6%인 것으로 나타남. 2019년의 결과는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 비하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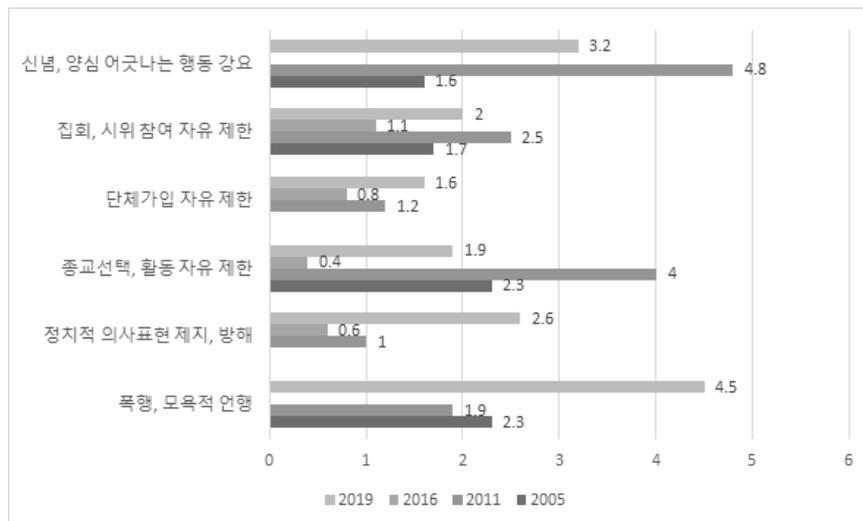
[그림 4.16]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비율의 추세



자료: 국민인권인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각 항목별로 본인이 침해 경험이 있는지 2005년~2019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 [그림 4.17]의 그래프임. 연도별로 문항에 항목들이 포함된 것들이 달라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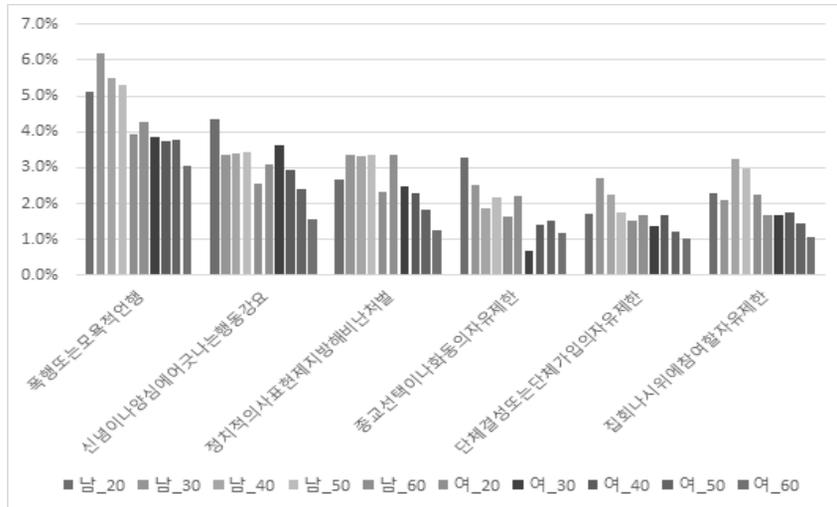
[그림 4.17]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항목별 침해 직접 경험 비율 변화



자료: 국민인권인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침해 비율이 높은 것은 폭행과 모욕적 언행(4.5%) 및 신념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의 강요(3.2%)이며, 가장 낮은 것은 단체 가입의 자유제한(1.6%)과 집회, 시위참여의 자유 제한(2%)임
- 시계열적 비교에 의하면 2005년에 비해 2011년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증가했다가 2016년에 감소하고, 다시 201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폭행과 모욕적 언행의 경험. 신념 및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의 강요는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경험 비율을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폭행 또는 모욕적 언행의 경우 30대 남성이 가장 비율이 높고 40, 50대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 행동의 강요나 종교선택이나 활동 자유 제한은 20대 남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약당한 것은 30대~50대 남성과 2-대 여성이, 단체결성 혹은 가입 자유제한은 30대 남성이, 그리고 집회나 시위 참여 자유의 제한은 40~50대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중에서는 20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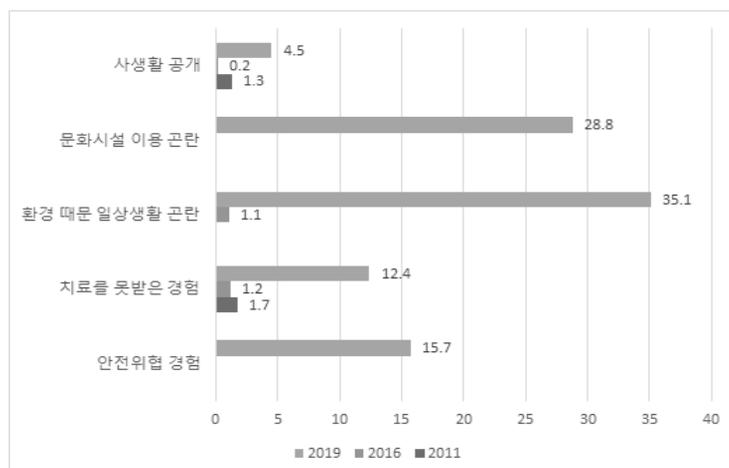
[그림 4.18] 성·연령별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경험 비율



4.4.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여성 20대(42%), 30대(45%), 40대(42%)에서 높고, 안전 위협을 경험한 비율도 여성 20대(29%), 30대(24%)에서 높으며,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 못한다는 응답 역시 여성 20대(37%), 30대(40%) 40대(3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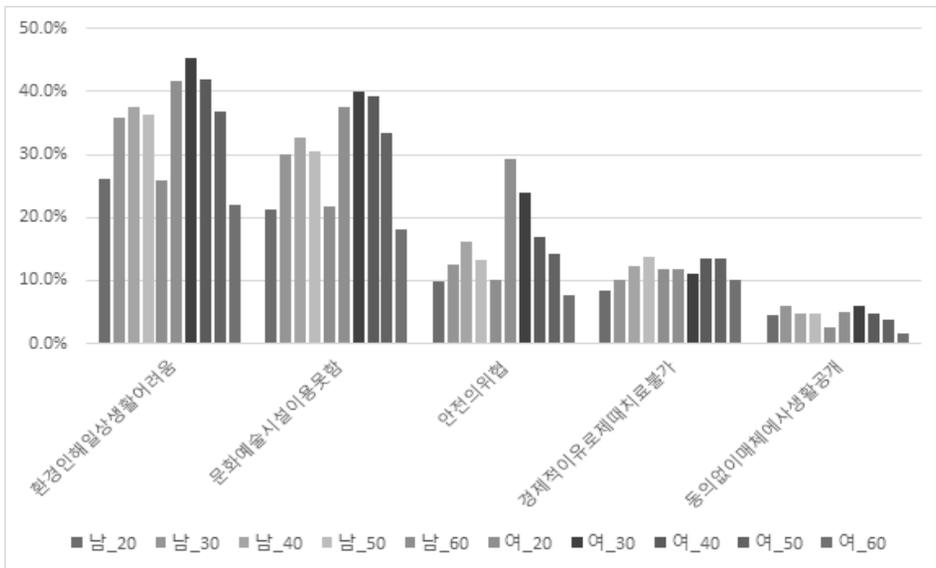
[그림 4.19]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직접 경험의 변화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의 비율을 보임. 특히 안전의 위협을 경험한 비율은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 비해 3배, 3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권의 경우, 남성 중에는 30~50대가 여성 중에서는 20~50대가 높게 나타나며, 문화권의 경우 남성 30~50대, 여성 20~50대가 침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권의 경우 남녀 모두 40~50대가 침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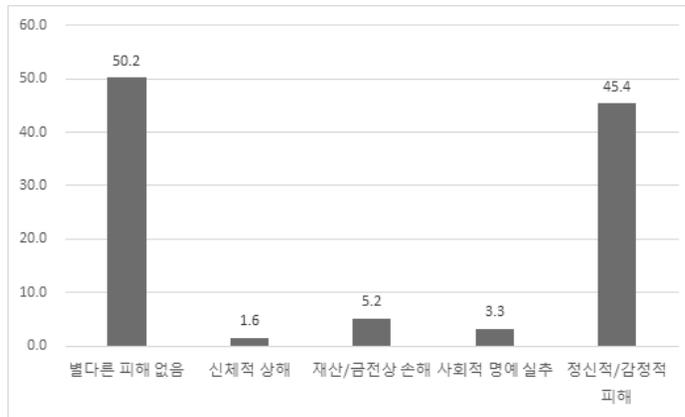
[그림 4.20] 성·연령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



4.4.3. 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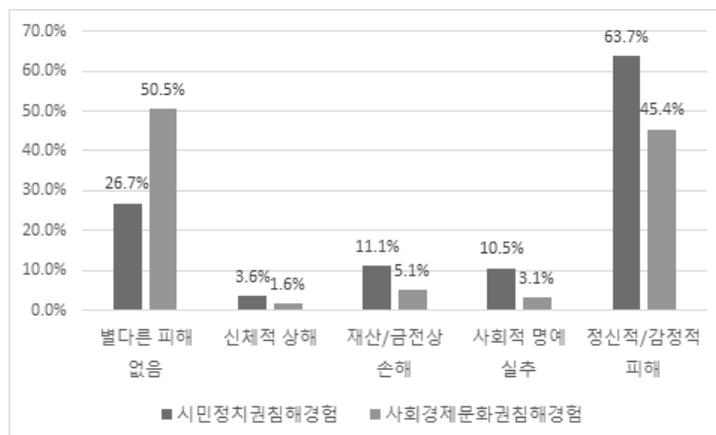
-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50.2%가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45.4%는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 재산/금전상 손해(5.2%), 사회적 명예 실추(3.3%), 신체적 상해(1.6%)의 순이었음

[그림 4.21]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 인권침해 경험을 시민, 정치권의 침해와 사회, 경제, 문화권의 침해로 나누어 피해와 불이익을 비교한 결과,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사회, 경제, 문화권침해의 경우가 50.5%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우의 26.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음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의 경우 피해는 정신적, 감정적 피해가 63.7%로 가장 많고, 재산/금전상 손해(11.1%), 사회적 명예 실추(10.5%), 신체적 상해(3.6%)의 순이며,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의 경우 정신적/감정적 피해가 45.4%이고, 다음으로 재산/금전상 손해(5.1%), 사회적 명예 실추(3.1%), 신체적 상해(1.6%)의 순임

[그림 4.22] 인권침해 경험별 피해와 불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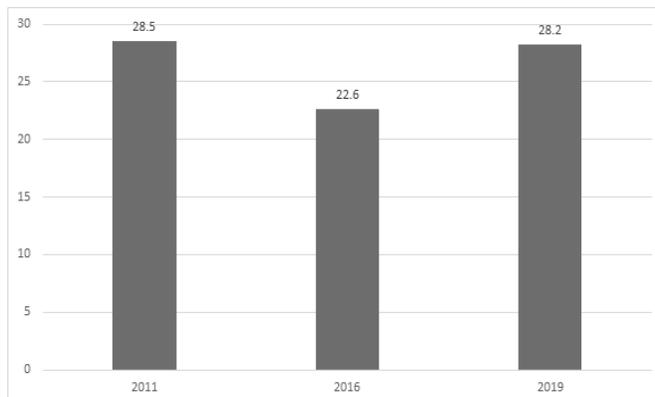
5. 차별 경험

5.1. 차별 경험의 빈도

5.1.1. 차별 경험 빈도의 변화와 국제비교

- 차별은 자유권과 함께 인권의 중요 항목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뿐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요구의 급격한 증가, 다양한 정체성의 인정 요구가 함께 차별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한국을 비롯 유럽과 미국에서도 중요한 인권 관련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에서는 2014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표적 사회조사인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의 일환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최근에는 2018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졌음. 영국에서도 2006년 총리실 주도로 설립된 독립기관인 “평등과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조사가 2018년 실시되었음. 미국에서도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미국에서의 차별(Discrimination in America) 조사를 2017년도에 실시하였음
-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의 유무를 묻은 것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서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11, 2016, 2019년 조사에 걸쳐 비교한 그래프가 [그림 5.1]임. 2019년도 조사에서 본인이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로 2011년의 28.5%와 비슷함. 2016년의 22.6%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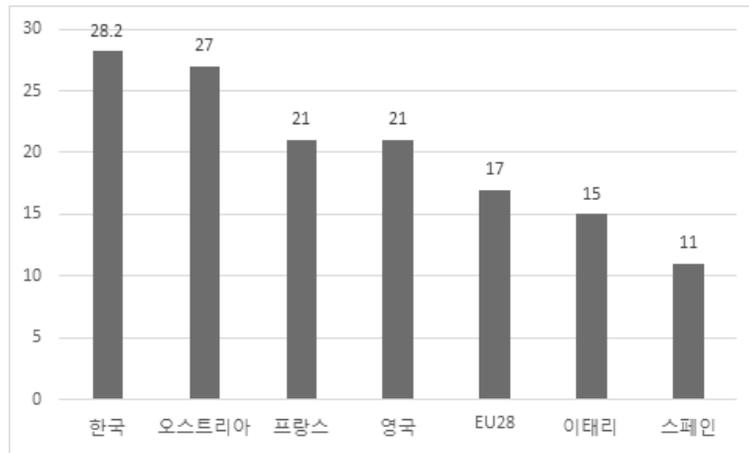
[그림 5.1] 차별 직접 경험비율의 추세



자료” 국민인권인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유로바로미터의 차별에 대한 특별 조사와 비교한 결과가 [그림 5.2]에 제시됨. 미국의 차별 조사는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비교하지 못하였음

[그림 5.2] 차별 경험 비율의 국제 비교



출처: Discrimination in the European Union,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493 (2019) 및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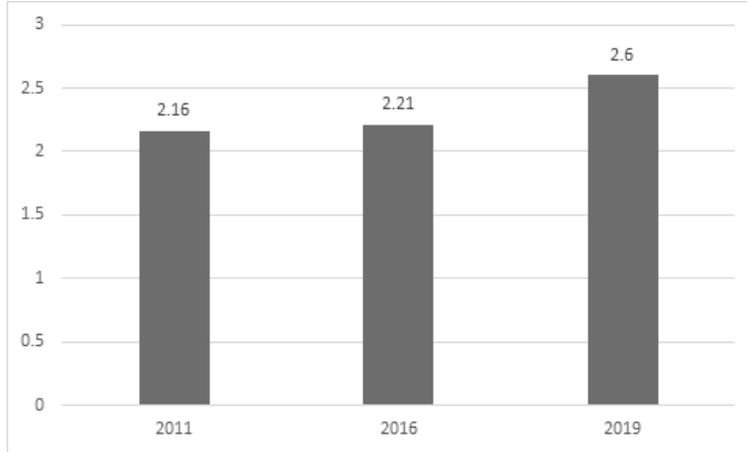
- 한국은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오스트리아(27%)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프랑스와 영국이 21%이며, 전체 유럽연합 평균은 17%임. 이태리(15%)와 스페인(11%)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5.1.2. 차별의 누적적 경험과 상호교차성

□ 차별은 다양한 여러 이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예컨대 여성이면서 용모나 신체 조건에 따라, 또한 학력과 경제적 지위, 고용상 지위에 따라 차별이 겹쳐서 이루어질 경우 차별경험에 따른 피해는 커질 것임. 이를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고 함

-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 중에서 차별의 이유에 따른 종류가 몇 가지인지 비교한 결과([그림 5.3]) 차별의 이유는 평균적으로 2.6개인 것으로 2019년에 조사됨. 이는 2011년의 평균 2.16개와 2016년의 평균 2.21개에 비해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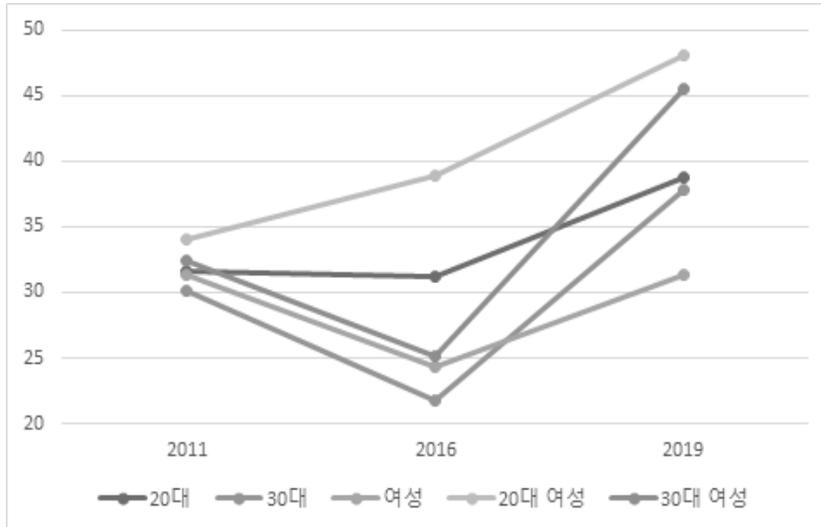
[그림 5.3] 차별 경험자의 평균 차별 종류 수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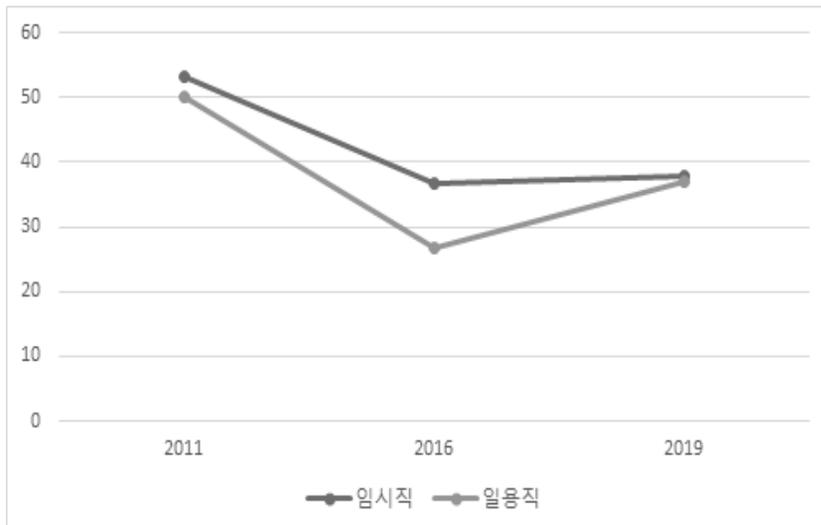
- 차별은 대부분 인구학적 소수자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 차별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5.4]는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연령과 성별의 교차에 따라, 또한 [그림 5.5]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고용상 지위에 따라 차별 경험의 비율을 2011년부터 2019년에 걸쳐 비교함
- [그림 5.4]에서 연령대별 비교로는 20대와 30대 모두 2011년과 2016년에 비해 2019년에 차별 경험 비율이 7%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음. 여성의 차별 경험 비율은 2011년에 비해 2016년이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다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대 여성은 차별 경험의 비율이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5% 포인트 증가하고 다시 2016년과 2019년 사이 9% 포인트 가까이 증가해서 48%에 달함. 30대 여성 역시 2019년에는 45.1%로 2011년에 비해 13% 포인트, 2016년에 비해 20% 포인트 가까운 증가를 보임. 그 결과 20대와 30대 여성은 전체 여성 평균인 31%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차별 경험을 보임. 20대와 30대 남성의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30%에 못 미쳐 전체 평균 차별 경험 비율인 28.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여성과 청년의 상호교차성이 최소한 주관적으로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줌.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차별" 2017년 조사 결과 20대 여성의 50%가 넘게 성차별과 성희롱 경험을 보고해서 중노년 여성과 큰 차이를 보임

[그림 5.4] 인구통계 배경별 차별 경험 비율 추세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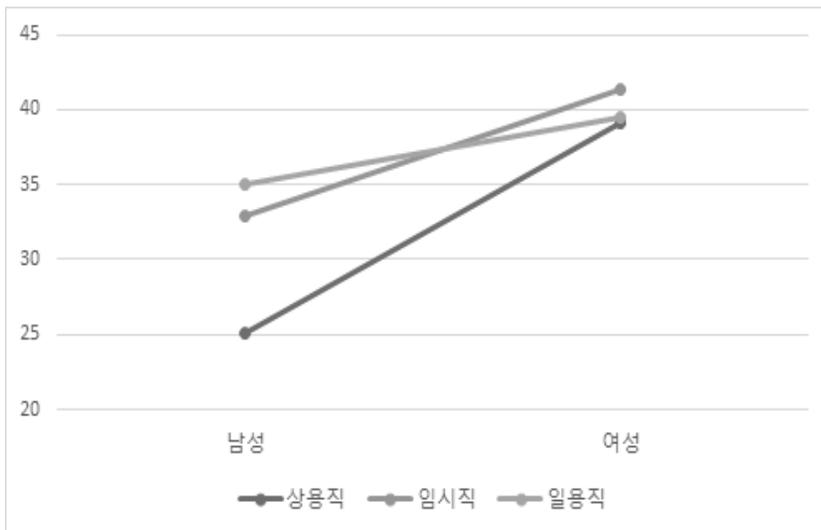
[그림 5.5] 고용상 지위별 차별 경험 비율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그림 5.5]의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 비교는 2011년 임시직과 일용직의 차별 경험이 50%가 넘는 것에 비해 2016년에는 임시직이 14% 포인트, 일용직이 20% 포인트가 넘는 감소를 보이지만, 2019년 일용직 차별 경험은 다시 37%로 증가. 갑질 논란이 2010년대 들어 공론화되며 차별 경험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직장에서의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음
- 성별과 고용상 지위를 교차하여 차별 경험 비율을 비교한 [그림 5.6]에 따르면 여성들은 고용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높은 차별 경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임시직의 차별 경험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6] 성별 고용상 지위별 차별 경험 비율 비교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연령대,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을 조사하였음. 구체적으로,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정치적입장, 장애, 나이,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 학력학벌, 인종피부색출신국가 민족,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 및 병력, 출신지역 차별경험 여부를 질문 하였음. 다음으로 경험한 차별의 개수를 연령대, 성별에 따라 몇 개의 차별을 경험 하였는가를 계산하였음. 경험한 차별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중복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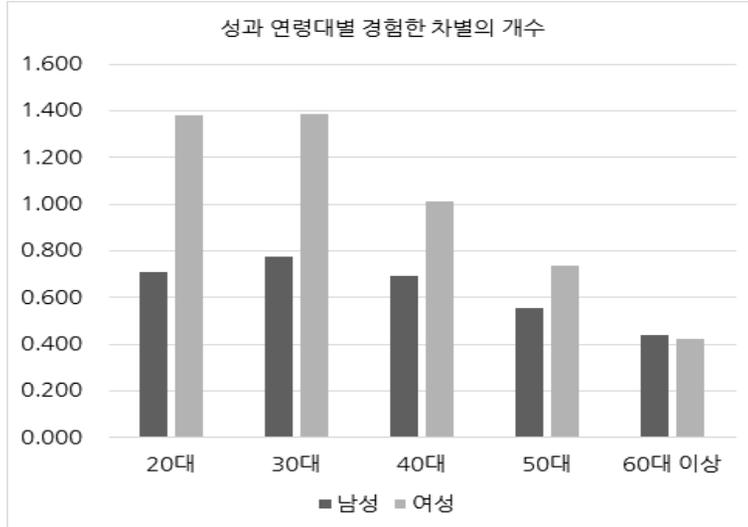
- 연령과 성별로 구분한 결과 가장 많은 중복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20대 여성(평균 1.38개)과 30대 여성(1.39개)인 것으로 나타남
- 20대~5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의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경험한 차별의 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5.1> 성과 연령별 차별 경험의 개수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정치적입장, 장애, 나이, 경제적지위, 고용형태, 학력학벌, 인종피부색 출신국가민족,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및병력, 출신지역 차별경험 중 경험한 차별의 개수)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0.709	-0.672***	0.087	-7.697	<0.001
20대 여성	1.381				
30대 남성	0.772	-0.616***	0.086	-7.189	<0.001
30대 여성	1.388				
40대 남성	0.692	-0.320***	0.069	-4.644	<0.001
40대 여성	1.013				
50대 남성	0.552	-0.183***	0.055	-3.317	<0.001
50대 여성	0.735				
60대 이상 남성	0.437	0.014	0.036	0.387	0.699
60대 이상 여성	0.423				

[그림 5.7] 성과 연령별 차별 경험의 개수



□ 성별에 따라 경험한 차별의 개수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회귀분석 결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20대 남성에 비해 30대, 40대 남성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반면 20대 여성에 비해 50대, 60대 이상 여성은 더 적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 고졸 이하 여성에 비해 대졸 이상 여성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 남성에서는,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생산/기술직, 단순노무직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한편 여성에서는,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 정치 성향에 "관심 없음"으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보수, 중도, 진보 집단 모두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 배우자가 있는 남성에 비해, 미혼, 사별, 이혼/별거 남성들이 더 많은 수의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한편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미혼, 이별/별거 여성들이 더 많은 수의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음

<표 5.2> 회귀분석 결과 (경험한 차별의 개수)

	남성	여성
연령대 (ref: 20대)		
30대	0.191** (0.074)	0.157 (0.095)
40대	0.166* (0.078)	-0.187 (0.099)
50대	0.015 (0.080)	-0.418*** (0.104)
60대 이상	-0.038 (0.087)	-0.596*** (0.111)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중졸 이하	0.024 (0.060)	-0.022 (0.066)
대졸 이상	0.020 (0.045)	0.134* (0.058)
대학원 이상	-0.032 (0.084)	0.234 (0.122)
직업 (ref: 일하지 않음)		
관리자/전문가	0.129 (0.068)	0.160* (0.079)
사무직	0.051 (0.074)	0.231** (0.080)
서비스/판매직	0.270*** (0.060)	0.216*** (0.055)
생산/기술직	0.183** (0.066)	0.010 (0.136)
농업/어업	-0.063 (0.076)	-0.028 (0.090)
단순노무직	0.375*** (0.069)	0.342*** (0.079)
군인	0.193 (0.225)	-0.487 (0.962)
월 가구소득 (100만원)	-0.021** (0.008)	-0.021* (0.009)
정치적 성향 (ref: 없음)		
보수적	0.165** (0.055)	0.172* (0.067)
중도	0.144** (0.047)	0.171*** (0.050)
진보적	0.194*** (0.052)	0.332*** (0.060)

	남성	여성
결혼 (ref: 배우자 있음)		
미혼	0.342*** (0.059)	0.278*** (0.082)
사별	0.257* (0.105)	0.036 (0.069)
이혼/별거	0.544*** (0.077)	0.600*** (0.089)
상수	0.236* (0.096)	0.847*** (0.111)
N	6273	6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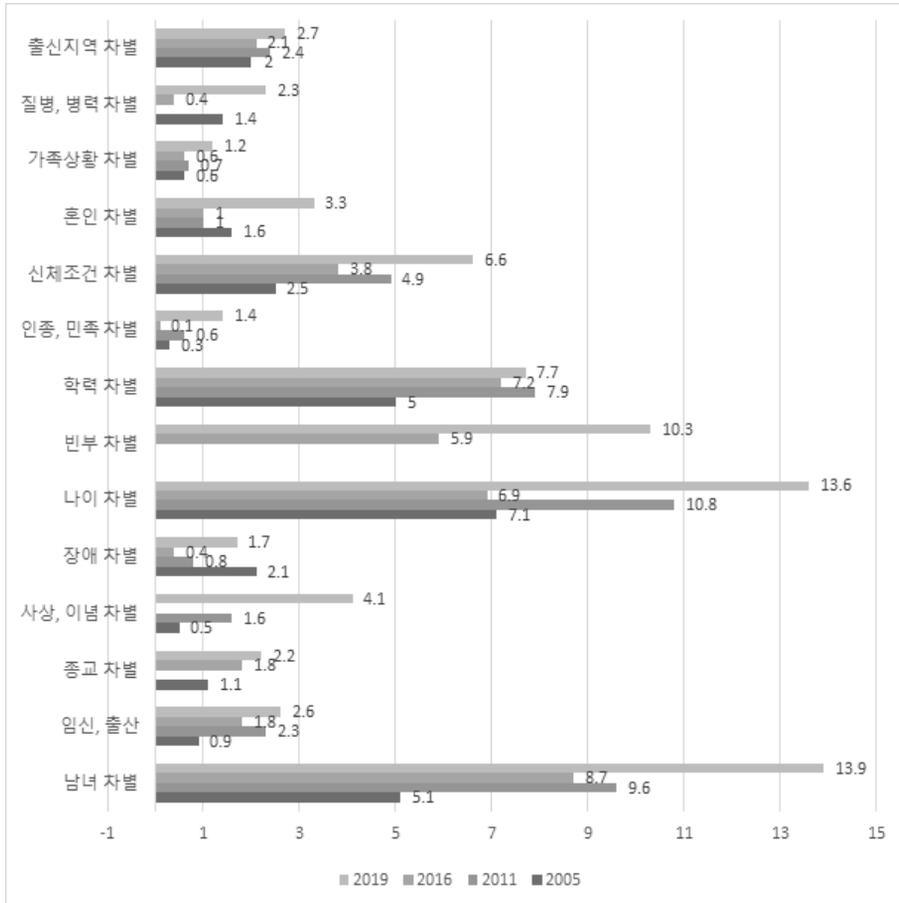
* $p < 0.05$, ** $p < 0.01$, *** $p < 0.001$

참고: 차별의 개수는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정치적입장, 장애, 나이,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 학력학벌, 인종피부색출신국가민족,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및병력, 출신지역 차별경험 중 경험한 차별의 개수

5.1.3. 차별 종류별 경험빈도와 변화

□ [그림 5.8]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차별을 받았는지를 구분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을 조사 연도별로 비교하고 있음

[그림 5.8] 차별 이유에 따른 차별의 직접 경험 비율 비교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차별의 이유는 나이에 따른 차별과 남녀의 차별로 각각 13.6%와 13.9%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빈부에 따른 차별이 10.3%로 높고, 학력에 따른 차별은 7.7%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과 2011년에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2016년 이후 2019년에도 남녀 차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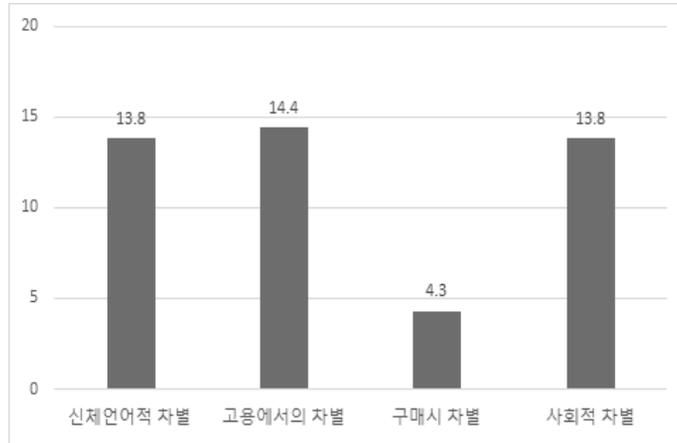
- 남녀 차별은 가장 높은 경험의 비율을 보일 뿐 아니라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차별이기도 함. 2005년 남녀 차별의 경험 비율은 5.1%였던 것이, 2011년에는 9.6%, 2016년에는 8.7%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13.9%로 증가해서 2005년 대비 2019년에 8.8% 포인트 증가함
-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인종이나 민족, 사상이나 이념, 종교에 따른 차별은 아직 한국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별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음

5.2. 차별의 내용과 피해

□ 차별의 이유와 함께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 어떤 내용의 차별을 경험했는가 또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임. 2019년 조사에서 차별의 상황과 내용에 따라 차별 경험 여부를 응답한 결과가 [그림 5.9]에 제시되어 있음

- 차별의 상황과 내용으로는 고용에서의 차별이 응답자의 14.4%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사회적 차별과 신체, 언어적 차별로 13.8%로 나타남.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차별을 당했다는 경험의 비율은 4.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고용상의 차별 즉 직장에서의 차별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가장 일반화된 차별로 나타나며, 구직과정에서의 차별과 일하는 과정에서의 차별, 보상이나 승진에서의 차별 등 다양하게 차별이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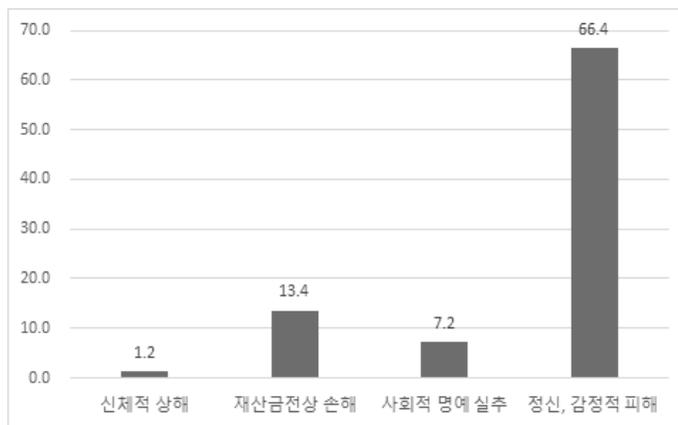
[그림 5.9] 차별의 내용별 경험 비율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의 종류를 비교한 [그림 5.10]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정신, 감정적 피해로 66.4%에 이릅니다. 재산과 금전상 손해가 그 다음으로 13.4%이고, 사회적 명예의 실추와 신체적 상해가 각각 7.2%와 1.2%를 차지함

[그림 5.10] 차별에 따른 피해의 비율



자료: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5.3.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방식

□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 가해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을 조사하였음. 구체적으로, 지난 1년 간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을 물은 뒤, 1순위로 지목된 사람의 비율을 성별에 따라 조사하였음. 다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식을 성별에 따라 조사하였음

○ 남성에게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은 순서대로 보면 1위가 구매자 (고객), 2위가 기타 (주변 환경, 소음 등), 3위가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4위가 정치인, 5위가 경찰이었음. 여성에게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은 순서대로 1위가 구매자 (고객), 2위가 기타 (주변 환경, 소음 등), 3위가 복지시설 종사자, 4위가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5위가 정치인이었음

<표 5.3> 지난 1년 간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

	남성		여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검찰	2.81%	9	1.80%	12
경찰	7.27%	5	3.38%	7
법원(판사) 등	1.50%	13	1.80%	12
교사	0.40%	17	0.09%	16
대학교수	1.60%	12	0.00%	17
일반 공무원	0.85%	16	1.93%	10
정치인	11.43%	4	8.65%	5
가족 구성원	3.31%	8	1.84%	11
복지시설 종사자	6.67%	6	13.04%	3
언론인 (신문기자, 방송인 등)	1.30%	14	0.66%	15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1.65%	11	2.64%	8
종교지도자	2.21%	10	2.11%	9
직장동료	3.86%	7	4.48%	6
직장상사	1.05%	15	1.23%	14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12.58%	3	12.38%	4
구매자 (고객)	27.52%	1	25.56%	1
기타	13.98%	2	18.40%	2

- 가해 상황에서 대처방법을 보면, (1)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2)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4)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5)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6)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중 지난 1년 동안의 대처 방식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음
-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각 대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였음(여러 개의 응답을 허용하였음). 인터넷,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린 사람은 남성 중 50.42%, 여성 중 57.20%에 달했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비율은 남성 중 42.60%, 여성 중 34.57%였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남성 중 38.83%, 여성 중 42.09%였음.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음

<표 5.4> 지난 1년 간 인권침해나 차별 대처 방식

	남성 (N=6,273)		여성 (N=6,804)	
	N	%	N	%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647	10.31%	619	9.10%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2,672	42.60%	2,352	34.57%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3,163	50.42%	3,892	57.20%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463	7.38%	689	10.13%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64	1.02%	35	0.51%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2,436	38.83%	2,864	42.09%

6. 인권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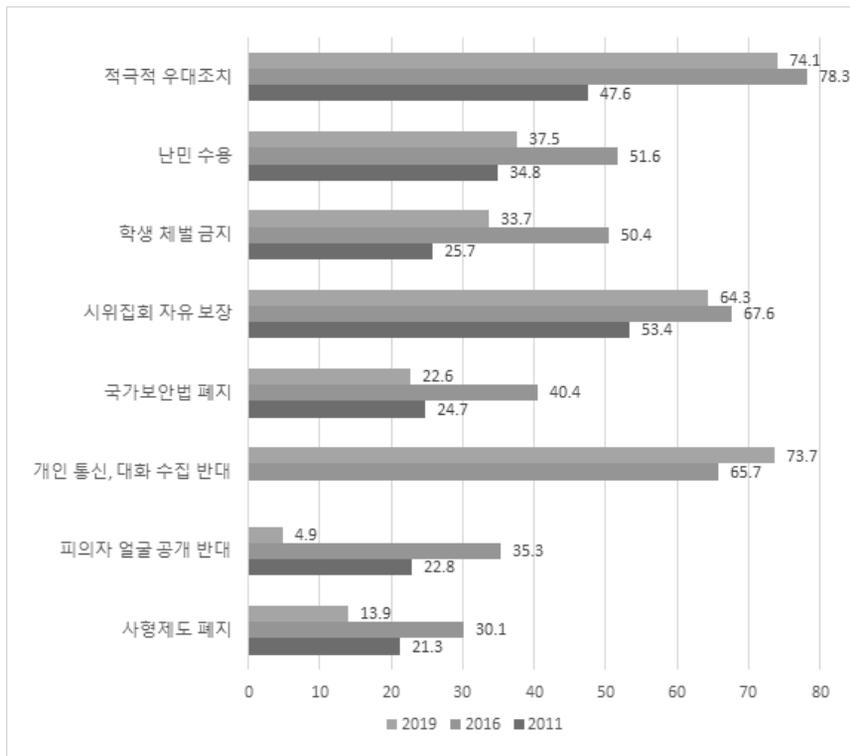
6.1. 인권 쟁점들에 대한 의견

6.1.1. 인권 쟁점별 의견의 변화와 국제비교

□ 인권의 보호는 법적으로 이미 규정되고 주어진 권리들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해석과 재해석, 주장과 반박을 통해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임. 따라서 다양한 인권 관련 쟁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의 변화 역시 인권실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됨

○ [그림 6.1]은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의견 변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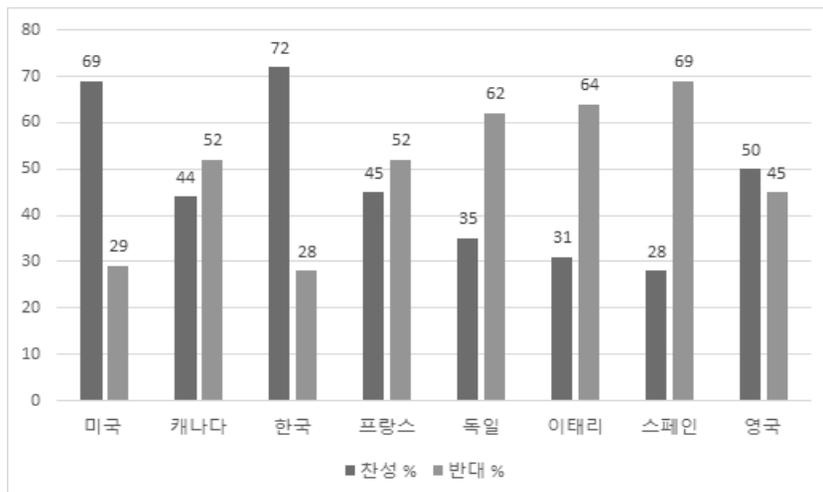
[그림 6.1] 주요 인권 쟁점별 의견의 변화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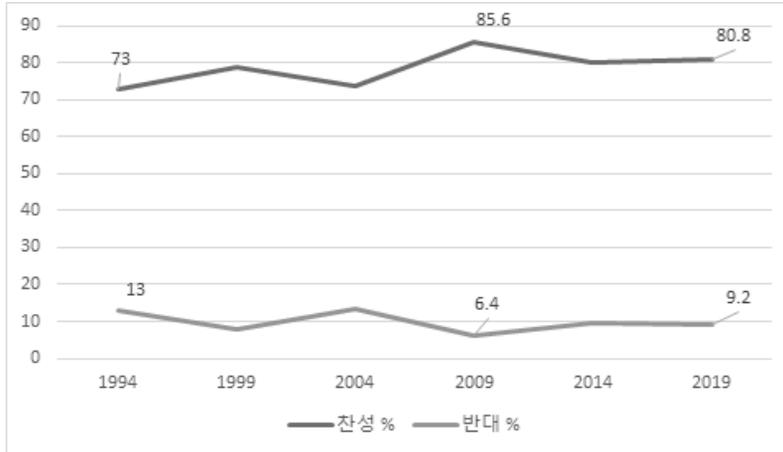
- 최근 논란이 많이 되었던 개인간 통신과 대화에 대한 정보 수집에 반대하는 의견이 73.7%로 높은 찬성의 비율을 보이며,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74.2%로 높게 나타남. 이는 앞선 조사에서 평등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정치적 권리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이 64.3%의 찬성을 보임
- 반면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13.9%로 2011년 21.3%와 2016년 30.1%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권위에서 실시한 <2018년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의 조사결과인 13.9% 찬성과는 거의 같음. 2016년 KGSS에서는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 2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그림 6.2] 사형제에 대한 의견: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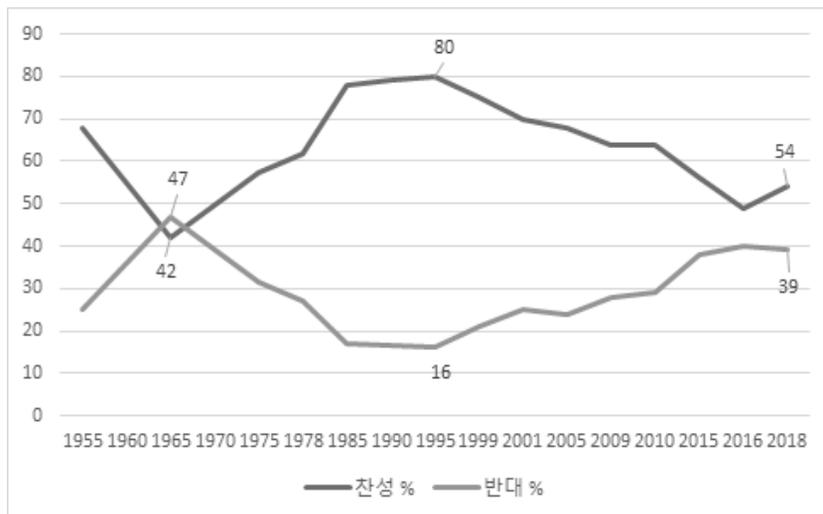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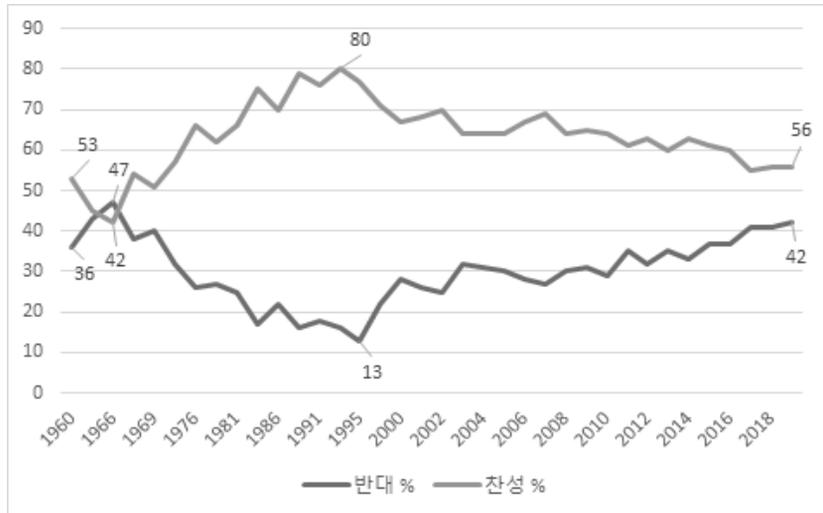
-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국제비교하기 위해 글로벌 리서치기관인 Ipsos에서 2007년 조사한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에서는 모두 사형제 반대가 절반을 넘은 반면, 사형제가 유지된 한국은 반대가 28%, 주별로 유지(31개 주)와 폐지(17개 주)가 섞인 미국은 반대가 29%임

[그림 6.3] 사형제에 대한 의견: 일본



- 일본의 경우 내각성이 1994년 이후 5년마다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사형제 반대 의견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음
- 미국의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위)과 Pew 리서치(아래)의 시계열 비교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임. 사형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우세했던 1960년대 중반 이후 찬성 의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0년대 중반 찬성 80%, 반대 16%(Pew), 13%(갤럽)로 가장 낮은 반대 비율을 보임. 이후 반대 의견이 2000년대 들어 늘어나기 시작해서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사형제 찬성이 54%(Pew), 56%(갤럽)로 반대 39%(Pew), 42%(갤럽)를 15% 포인트 가량 앞섬

[그림 6.4] 미국의 사형제에 대한 의견



- 과거 인권위 인권의식조사와 KGSS 2016년 모두 일관되게 사형제 유지의 응답률이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사형제 폐지보다 높게 나왔으며, 조사마다 응답률의 차이를 보임. 이들 조사는 모두 한결같이 조사 문항의 원칙에 따라 전제 조건이 없이 조사한 결과임

- 반면 사형제 폐지라는 쟁점은 대체 형벌을 전제로 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인 <2018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에서 대체형벌을 전제로 질문한 결과 기존 조사에 비해 사형제 폐지 응답률(66.9%)이 높게 나타남
- 조사 시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과거 <유영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유지가 66.3%, 종신형 대체가 30.9%로 나왔던 것과 같이 2019년 <안인득(4월), 고유정(6월), 장대호(8월)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도 사형제도 관련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고려가 가장 많은 응답률의 변화를 보인 피의자 얼굴 공개 쟁점에서도 해당됨. 2011년 22.8%, 2016년 35.3%에 달하던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의견이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4.9%로 급격히 줄어든 것 역시 <안인득(4월), 고유정(6월), 장대호(8월) 사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조사 시점과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그밖에도 학생 체벌 금지(33.7%), 난민 수용(37.5%), 국가보안법 폐지(22.6%) 등에 대한 찬성은 2016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2011년 조사 결과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난민 수용의 경우 2016년에는 시리아 난민으로 한정하여 질문한 점을 고려한다면 직접적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1.2. 배경별 인권 쟁점에 대한 의견

- 사형제 폐지 또는 유지에 대하여 평균 1.58(4점 기준)이므로 전체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함. 성별로는 사형제 유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지만, 다른 배경변수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70대 이상, 대학교 이상, 정치적 진보 성향, 종교가 있고, 인권교육을 받은 응답자, 그리고 인간이 존엄한 사회가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 의미와 보람, 비간접 자유를 추구하는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반면 사형제 유지 주장은 30대, 전문대, 정치적 보수, 경제적 풍요를 추구, 종교가 없고,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높음

<표 6.1> 사형제에 대한 배경변수별 의견 비교

사형제 (1: 적극유지 ~ 4: 적극폐지)		평균	표준편차	F/t (p)
전 체		1.58	.915	
성별	남성	1.58	.932	-.144 (.886)
	여성	1.58	.899	
연령별	20대 이하	1.56	.817	4.182 (.000)
	30대	1.50	.842	
	40대	1.60	.939	
	50대	1.60	.953	
	60대	1.58	.923	
	70대 이상	1.62	.96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8	.911	9.713 (.000)
	고등학교	1.57	.919	
	전문대	1.51	.845	
	대학교 이상	1.64	.949	
사회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존엄한 사회	1.61	.939	5.155 (.001)
	관용적인 사회	1.51	.844	
	자유로운 사회	1.58	.909	
	평등한 사회	1.55	.897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1.50	.856	32.635 (.000)
	즐거움	1.61	.920	
	의미와 보람	1.76	1.038	
	화목한 어울림	1.60	.917	
	비간섭 자유	1.64	.959	
정치 성향	보수	1.47	.863	21.541 (.000)
	중도	1.57	.876	
	진보	1.68	1.017	
	무관심	1.58	.904	
종교	종교 있음	1.62	.958	5.143 (.000)
	종교 없음	1.54	.872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1.63	.958	2.267 (.023)
	인권교육 안받았음	1.57	.908	

- 범죄피의자의 얼굴 공개 역시 1.28점(4점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함. 배경변수별로는 성별, 종교 유무, 인권교육 여부는 의견 차이가 없으며, 연령, 교육수준, 정치 성향, 사회적 및 개인적 가치에 따른 차이를 보임
- 범죄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은 70대 이상, 중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의미와 보람, 비간섭 자유를 추구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얼굴 공개 찬성 의견은 30대, 전문대, 평등한 사회 중시, 경제적 풍요를 추구, 정치적 보수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6.2>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배경변수별 의견 비교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 (1: 매우찬성 ~ 4: 매우반대)		평균	표준편차	F/t (p)
전 체		1.28	.615	
성별	남성	1.28	.623	.213
	여성	1.28	.609	(.831)
연령별	20대 이하	1.26	.577	5.485 (.000)
	30대	1.25	.579	
	40대	1.26	.586	
	50대	1.30	.638	
	60대	1.27	.606	
	70대 이상	1.33	.6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0	.652	6.084 (.000)
	고등학교	1.27	.608	
	전문대	1.23	.549	
	대학교 이상	1.29	.628	
사회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존엄한 사회	1.28	.613	4.693 (.003)
	관용적인 사회	1.31	.639	
	자유로운 사회	1.30	.647	
	평등한 사회	1.25	.589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1.25	.569	13.226 (.000)
	즐거움	1.27	.590	
	의미와 보람	1.35	.690	
	화목한 어울림	1.29	.647	
	비간섭 자유	1.34	.735	
정치 성향	보수	1.24	.577	3.556 (.014)
	중도	1.28	.594	
	진보	1.28	.650	
	무관심	1.29	.630	
종교	종교 있음	1.29	.634	1.556
	종교 없음	1.27	.597	(.120)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1.27	.618	-.669
	인권교육 안받았음	1.28	.615	(.503)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개인통신 감찰에 대해서는 4점 기준으로 3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서 반대의견에 가깝게 분포함

□ 배경변수별로는 종교 유무,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다른 배경변수는 응답자에 따른 차이를 보임. 통신감찰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응답자는 남성, 50대, 60대, 대학교 이상, 의미와 보람, 비간섭 자유 추구, 정치적 진보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통신감찰에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는 여성, 70대 이상, 중학교 이하, 관용적인 사회, 즐거움 추구자, 정치 무관심층으로 나타남

<표 6.3> 정부기관의 개인통신 감찰에 대한 배경변수별 의견 비교

정부기관의 개인통신 감찰 (1: 매우찬성 ~ 4: 매우반대)		평균	표준편차	F/t (p)
전 체		3.11	1.052	
성별	남성	3.18	1.036	7.092
	여성	3.05	1.062	(.000)
연령별	20대 이하	3.08	1.007	7.584 (.000)
	30대	3.06	1.073	
	40대	3.11	1.044	
	50대	3.19	1.058	
	60대	3.17	1.057	
	70대 이상	3.03	1.05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6	1.054	13.843 (.000)
	고등학교	3.09	1.094	
	전문대	3.08	1.064	
	대학교 이상	3.20	.989	
사회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존엄한 사회	3.15	1.026	8.646 (.000)
	관용적인 사회	2.98	1.090	
	자유로운 사회	3.11	1.076	
	평등한 사회	3.10	1.065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3.09	1.068	9.867 (.000)
	즐거움	3.07	1.051	
	의미와 보람	3.19	1.010	
	화목한 어울림	3.10	1.064	
	비간섭 자유	3.29	.969	
정치 성향	보수	3.11	1.106	16.963 (.000)
	중도	3.15	1.011	
	진보	3.20	1.019	
	무관심	3.03	1.080	
종교	종교 있음	3.11	1.057	.123
	종교 없음	3.11	1.047	(.902)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3.15	1.046	1.693
	인권교육 안받았음	3.11	1.053	(.089)

-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국가보안법 유지 의견이 강하게 표출된 응답자는 여성, 60대 및 70대 이상,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자유로운 사회, 경제적 풍요 추구이며 특히 정치적 보수 성향은 1.49점으로 가장 낮음
-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된 응답자는 남성, 40대, 대학교 이상, 인간이 존엄한 사회, 비간섭 자유, 의미와 보람 추구, 정치적 진보, 인권교육 받은 경우로 나타남

<표 6.4> 국가보안법에 대한 배경변수별 의견 비교

국가보안법 (1: 매우유지 ~ 4: 매우폐지)		평균	표준편차	F/t (p)
전 체		1.85	1.007	
성별	남성	1.91	1.072	6.656 (.000)
	여성	1.79	.940	
연령별	20대 이하	1.82	.895	46.019 (.000)
	30대	1.88	.988	
	40대	2.05	1.085	
	50대	1.89	1.073	
	60대	1.70	.967	
	70대 이상	1.67	.8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1	.910	109.608 (.000)
	고등학교	1.74	.984	
	전문대	1.81	.968	
	대학교 이상	2.09	1.081	
사회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존엄한 사회	1.90	1.037	11.183 (.000)
	관용적인 사회	1.84	.982	
	자유로운 사회	1.77	.951	
	평등한 사회	1.81	.989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1.77	.963	22.280 (.000)
	즐거움	1.91	1.019	
	의미와 보람	1.99	1.087	
	화목한 어울림	1.83	.985	
	비간섭 자유	1.96	1.113	
정치 성향	보수	1.49	.812	271.892 (.000)
	중도	1.86	.969	
	진보	2.27	1.178	
	무관심	1.74	.916	
종교	종교 있음	1.80	1.000	-4.670 (.000)
	종교 없음	1.89	1.012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1.98	1.075	5.876 (.000)
	인권교육 안받았음	1.82	.994	

- 시위·집회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한 응답자는 남성, 20대~40대층(연령이 젊을수록 시위·집회 자유 보장 의견이 높아짐), 전문대, 대학교 이상(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위·집회 자유 보장 의견이 높아짐), 즐거움, 의미와 보람 추구, 정치적 진보, 종교가 없고,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임
- 반면 시위·집회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은 50대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관용적인 사회, 화목한 어울림, 정치적 보수, 종교가 있는 경우임

<표 6.5> 시위·집회의 자유에 대한 배경변수별 의견 비교

시위·집회의 자유 (1: 상황적 제한 ~ 4: 적극적 보장)		평균	표준편차	F/t (p)
전 체		2.72	1.117	
성별	남성	2.75	1.128	2.706 (.007)
	여성	2.69	1.106	
연령별	20대 이하	3.06	.972	151.682 (.000)
	30대	3.01	1.026	
	40대	2.90	1.071	
	50대	2.64	1.153	
	60대	2.40	1.149	
	70대 이상	2.39	1.08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2	1.097	167.025 (.000)
	고등학교	2.62	1.152	
	전문대	2.88	1.072	
	대학교 이상	2.97	1.045	
사회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존엄한 사회	2.76	1.112	8.733 (.000)
	관용적인 사회	2.59	1.103	
	자유로운 사회	2.69	1.122	
	평등한 사회	2.71	1.123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2.71	1.117	8.642 (.000)
	즐거움	2.78	1.089	
	의미와 보람	2.79	1.122	
	화목한 어울림	2.60	1.107	
	비간섭 자유	2.73	1.172	
정치 성향	보수	2.54	1.171	77.239 (.000)
	중도	2.79	1.063	
	진보	2.94	1.119	
	무관심	2.59	1.112	
종교	종교 있음	2.66	1.130	-5.744 (.000)
	종교 없음	2.77	1.101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2.89	1.100	7.110 (.000)
	인권교육 안받았음	2.69	1.117	

- 학생에 대한 체벌은 2.19점(4점 기준)으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타남. 종교 유무, 인권교육 여부에 따른 의미있는 의견 차이는 없으며, 다른 배경 변수별로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냄
- 체벌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여성, 20대, 70대 이상, 중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인간이 존엄한 사회, 의미와 보람, 화목한 어울림, 비간섭 자유를 추구, 정치적 진보로 나타남. 반면 체벌 허용은 남성, 30대, 60대, 고등학교, 전문대, 관용적인 사회, 경제적 풍요 추구, 정치적 보수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의견이 많음

<표 6.6> 학생 체벌에 대한 배경변수별 의견 비교

학생에 대한 체벌 (1: 매우허용 ~ 4: 매우반대)		평균	표준편차	F/t (p)
전 체		2.19	1.045	
성별	남성	2.10	1.029	-9.864 (.000)
	여성	2.28	1.052	
연령별	20대 이하	2.26	1.044	14.432 (.000)
	30대	2.13	1.041	
	40대	2.25	1.068	
	50대	2.14	1.023	
	60대	2.10	1.006	
	70대 이상	2.31	1.07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5	1.057	26.380 (.000)
	고등학교	2.10	1.024	
	전문대	2.12	1.022	
	대학교 이상	2.28	1.061	
사회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존엄한 사회	2.24	1.062	11.589 (.000)
	관용적인 사회	2.09	.973	
	자유로운 사회	2.12	1.009	
	평등한 사회	2.19	1.055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2.13	1.019	13.380 (.000)
	즐거움	2.22	1.052	
	의미와 보람	2.24	1.061	
	화목한 어울림	2.28	1.064	
	비간섭 자유	2.32	1.118	
정치 성향	보수	2.01	.994	31.979 (.000)
	중도	2.18	1.007	
	진보	2.30	1.100	
	무관심	2.23	1.059	
종교	종교 있음	2.18	1.043	-1.292 (.196)
	종교 없음	2.20	1.047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2.18	1.059	-.385 (.700)
	인권교육 안받았음	2.19	1.043	

-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2.14(4점 기준)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의견 차이가 없는 반면 다른 배경변수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 난민을 받아들이는 허용적 의견이 강한 응답자는 남성, 40대, 50대,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의미와 보람 추구, 정치적 진보,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로 나타남. 반면 난민 제한을 주장하는 의견은 여성, 20대 이하, 30대, 전문대, 중학교 이하, 평등한 사회, 경제적 풍요 추구, 정치적 보수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표 6.7> 난민 인정에 대한 배경변수별 의견 비교

난민 인정 (1: 가급적 제한 ~ 4: 가급적 허용)		평균	표준편차	F/t (p)
전 체		2.14	1.006	
성별	남성	2.20	1.028	6.704 (.000)
	여성	2.08	.982	
연령별	20대 이하	2.04	.964	15.482 (.000)
	30대	2.02	.989	
	40대	2.22	.981	
	50대	2.21	1.027	
	60대	2.14	1.040	
	70대 이상	2.11	1.0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9	1.004	6.219 (.000)
	고등학교	2.17	1.018	
	전문대	2.08	.985	
	대학교 이상	2.16	1.005	
사회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존엄한 사회	2.16	1.006	3.115 (.025)
	관용적인 사회	2.17	.991	
	자유로운 사회	2.11	1.014	
	평등한 사회	2.10	1.005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2.07	.998	19.477 (.000)
	즐거움	2.20	1.004	
	의미와 보람	2.28	1.011	
	화목한 어울림	2.14	.992	
	비간섭 자유	2.12	1.051	
정치 성향	보수	2.08	1.037	21.106 (.000)
	중도	2.13	.971	
	진보	2.27	1.054	
	무관심	2.09	.988	
종교	종교 있음	2.15	1.013	1.658 (.097)
	종교 없음	2.12	.999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2.24	1.019	4.542 (.000)
	인권교육 안받았음	2.12	1.003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서는 3.0점(4점 기준)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타남. 적극적 우대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는 여성, 50대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 중학교 이하, 의미와 보람 추구, 정치적 진보, 종교 있는 경우로 나타남
- 반면 적극적 우대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은 남성, 20대, 30대, 전문대, 대학교 이상, 관용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비간섭 자유 추구, 종교 없는 경우로 나타남. 남성, 젊은층, 고학력층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능력주의와 공정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청년담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6.8>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배경변수별 의견 비교

적극적 우대조치 (1: 매우반대 ~ 4: 매우찬성)		평균	표준편차	F/t (p)
전 체		3.00	.918	
성별	남성	2.95	.943	-5.127 (.000)
	여성	3.04	.891	
연령별	20대 이하	2.82	.948	28.289 (.000)
	30대	2.88	.953	
	40대	3.00	.872	
	50대	3.05	.909	
	60대	3.07	.905	
	70대 이상	3.09	.9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6	.931	18.578 (.000)
	고등학교	3.04	.897	
	전문대	2.93	.917	
	대학교 이상	2.93	.923	
사회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존엄한 사회	3.03	.883	12.255 (.000)
	관용적인 사회	2.92	.933	
	자유로운 사회	2.92	.971	
	평등한 사회	3.00	.934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경제적 풍요	2.97	.926	5.219 (.000)
	즐거움	2.98	.922	
	의미와 보람	3.07	.880	
	화목한 어울림	3.03	.888	
	비간섭 자유	2.95	.998	
정치 성향	보수	2.96	.965	20.665 (.000)
	중도	2.96	.889	
	진보	3.12	.885	
	무관심	2.97	.936	
종교	종교 있음	3.04	.904	5.198 (.000)
	종교 없음	2.96	.928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았음	2.94	.943	-2.640 (.008)
	인권교육 안받았음	3.00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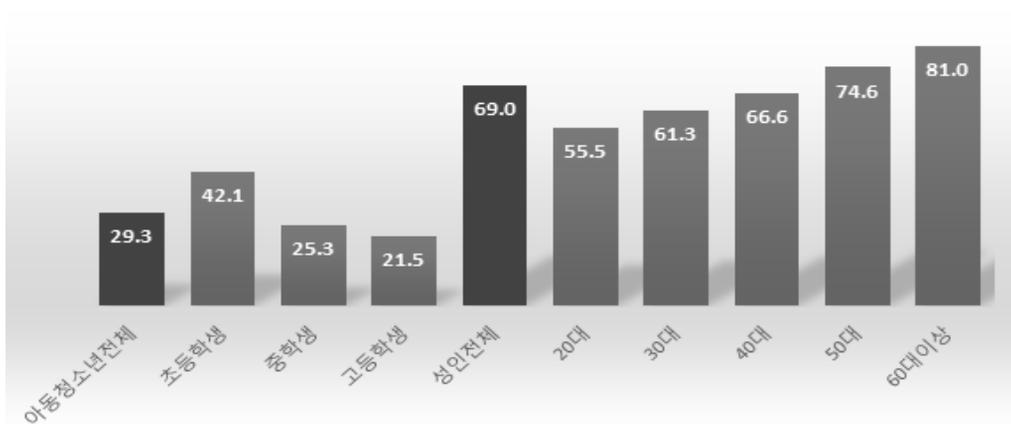
6.2. 아동, 청소년의 인권 쟁점

6.2.1.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최근 결과와 성인 조사 비교

-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문항을 조사하였음.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음.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일반 성인의 의견은 뚜렷하게 대비되며,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은 결정능력 부족으로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고등학생 21.5%, 중학생 25.3%에 불과하며 초등학생조차도 42.1%로 절반 이하임. 반면 20대는 55.5%로 과반을 차지하며,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80% 이상이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을 부정하고 있음
- 중·고등학생 시기를 지나온지 얼마 되지 않는 20대조차도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며, 아동·청소년의 의견(29.3%)보다 성인의 의견(69.0%)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그림 6.5]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의견 비교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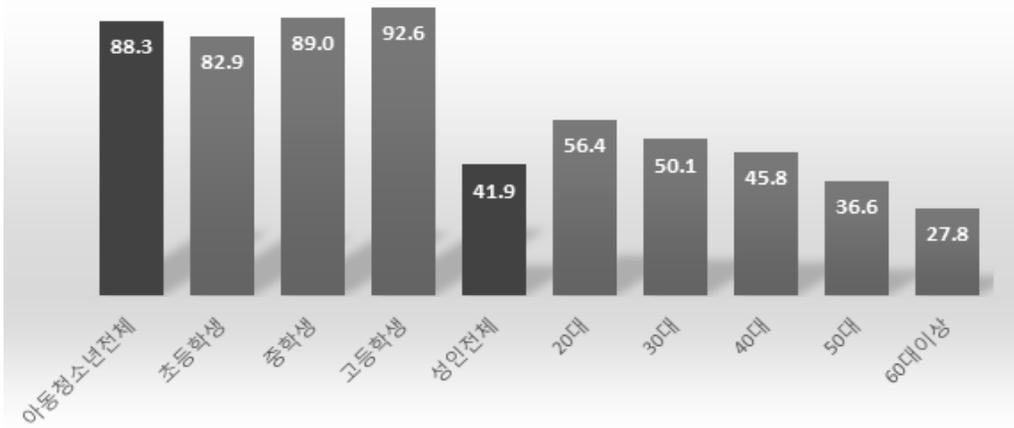


자료: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 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2019),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88.3%가 찬성하는 의견인 반면 일반성인의 41.9%가 동의하고 있음. 아동·청소년 중에서 특히 고등학생은 90% 이상이 사회정치 참여에 동의하는 등 현실 참여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남. 만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고등학생의 참여 욕구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짐
-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해 20대에서는 동의(56.4%)하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43.6%) 의견보다 다소 높음. 또한 30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50.1%)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49.9%)이 팽팽하게 양분되어 있음. 40대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동의하는 의견이 뚜렷하게 감소하여 60대 이상에서는 27.8%에 불과함. 성인의 동의 비율(41.9%)은 아동·청소년의 동의 비율(88.3%)에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6]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의견 비교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 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2019),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6.2.2. 아동, 청소년 인권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

□ 아동,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인권에 관하여 물었음. 첫째,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묻은 질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었음. 둘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셋째, 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었음

<표 6.9>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남성	2.828	0.020	0.013	1.594	0.111
여성	2.808				

1)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매우 동의한다

<표 6.10>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남성	2.353	-0.044***	0.013	-3.414	<0.001
여성	2.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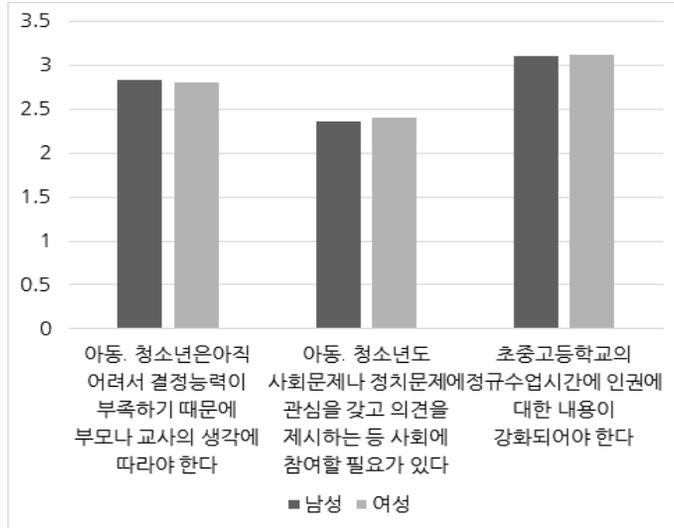
1)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매우 동의한다

<표 6.11>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남성	3.102	-0.010	0.012	-0.870	0.384
여성	3.112				

1)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매우 동의한다

[그림 6.7] 아동,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인권



6.3. 사회적 배제와 거리

6.3.1. 사회적 거리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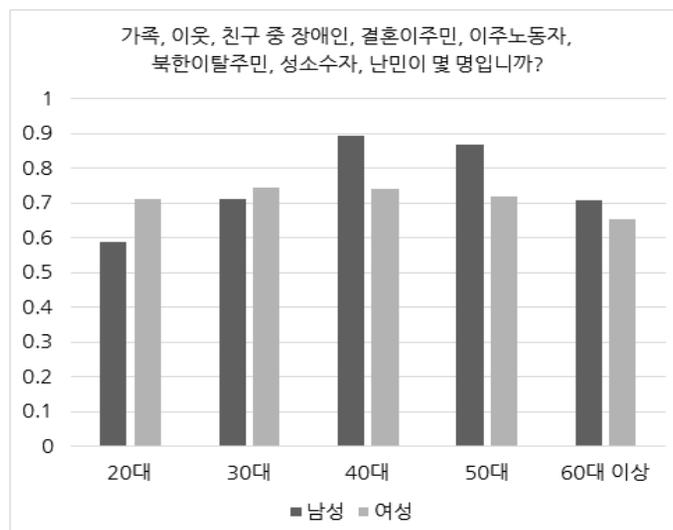
- 사회적 연결망(가족, 이웃, 친구) 중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의 수를 묻고, 연령대별,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음
- 20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중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이 많았음. 40, 50대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족, 이웃, 친구 중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이 많았음

<표 6.12> 가족, 이웃, 친구 중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이 몇 명입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0.590	-0.124**	0.046	-2.670	0.008
20대 여성	0.714				
30대 남성	0.714	-0.031	0.044	-0.708	0.479
30대 여성	0.745				
40대 남성	0.896	0.155***	0.039	3.947	<0.001
40대 여성	0.741				
50대 남성	0.870	0.151***	0.038	3.974	<0.001
50대 여성	0.719				
60대 이상 남성	0.708	0.053	0.028	1.939	0.053
60대 이상 여성	0.655				

*p<0.05 **p<0.01 ***p<0.001

[그림 6.8] 가족, 이웃, 친구 중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이 몇 명입니까?



6.3.2. 사회적 배제와 거리감: 사적 영역

□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가 옆집에 이사 와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연령대별,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음

○ 2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그러나 30대~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소수자가 옆집에 이사 와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응답의 이유에 대해서는 30대 ~ 60대 사이의 여성의 경우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폐쇄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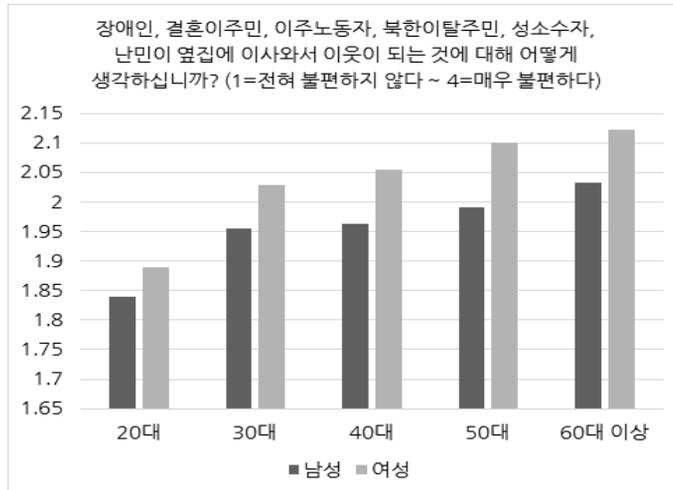
<표 6.13>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이 옆집에 이사와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1.840	-0.051	0.033	-1.538	0.124
20대 여성	1.890				
30대 남성	1.955	-0.073*	0.029	-2.552	0.011
30대 여성	2.028				
40대 남성	1.964	-0.091***	0.024	-3.747	<0.001
40대 여성	2.055				
50대 남성	1.992	-0.108***	0.024	-4.523	<0.001
50대 여성	2.100				
60대 이상 남성	2.032	-0.090***	0.019	-4.631	<0.001
60대 이상 여성	2.122				

*p<0.05 **p<0.01 ***p<0.001

1) 1=전혀 불편하지 않다 ~ 4=매우 불편하다

[그림 6.9]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이 옆집에 이사와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연령대별,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음
- 20대, 3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그러나 30대~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소수자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음. 자신이 아는 사람 외의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에 대하여 보다 개방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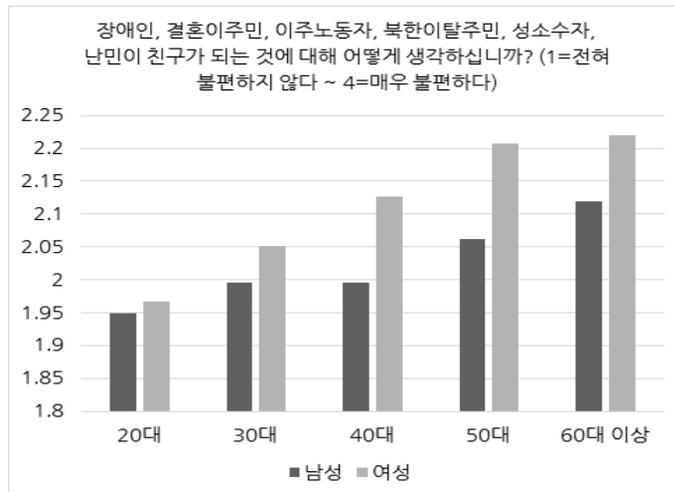
<표 6.14>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이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1.950	-0.017	0.034	-0.504	0.614
20대 여성	1.967				
30대 남성	1.995	-0.056	0.029	-1.922	0.055
30대 여성	2.052				
40대 남성	1.995	-0.131***	0.024	-5.362	<0.001
40대 여성	2.126				
50대 남성	2.062	-0.146***	0.024	-6.096	<0.001
50대 여성	2.208				
60대 이상 남성	2.120	-0.099***	0.019	-5.094	<0.001
60대 이상 여성	2.220				

*p<0.05 **p<0.01 ***p<0.001

1) 1=전혀 불편하지 않다 ~ 4=매우 불편하다

[그림 6.10]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이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3.3. 사회적 배제와 거리감: 공적 영역

□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거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매우 불편하다 또는 다소 불편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이, 농업/어업 또는 단순노무직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보수 집단이, 사별 또는 이혼 집단이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거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음

<표 6.15> 여성이나 국회의원이거나 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 불편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명	전체 (N=13,077)		여성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불편 (N=1,054명)	
	N	비율 (%)	N	비율 (%)
연령대				
20대 이하	1,599	12.23%	96	9.11%
30대	1,971	15.07%	98	9.30%
40대	2,596	19.85%	124	11.76%
50대	2,749	21.02%	234	22.20%
60대 이상	4,162	31.83%	502	47.63%
성별				
남성	6,273	47.97%	602	57.12%
여성	6,804	52.03%	452	42.8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946	22.53%	384	36.43%
고졸 이하	4,164	31.84%	337	31.97%
대졸 이하	5,345	40.87%	294	27.89%
대학원졸 이상	622	4.76%	39	3.70%

변수명	전체 (N=13,077)		여성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불편 (N=1,054명)	
	N	비율 (%)	N	비율 (%)
직업				
관리자/전문가	1,662	12.71%	93	8.82%
사무직	1,278	9.77%	64	6.07%
서비스/판매직	2,744	20.98%	218	20.68%
생산/기술직	1,085	8.30%	85	8.06%
농업/어업	892	6.82%	109	10.34%
단순노무직	1,178	9.01%	118	11.20%
군인	43	0.33%	9	0.85%
알하지 않음	4,195	32.08%	358	33.97%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86	15.19%	236	22.39%
100~200만원	1,899	14.52%	224	21.25%
200~300만원	2,482	18.98%	185	17.55%
300~400만원	2,069	15.82%	150	14.23%
400~500만원	1,491	11.40%	85	8.06%
500~600만원	1,151	8.80%	70	6.64%
600~700만원	548	4.19%	26	2.47%
700~800만원	378	2.89%	24	2.28%
800~900만원	302	2.31%	10	0.95%
900~1000만원	253	1.93%	13	1.23%
1000만원 이상	518	3.96%	31	2.94%
정치적 성향				
보수적	1,986	15.19%	251	23.81%
중도	4,215	32.23%	277	26.28%
진보적	2,640	20.19%	180	17.08%
관심 없음	4,236	32.39%	346	32.83%
결혼 상태				
미혼/비혼	2,509	19.19%	170	16.13%
배우자 있음	8,630	65.99%	647	61.39%
사별	1,178	9.01%	166	15.75%
이혼 (별거)	760	5.81%	71	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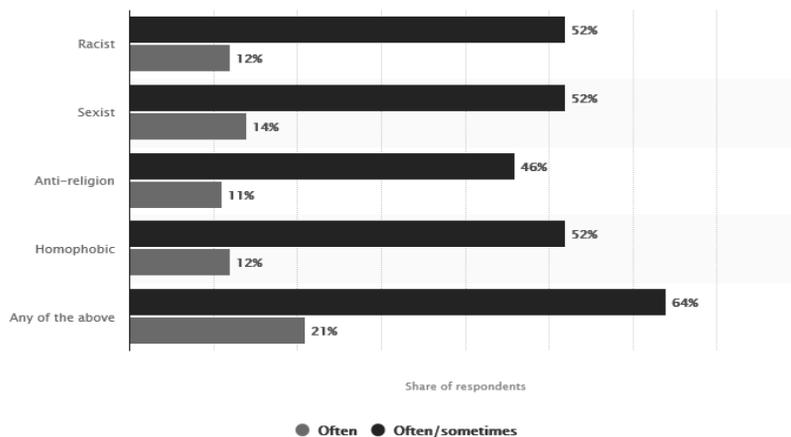
7. 혐오표현 경험

7.1. 혐오표현 경험

7.1.1. 혐오표현 국제비교

- 2018년 미국에서의 SNS 이용 청소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SNS를 이용하면서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자주 접한다는 응답 비율은 21%임

[그림 7.1] 혐오표현 접한 경험: 미국



7.1.2. 혐오표현 경험의 배경별 분석

- 지난 1년 동안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소수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편견을 조장하고 멸시·모욕·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는지 여부를 연령대별, 성별로 분석하였음. 2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혐오표현을 더 자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혐오표현을 더 자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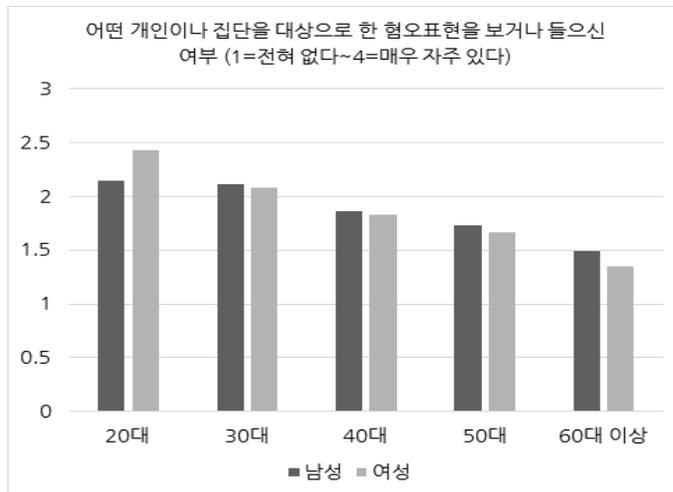
<표 7.1>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으신 여부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150	-0.280***	0.056	-5.035	<0.001
20대 여성	2.431				
30대 남성	2.111	0.033	0.046	0.721	0.471
30대 여성	2.078				
40대 남성	1.868	0.034	0.036	0.930	0.353
40대 여성	1.835				
50대 남성	1.737	0.067*	0.033	2.021	0.043
50대 여성	1.670				
60대 이상남성	1.491	0.143***	0.021	6.670	<0.001
60대 이상여성	1.348				

*p<0.05 **p<0.01 ***p<0.001

1) 1=전혀 없다 ~ 4=매우 자주 있다

[그림 7.2]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으신 여부



□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혐오표현을 들어본 경험이 더 많아지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혐오표현 들어본 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많아짐. 특히 중학교 이하에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74.6%에 이룸.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혐오표현을 들어본 경험이 더 많음. 학력수준이 높고,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은 혐오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혐오표현을 더 자주 접하는 경향이 있음

<표 7.2> 교육수준별 혐오표현 노출 정도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 들어본 경험				전체 (명, %)	카이제곱 (p)
	매우 자주 있음	자주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중학교이하	27 (0.9)	192 (6.5)	528 (17.9)	2,199 (74.6)	2,946 (100.0)	1504.979 (.000)
고등학교	142 (3.4)	575 (13.8)	1,126 (27.0)	2,321 (55.7)	4,164 (100.0)	
전문대	155 (7.1)	435 (20.0)	580 (26.7)	1,001 (46.1)	2,171 (100.0)	
대학교이상	455 (12.0)	1,061 (28.0)	977 (25.7)	1,303 (34.3)	3,796 (100.0)	

<표 7.3> 인권교육여부별 혐오표현 노출 정도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 들어본 경험				전체 (명, %)	카이제곱 (p)
	매우 자주 있음	자주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안받음	578 (5.1)	1,778 (15.8)	2,724 (24.2)	6,184 (54.9)	11,264 (100.0)	321.024 (.000)
받았음	201 (11.1)	485 (26.8)	487 (26.9)	640 (35.3)	1,813 (100.0)	

7.2. 혐오표현 접촉 경로와 대상

-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를 응답받았음(여러 개의 응답을 허용하였음). 남성이 혐오표현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TV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방송,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서비스 순으로 많았음. 여성이 혐오표현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TV 방송프로그램,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친구/가족/지인 순으로 많았음

<표 7.4>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

	남성 (N=6,273)		여성 (N=6,804)	
	N	%	N	%
친구/가족/지인	445	7.09%	572	8.41%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1,300	20.72%	1,348	19.81%
메신저서비스 (카카오톡, 밴드, 라인, 위챗 등)	540	8.61%	475	6.98%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673	10.73%	755	11.10%
TV 방송프로그램 (지상파, 종편, 케이블방송 등)	1,645	26.22%	1,776	26.10%
인터넷 방송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303	20.77%	1,085	15.95%
캠페인, 거리 집회	455	7.25%	395	5.81%
기타	15	0.24%	19	0.28%

- 혐오표현의 대상을 응답받았음(여러 개의 응답을 허용하였음). 남성이 응답한 주요 혐오표현 대상은 여성, 성소수자, 남성, 장애인, 노인 순으로 많았음. 여성이 응답한 주요 혐오표현 대상은 여성, 성소수자, 남성, 노인, 장애인 순으로 많았음

<표 7.5> 혐오표현의 대상

	남성 (N=6,273)		여성 (N=6,804)	
	N	%	N	%
여성	1,448	23.08%	1,817	26.70%
남성	1,057	16.85%	954	14.02%
노인	838	13.36%	899	13.21%
장애인	864	13.77%	892	13.11%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502	8.00%	473	6.95%
북한이탈주민	256	4.08%	217	3.19%
난민	623	9.93%	625	9.19%
성소수자	1,073	17.11%	1,142	16.78%
특정 종교인	670	10.68%	534	7.85%
노숙자	361	5.75%	312	4.59%
특정지역 출신인	626	9.98%	529	7.77%
기타	227	3.62%	159	2.34%

7.3.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과 대응

- 학력수준이 낮으면 혐오표현에 무반응, 무대응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수준이 높으면 무반응, 무대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강력하지는 않지만 반대의견, 시정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짐. 혐오표현에 대한 동조는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음

<표 7.6> 교육수준별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

	혐오표현 들었을 때 반응					전체 (명, %)	카이제곱 (p)
	동조하는 의견, 행동	2	아무것도 하지 않음	4	반대의견, 시정요구		
중학교 이하	15 (2.0)	56 (7.5)	534 (71.5)	83 (11.1)	59 (7.9)	747 (100.0)	90.170 (.000)
고등학교	60 (3.3)	166 (9.0)	1,246 (67.6)	249 (13.5)	122 (6.6)	1843 (100.0)	
전문대	22 (1.9)	112 (9.6)	760 (65.0)	195 (16.7)	81 (6.9)	1,170 (100.0)	
대학교 이상	34 (1.4)	140 (5.6)	1,667 (66.9)	499 (20.0)	153 (6.1)	2,493 (100.0)	

<표 7.7> 인권교육여부별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

	혐오표현 들었을 때 반응					전체 (명, %)	카이제곱 (p)
	동조하는 의견, 행동	2	아무것도 하지 않음	4	반대의견, 시정요구		
안받음	100 2.0%	410 8.1%	3,503 69.0%	773 15.2%	294 5.8%	5,080 100.0%	74.857 (.000)
받았음	31 2.6%	64 5.5%	704 60.0%	253 21.6%	121 10.3%	1,173 100.0%	

□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학력수준이 낮으면 찬성의견이 더 많고 학력수준이 높으면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 법적 규제에 대한 찬성의견이 70~80%로 매우 높지만, 고학력층에서는 표현의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약 25%를 차지함.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약 3%),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찬성의견의 강도가 다소 강함. 일부더라도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패러다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7.8> 교육수준별 혐오표현 법적 규제 의견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				전체	카이제곱 (p)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중학교이하	305 40.8%	309 41.4%	96 12.9%	37 5.0%	747 100.0%	n.s.
고등학교	673 36.5%	830 45.0%	254 13.8%	86 4.7%	1,843 100.0%	
전문대	404 34.5%	478 40.9%	216 18.5%	72 6.2%	1,170 100.0%	
대학교이상	816 32.7%	1071 43.0%	401 16.1%	205 8.2%	2,493 100.0%	

<표 7.9> 인권교육여부별 혐오표현 법적 규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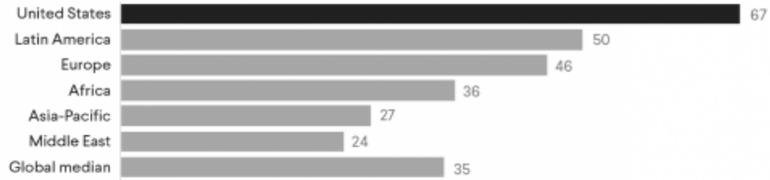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				전체	카이제곱 (p)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안받음	1771 34.9%	2225 43.8%	783 15.4%	301 5.9%	5080 100.0%	14.262 (.003)
받았음	427 36.4%	463 39.5%	184 15.7%	99 8.4%	1173 100.0%	

[혐오표현 규제 혹은 허용에 대한 국제 조사 결과 참고 자료]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국제적으로 조사한 미국 여론조사기관 Pew 리서치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반대는 미국이 67%로 가장 높은 반면, 전세계 평균은 35%임. 중동이 24%, 아시아가 27%로 낮은 편에 속함

[그림 7.3]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식

Percent that agree "People should be able to make statements that are offensive to minority groups publicly" (2015)



Note: Displays the median among countries included in the survey.

Source: Pew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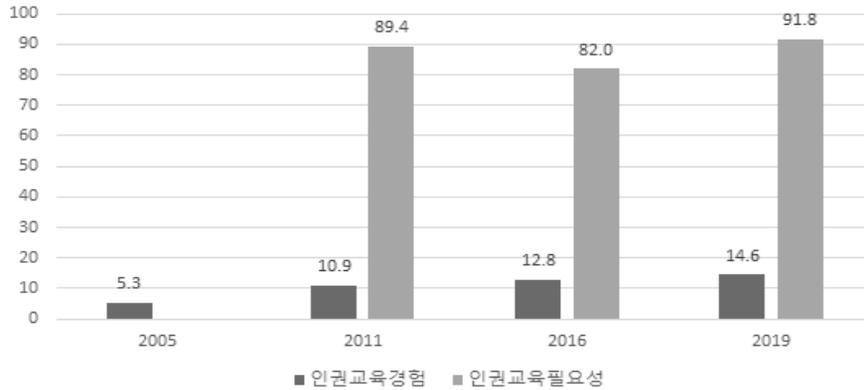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8. 인권 교육 및 개선

8.1. 인권교육 관련 과거 조사와의 비교

-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2005년 5.3%에서 2011년 10.9%, 2016년 12.8%였고, 2019년에는 14.6%에 이릅니다. 전반적으로 인권교육 경험율은 낮지만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80~90%의 높은 찬성율을 보여 인권교육의 경험율과 필요성의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드러냅니다.
- 인권교육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2019년 조사는 '지난 1년 동안'이라는 제한을 두었고 그 이전 조사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을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의 증가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8.1] 인권교육 경험을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 찬성을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2019년 조사는 ‘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을 질문하였고 그 이전 조사는 ‘인권교육을 받은 곳’을 질문했다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이전에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학교(25.3%) 보다 직장(36.8%)이 주관한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음
- 직장이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증가한 것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에 1회 이상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즉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며,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기업내 인권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인권침해와 차별의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사람은 직장 상사(17.1%) 및 직장 동료(10.6%), 서비스 사업자(12.8%) 등의 순이므로 직장내 인권교육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판단됨

<표 8.1> 인권교육을 받은 곳/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

	2005	2011	2016	2019
국가인권위원회	-	1.1	0.8	5.1
초중고 학교	55.2	49.9	35.1	25.3
대학교			20.7	
공공기관	1.6	15.4	7.9	22.2
시민단체	2.5	13.7	10.3	10.4
직장	30.1	11.5	19.4	36.8
온라인커뮤니티	-	5.1	2.9	-
기타	10.3	3.3	2.9	0.3

자료: 국민인권의식조사(2005, 2011, 2016), 국가인권실태조사(2019)

-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대상은 2005년, 2011년, 2019년 조사에서의 설문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수치를 비교할 수는 없고, 응답 비율이 높은 순위를 비교하였음
-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집단은 대체로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는 집단을 지목하였음. 즉 3개 연도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순위가 높게 지목된 집단은 공통적으로 국회/지방의회,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 관계자, 공무원으로 나타남. 이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63.4%인 결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음

<표 8.2>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순위	2005년 조사	2011년 조사	2019년 조사
1	사법 관계자	국회/지방의회 의원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2	경찰	법집행관(판검사, 경찰 등)	검찰/경찰/법원
3	국회/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국회/지방의회
4	사회적 약자	초중고 학생	교육청/교육기관
5	구금시설 공무원	언론기관 종사자	군대
6	중앙/지방 공무원	대학생, 교사/교수	기업/사업자, 복지시설
7	군인	군복무자	언론/대중매체
8	학생	인권 관련 전문직	유치원/보육시설
9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10	언론인	기업체 종사자	대학교
11	교사	사회적 약자	종교단체
12	전문직 종사자	-	기타
13	기타	-	

- * 2005년 설문: 우리 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2011년 설문: 다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점 매우 필요~4점 전혀 필요없음에서 매우 필요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
- * 2019년 설문: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의식을 높여야 하는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8.2. 인권 규범 인지의 배경별 분석

□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었음. 2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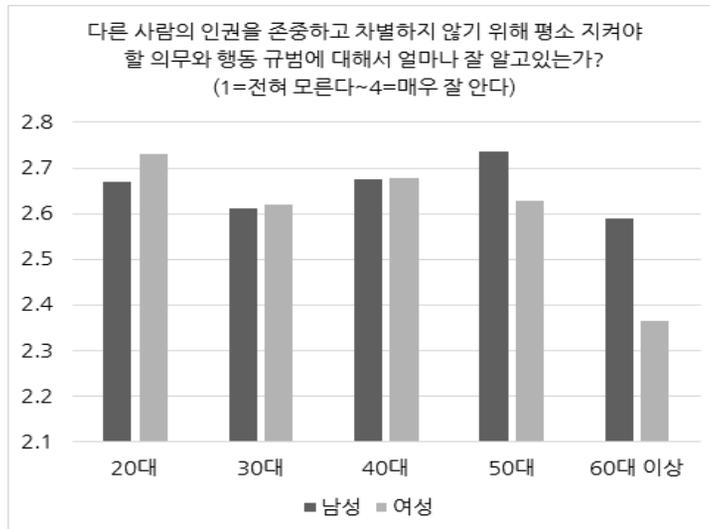
<표 8.3>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670	-0.060	0.032	-1.874	0.061
20대 여성	2.730				
30대 남성	2.612	-0.010	0.028	-0.344	0.731
30대 여성	2.621				
40대 남성	2.675	-0.004	0.024	-0.167	0.867
40대 여성	2.679				
50대 남성	2.736	0.107***	0.025	4.244	<0.001
50대 여성	2.629				
60대 이상남성	2.588	0.222***	0.023	9.496	<0.001
60대 이상여성	2.366				

*p<0.05 **p<0.01 ***p<0.001

1) 1=전혀 모른다 ~ 4=매우 잘 안다

[그림 8.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음. 30대에서 60대 이상까지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20대에서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분석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공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30, 40대 여성들의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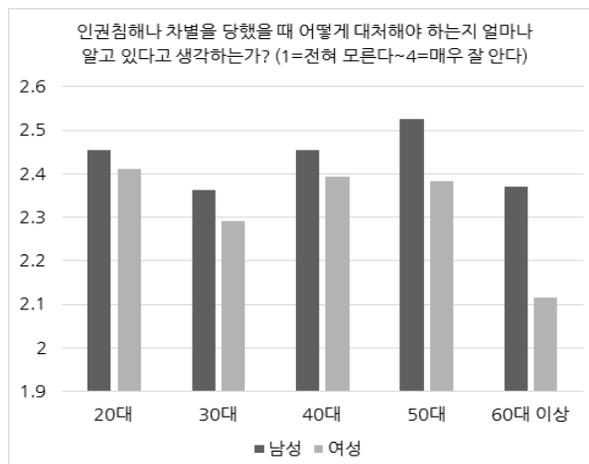
<표 8.4>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T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455	0.043	0.033	1.311	0.190
20대 여성	2.412				
30대 남성	2.363	0.072**	0.028	2.598	0.009
30대 여성	2.291				
40대 남성	2.455	0.062**	0.024	2.607	0.009
40대 여성	2.394				
50대 남성	2.527	0.144***	0.024	5.886	<0.001
50대 여성	2.383				
60대 이상 남성	2.371	0.256***	0.022	11.798	<0.001
60대 이상 여성	2.115				

*p<0.05 **p<0.01 ***p<0.001

1) 1=전혀 모른다 ~ 4=매우 잘 안다

[그림 8.3]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8.3. 인권교육의 중요성

8.3.1. 배경별 인권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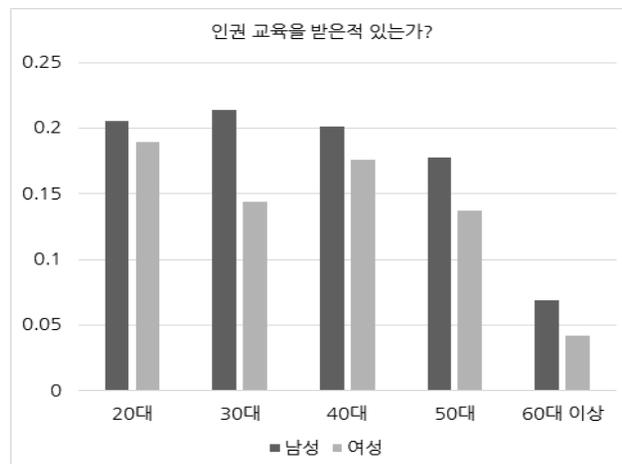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적 있는지 물었음.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보다는 남성이 인권 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음. 남성들과 달리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인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 20대, 40대에서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8.5> 인권교육을 받은적 있는지 여부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Z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20.51%	1.54%	0.020	0.774	0.439
20대 여성	18.97%				
30대 남성	21.36%	6.99%	0.017***	4.059	<0.001
30대 여성	14.37%				
40대 남성	20.10%	2.48%	0.015	1.618	0.106
40대 여성	17.61%				
50대 남성	17.77%	4.04%	0.014**	2.904	0.004
50대 여성	13.74%				
60대 이상 남성	6.91%	2.70%	0.007***	3.822	<0.001
60대 이상 여성	4.2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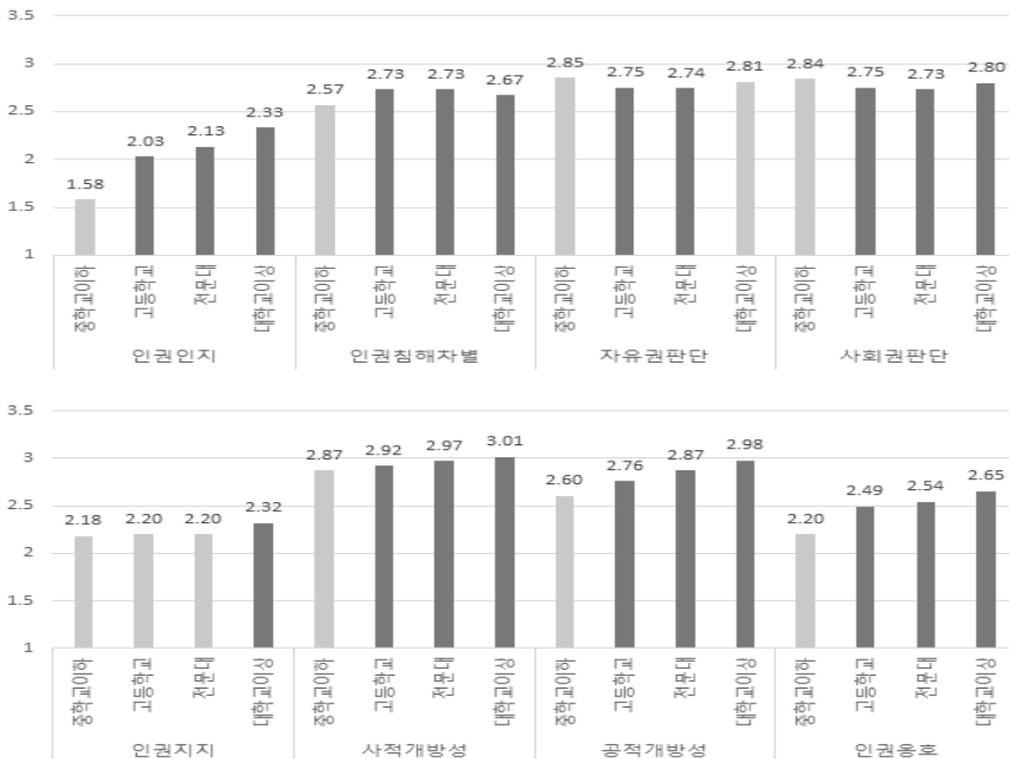
[그림 8.4] 인권교육을 받은적 있는지 여부



8.3.2. 정규교육과 인권의식

□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으면 인권의식이 낮은 편임. 저학력층은 인권에 대해 거의 모르고, 현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권쟁점에 강하게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인권행동 참여도가 낮음. 인권개선활동에서도 중학교 이하(0.21), 고등학교(0.47), 전문대(0.67), 대학교 이상(0.85) 순으로 약 4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반면 인권침해차별의 심각성, 인권상황 판단에서는 고등학교, 전문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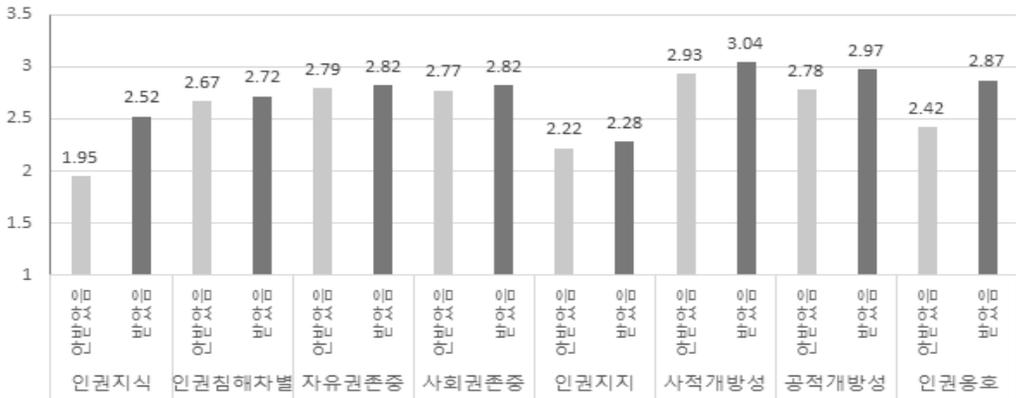
[그림 8.5] 학력수준별 인권의식 비교



8.3.3. 인권교육과 인권의식

□ 일반적인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역시 인권의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권의식의 모든 요소에서 일관되게 높음. 특히 인권지식과 인권행동적 측면에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0.44)이 그렇지 않은 사람(1.29)보다 인권활동에서 약 4배 정도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타인에 대한 개방성(사회적 거리감의 역)에서는 공적 개방성의 차이가 사적 개방성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남

[그림 8.6] 인권교육 경험별 인권의식 비교



8.3.4. 배경별 인권교육 필요성과 필요대상, 주제

□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음. 20대, 30대, 40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인권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60대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인권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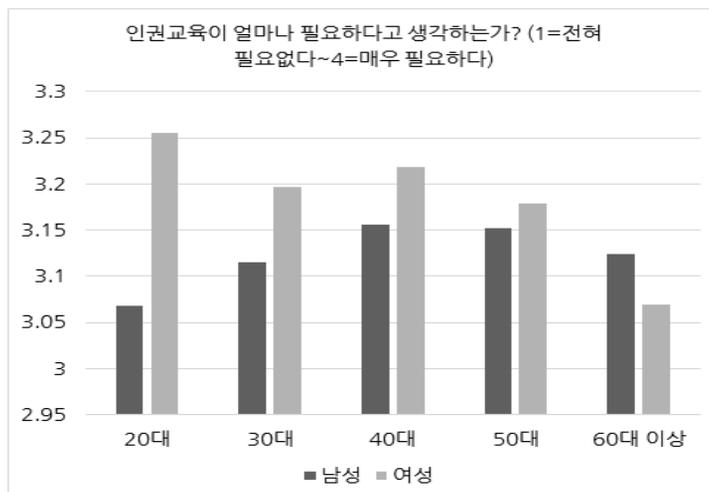
<표 8.6>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Z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3.068	-0.188***	0.029	-6.459	<0.001
20대 여성	3.255				
30대 남성	3.115	-0.082***	0.024	-3.422	<0.001
30대 여성	3.197				
40대 남성	3.156	-0.063**	0.021	-2.980	0.003
40대 여성	3.219				
50대 남성	3.152	-0.027	0.021	-1.260	0.208
50대 여성	3.179				
60대 이상 남성	3.124	0.055**	0.018	3.063	0.002
60대 이상 여성	3.069				

*p<0.05 **p<0.01 ***p<0.001

1) 1=전혀 필요없다 ~ 4=매우 필요하다

[그림 8.7]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의식을 높여야 하는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음. 1순위로 답한 대상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음

○ 남성의 경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검찰/경찰/법원, 국회/지방의회, 군대, 교육청/초중등학교 순으로 인권의식을 높여야한다고 응답하였음. 여성의 경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검찰/경찰/법원, 교육청/초중등학교, 국회/지방의회, 복지시설 순으로 인권의식을 높여야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8.7> 인권의식을 높여야 하는 대상

	남성 (N=6,273)			여성 (N=6,804)		
	N	%	순위	N	%	순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2,038	32.49	1	2,348	34.51	1
검찰/경찰/법원	1,022	16.29	2	790	11.61	2
국회/지방의회	741	11.81	3	726	10.67	4
군대	509	8.11	4	382	5.61	8
교육청/초중등학교	465	7.41	5	733	10.77	3
대학교	49	0.78	11	48	0.71	11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78	2.84	9	282	4.14	9
기업 및 사업자	409	6.52	6	417	6.13	6
시민사회단체	100	1.59	10	123	1.81	10
언론 등 대중매체	347	5.53	8	412	6.06	7
복지시설 (요양원, 집단거주시설)	365	5.82	7	499	7.33	5
종교단체	31	0.49	12	28	0.41	12
기타	19	0.3	13	16	0.24	13

□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권교육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음. 1순위로 답한 대상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음

○ 남성의 경우, 장애인 인권, 성평등, 북한이탈주민 인권, 노동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여성의 경우, 성평등, 장애인 인권, 북한이탈주민 인권, 노동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순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8.8>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권교육의 주제

	남성 (N=6,273)			여성 (N=6,804)		
	N	%	순위	N	%	순위
성평등	1,119	17.84	2	1,677	24.65	1
장애인 인권	1,604	25.57	1	1,550	22.78	2
이주민 인권	246	3.92	7	199	2.92	7
아동/청소년 인권	672	10.71	5	779	11.45	5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653	10.41	6	625	9.19	6
노동 인권	714	11.38	4	781	11.48	4
노인 인권	74	1.18	9	63	0.93	9
성소수자 인권	116	1.85	8	73	1.07	8
북한이탈주민 인권	1,046	16.67	3	1,044	15.34	3
혐오/차별 예방	29	0.46	10	13	0.19	10

8.4. 인권 관련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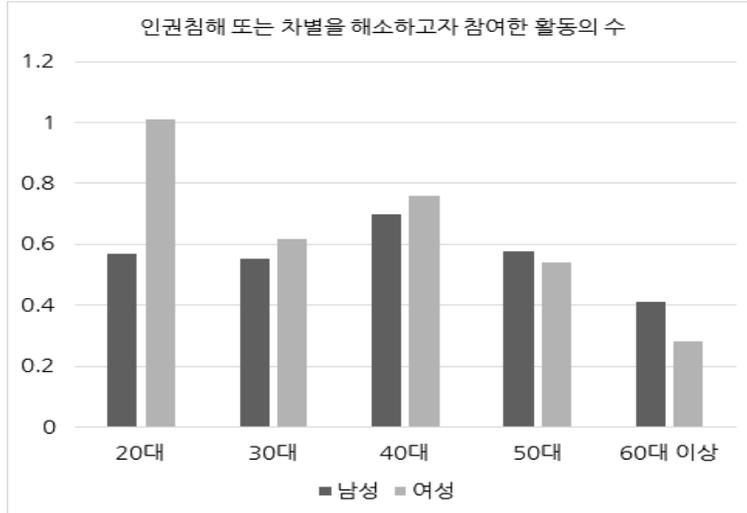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참여한 활동 ((1) 인권침해 또는 차별받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조언·상담,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3) 소수자, 약자를 돕는 단체 지원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 (4) 인권단체 활동, (5) 인터넷 사이트에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 또는 댓글달기, (6)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7) 인권 캠페인이나 거리 집회)의 수를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였음

<표 8.9>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참여한 활동 수

성/연령 집단	평균	집단 간 차이 (남성-여성)	표준오차	Z 점수	유의확률 (p-value)
20대 남성	0.569	-0.441	0.063	-7.021	<0.001
20대 여성	1.010				
30대 남성	0.553	-0.066	0.048	-1.373	0.170
30대 여성	0.619				
40대 남성	0.699	-0.060	0.049	-1.228	0.220
40대 여성	0.759				
50대 남성	0.579	0.040	0.042	0.939	0.348
50대 여성	0.539				
60대 이상 남성	0.413	0.133	0.029	4.606	<0.001
60대 이상 여성	0.280				

*p<0.05 **p<0.01 ***p<0.001

[그림 8.8]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참여한 활동 수



□ 인권 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질문하였음. 1순위로 답한 대상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음

○ 남성의 경우, 개인의 노력, 법률/제도, 인권교육,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 캠페인/홍보활동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여성의 경우, 법률/제도, 개인의 노력, 인권교육,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 캠페인/홍보활동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8.10> 인권 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

	남성 (N=6,273)			여성 (N=6,804)		
	N	%	순위	N	%	순위
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한다	2,078	33.13	1	2,015	29.61	2
② 차별금지법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한다	2,013	32.09	2	2,274	33.42	1
③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게 한다	745	11.88	4	803	11.8	4
④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1,052	16.77	3	1,246	18.31	3
⑤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385	6.14	5	466	6.85	5

□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음. 1순위로 답한 대상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음

○ 남성의 경우, 정부 등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순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여성의 경우에도, 정부 등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순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8.11>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남성 (N=6,273)			여성 (N=6,804)		
	N	%	순위	N	%	순위
정부 등 공공기관	4,007	63.88	1	4,400	64.67	1
시민사회단체	365	5.82	4	401	5.89	4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231	3.68	5	255	3.75	5
언론	642	10.23	3	665	9.77	3
교육기관	965	15.38	2	1,041	15.3	2
국제기구	48	0.77	6	34	0.5	6
기타	15	0.24	7	8	0.12	7

9. 결론

- 한국의 인권실태는 길게는 지난 15년간 짧게는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빠른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의식조사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며 특히 2017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층과 관심이 없는 층의 분화가 보이기 시작함
-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는 인권이 존중된다고 보는 비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60% 가까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최근의 인권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좋아진다는 응답이 60%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해서 그간의 인권상황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우세를 보여줌
-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54%, 차별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69%로 높게 나타나 인권 보호 및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특히 정부의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앞서지만 사후적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비교를 보면 한국은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지 수준이 미국과 비슷하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권보호 법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자유권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상당히 높고 평등권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존중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중심의 권리는 긍정 평가가 높은 반면, 노동과 사회복지 등에 대한 권리는 긍정 평가가 높지 못하게 나타남
- 차별의 경험은 2011년에 비해 직접 경험한 비율이 28%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는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의 상호교차성에 의해 규정되는 집단이 매우 높은 비율의 차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차별 경험의 이유로 나이, 성별, 빈부격차가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인권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찬성 비율이 높은 반면, 피의자 얼굴 공개, 사형제 폐지 등 최근 흉악 범죄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는 시점에 따른 변화와 질문 방식(대체형별 언급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인권 관련 쟁점에서 응답자들간의 의미있는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배경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교육 여부로 나타남. 특히 정치적 진보 성향, 높은 교육수준, 인권교육 받은 경우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 반면 정치적 보수 성향, 고연령 및 낮은 교육수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종종 인권 제한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임
- 젠더와 인권 쟁점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응답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특징들이 나타났음.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대상으로 여성을 꼽은 응답자에서는 20대의 비중이 높았고,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미혼/비혼, 이혼/별거 상태의 여성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과 성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차별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또한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에서 중복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성별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는 세대별로 분화되는데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연령 집단은 20대임. 또한, 2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본인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음. 20대 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과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시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인권에 민감한 것으로 보임. 이와 달리, 60대 여성은 고등교육의 혜택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덜 받고, 가정 내에서는 가부장적인 성 역할 분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 역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대의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참여한 활동의 수가 가장 많은 집단 역시 20대 여성으로 20대 여성은 자신들이 받은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바꾸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아동청소년과 일반성인의 인식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미성숙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부모/교사 의존에 대해서 아동청소년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성인들은 아동청소년을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여기지 않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정작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있지만 일반 성인은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생의 일부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인식의 격차가 크게 드러남
- 인권에 친화적인 사회적 가치는 ‘인간이 존엄한 사회’이며, 개인적 가치로는 ‘의미와 보람’의 추구가 ‘경제적 풍요’의 추구와 대척점에 놓여있음. 그런데 ‘경제적 풍요 추구’는 일반국민의 48.8%를 차지하는 반면, ‘의미와 보람 추구’는 15.4%로 약 1/3에 불과한 상황임. 일반국민의 절반 가량이 이처럼 경제적 풍요, 즉 물질주의, 경제주의 패러다임이 강한 조건에서는 인권적 규범과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낮은 교육수준, 고연령층은 인권상황이 가장 취약한 집단인데, 전반적으로 이들의 인권의식이 가장 낮은 상황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인권의식이 낮은 편인데,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층 여성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고령층 여성과는 궤를 달리 하고 있음
- 정규교육 및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을 제고하는데 일관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전반적인 인권의식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인지하고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약 15%로 아직 충분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으로 좁게 제한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직장 내 법정 의무사항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이외에 직장에서도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목된 집단은 공공기관, 국회/지방의회, 사법 관계자 등이 일관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역대 조사를 비교해 보아도 유사한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들은 권력과 지위에 기반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음

3. 2019년 한국의 인권통계 분석

-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2019년 한국의 인권통계 분석

-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1. 연구 목적

- 최근 국내외에서 삶의 질, 웰빙,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주제로 통계 기반의 각종 지표들이 개발, 공표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UN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OECD는 회원국을 중심으로 Better Life Index와 같은 웰빙 지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통계청에서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여러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통계 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에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2019년에 국가인권통계를 구축함.
- 국가인권통계는 39개 인권 주제로 분류되는 381건의 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관한 통계도 포함되어 있음.
- 국가인권통계는 국민의 삶의 영역별 인권수준과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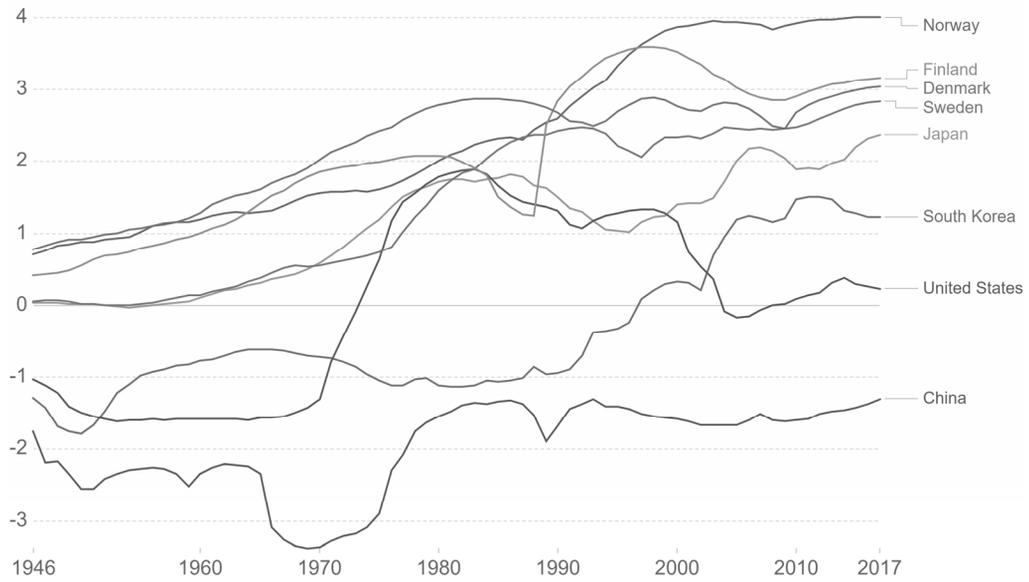
- 이 장에서는 국가인권통계와 해외에서 작성된 인권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자 함.
- 먼저, 해외 연구기관들이 작성하여 발표한 인권통계를 통해 한국 인권상황의 국제적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함. 이를 위해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에서 제공하는 국제인권지수와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HRMI)가 최근 개발하여 작성한 인권지수를 활용할 것임.
- 아울러 국가인권통계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고 그 결과가 해외 인권지수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
- 다음으로, 국가인권통계 중 인권 취약집단에 관한 통계를 통해 이들 집단의 인권 상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작성된 국가인권통계의 한계를 짚어 보고 향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함.

2. 국제 인권지수로 본 한국의 인권수준

2.1. Human Rights Protection Score

- 각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도(the degree to which governments protect and respect human rights), 시민의 신체적 자유권을 측정함. 여기에는 고문, 정부에 의한 살해, 정치적 감금, 비사법적 처형, 대량학살, 실종(torture, government killing, political imprisonment, extrajudicial executions, mass killings and disappearances) 등을 고려함.
- 한국 순위는 1980년 112위(160개국), 1990년 122위(183개국)에 머물다가 이후 점차 상승해 2000년 91위(193개국), 2010년 57위(194개국), 2017년 67위(195개국)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 이후로는 195개국 중 50-70위권을 유지하고 있음(2011년 55위, 2012년 58위, 2013년 56위, 2014년 64위, 2015년 69위, 2016년 7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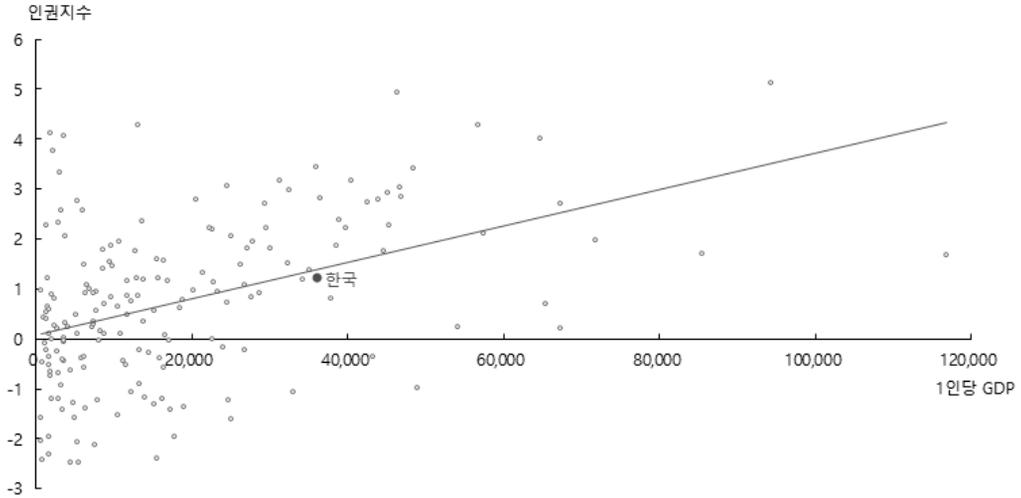
[그림 1] Human Rights Protection Score, 1946-2017



출처: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

□ 각국의 1인당 GDP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수준과 인권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권지수는 국민소득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 인권지수와 1인당 GDP의 관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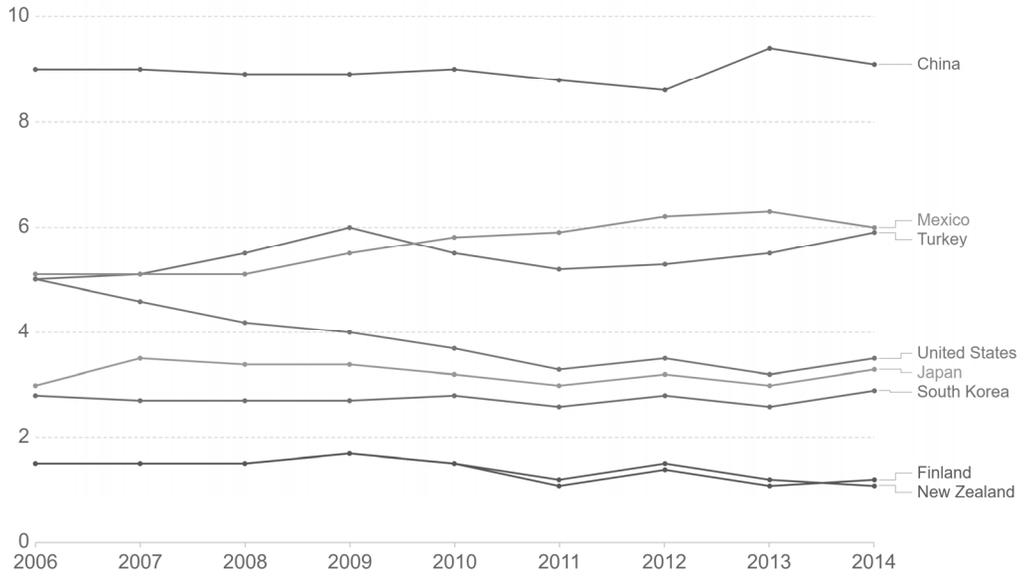


주: Human Rights Protection Score 원자료 분석 결과임.
출처: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

2.2. Human Rights Violations Score

- 언론자유, 시민자유, 정치적 자유, 인신매매, 정치범, 감금, 종교탄압, 고문, 사형집행 (press freedom, civil liberties, political freedoms, human trafficking, political prisoners, incarceration, religious persecution, torture and executions) 등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함.
- 한국은 2006년 16위(146개국), 2010년 20위(177개국), 2014년 29위(178개국)로 20위권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상위권에는 유럽 국가들과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며,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Human Rights Violations Score, 200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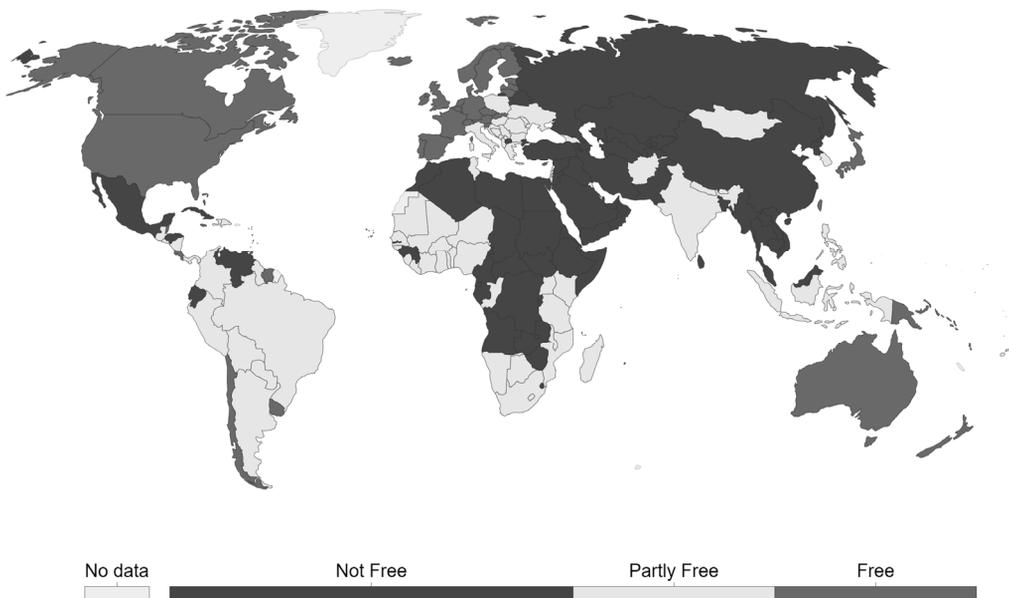
출처: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

2.3. Press Freedom Score

□ Freedom House 언론자유지수

- 언론이 자유와 편집 독립을 누리는 정도(the level of freedom and editorial independence enjoyed by the press)를 측정함.
-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free' 수준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한국은 'Partly Free' 국가로 분류됨.

[그림 4] Freedom House 언론자유지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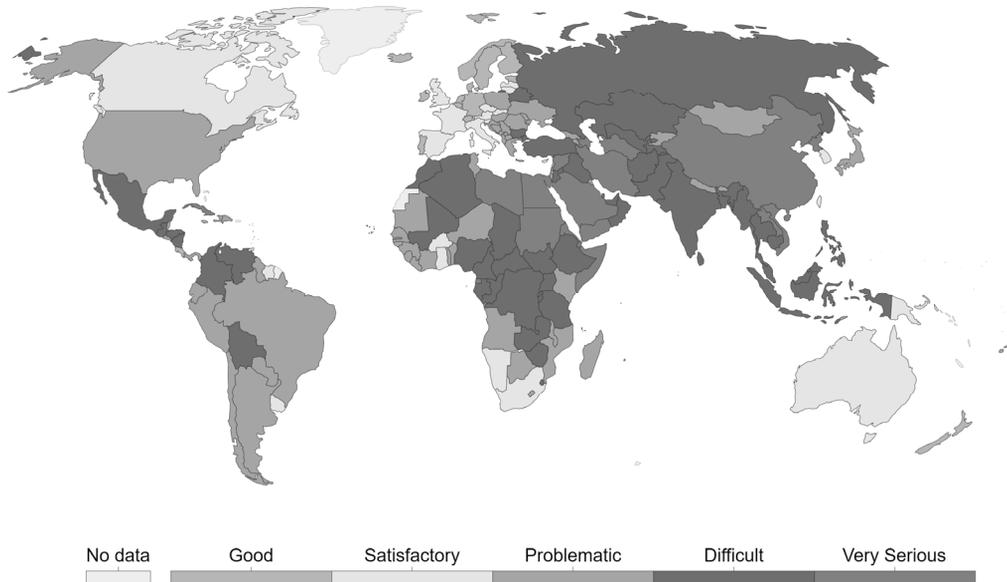


출처: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

□ Reporters Sans Frontieres 언론자유지수

- 언론인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the level of freedom available to journalists around the world)를 측정함. 0-100으로 측정하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자유가 없는 것을 나타냄.
- Freedom House 언론자유지수와 비슷하게 한국은 'Satisfactory' 국가(180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Reporters Sans Frontieres 언론자유지수, 2019



출처: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

2.4. HRMI 인권지수

- HRMI(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 인권지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적 권리로 구분되며, 시민정치적 권리는 다시 국가로부터의 안전(Safety from the State) 지표와 역능성(Empowerment rights) 지표로 구분됨.
- HRMI 지표의 시민정치적 권리 지표와 경제사회적 권리 지표는 방법론적으로 다르게 작성됨. 즉 시민정치적 권리 지표는 각국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작성되고, 경제사회적 권리 지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국면을 측정하는 다양한 사회지표들로 작성됨.

1) 시민정치적 권리

□ 국가로부터의 안전(Safety from the State)

- 이 지표는 국가로부터의 인권침해, 즉 국민의 신체적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임의체포(arbitrary arrest), 실종(disappearance), 사형제(death penalty), 비사법적 처형(extrajudicial execution), 고문(torture) 등의 하위 지표들로 작성됨.
- 한국은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19개 대상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함. 세부 지표별로는 고문에서 1위로 순위가 가장 높고 사형제 집행에서 15위로 낮은 순위를 나타냄.
- 다만 HRMI가 시범적으로 작성한 지수여서 비교 대상국의 수가 많지 않아 한국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표 1> Safety from the State Score, 2018

	Safety from the State	Right to freedom from arbitrary arrest	Right to freedom from disappearance	Right to freedom from the death penalty	Right to freedom from extra judicial execution	Right to freedom from torture
New Zealand	8.399	8.395	9.148	9.123	8.632	7.747
Australia	8.019	6.326	8.994	9.160	8.561	5.535
Nepal	8.009	6.217	9.312	9.993	7.553	5.165
South Korea	7.964	7.702	8.722	8.239	8.239	8.100
United Kingdom	7.739	7.862	8.382	8.675	8.105	7.115
Kyrgyzstan	7.674	5.241	8.333	9.331	8.666	3.883
Liberia	7.512	5.969	8.687	8.677	7.164	5.841
Fiji	7.488	5.000	8.907	9.395	7.430	3.951
Kazakhstan	6.747	3.061	7.371	8.992	7.715	3.637
Jordan	6.708	4.416	8.191	6.021	6.021	3.824
Angola	5.822	3.784	6.948	8.382	5.185	2.998
United States	5.351	3.617	7.121	5.176	3.886	3.223
Vietnam	5.350	2.565	6.592	3.029	3.029	2.438
Mozambique	5.310	4.028	4.528	9.169	5.259	2.402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5.123	1.400	4.548	8.797	5.881	1.427
Venezuela	4.473	2.014	4.115	9.001	4.330	2.115
Brazil	4.339	4.002	4.971	9.174	2.271	1.852
Mexico	3.521	2.092	1.761	9.151	2.899	1.278
Saudi Arabia	3.288	1.525	2.667	2.604	2.604	1.884
한국 순위	4/19	3/19	5/19	15/19	4/19	1/19

주: HRMI 제공 데이터셋 분석 결과임.
출처: HRMI Rights Tracker 웹사이트.

□ 역능성(Empowerment rights)

- 이 지표는 참여와 같은 시민이 누려야 할 역능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세부적으로 결사권(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표현권(Right to opinion and expression), 참여권(Right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등의 하위 지표들로 작성됨.
- 한국은 시민의 역능성 측면에서 19개 대상국 중 5위를 기록함. 세부적으로 보면 결사권에서는 4위, 표현권에서는 5위, 참여권에서는 3위로 고르게 높은 순위를 나타냄.
- 역능성 지수 역시 비교 대상국의 수가 많지 않아 한국의 객관적 수준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표 2> Empowerment rights Score, 2018

	Empowerment rights	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opinion and expression	Right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Liberia	7.870	8.114	6.807	7.714
United Kingdom	7.330	7.320	7.288	6.196
New Zealand	7.265	7.725	7.140	6.316
Australia	7.082	6.474	6.298	7.625
South Korea	6.873	6.944	5.430	7.140
Kyrgyzstan	5.627	5.645	5.368	5.755
Nepal	5.612	5.956	3.878	6.442
United States	4.858	5.406	5.167	4.022
Brazil	4.783	5.347	4.634	4.829
Angola	4.724	4.191	4.928	4.422
Mexico	4.442	5.070	3.671	4.102
Jordan	3.847	3.118	3.698	5.274
Mozambique	3.673	4.971	3.597	2.781
Fiji	3.458	3.703	2.683	4.036
Venezuela	2.978	3.524	3.166	1.996
Vietnam	1.975	2.080	2.360	1.874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850	2.658	2.324	1.592
Kazakhstan	1.602	1.410	2.084	1.895
Saudi Arabia	0.984	1.256	1.103	1.129
한국 순위	5/19	4/19	5/19	3/19

주: HRMI 제공 데이터셋 분석 결과임.

출처: HRMI Rights Tracker 웹사이트.

2) 경제사회적 권리

- HRMI 경제사회적 권리 지표는 교육권(Right to Education), 건강권(Right to Health), 주거권(Right to Housing), 노동권(Right to Work), 식량권(Right to Food) 등과 같은 삶의 질 국면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지표들로 구성됨.
- HRMI 경제사회적 권리 지표는 고소득 국가(High Income Country) 기준과 저소득 국가(Low Income Country) 기준으로 지פות값이 각각 산출되는데, 한국이 포함된 고소득 국가 기준으로는 식량권을 제외한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지표로 작성됨. 이 경우 각각의 권리 영역은 아래와 같은 세부 지표들로 구성됨.
 - 교육권: 초중등학교 취학률, PISA 수학·과학·읽기 점수 level 2 이상 비율
 - 건강권: 아동 5세 생존율, 65세 생존율, 피임기구 사용률, 저체중아 비율산율
 - 주거권: 기본위생시설 거주 인구 비율,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거주 인구 비율, 구내식수 사용 인구 비율
 - 노동권: 절대빈곤에 속하지 않은 인구 비율, 상대빈곤에 속하지 않은 인구 비율, 장기실업에 처하지 않은 실업자 비율
- 한국은 선진국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적 권리 지수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으로 교육권과 주거권에서 각각 3위, 노동권에서 6위, 건강권에서 8위에 오르는 등 고르게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종합지수 1위에 오름.
 - 한국의 사회경제적 권리 지수는 이 지수가 집계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위, 2009년 2위를 기록한 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OECD Better Life Index(2020)의 삶의 만족도(37개국 중 공동 28위)와 사회적 지지(37개국 중 37위)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즉 한국은 교육이나 건강, 주거생활에서 최저 수준 이상의 자원과 인프라가 제공되는 반면 개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사회적 관계의 질은 매우 낮은 국가임을 보여 주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표 3> Quality of Life Score, 2016

	Quality of Life Score	Right to Education	Right to Health	Right to Housing	Right to Work
Korea, Rep.	90.67	87.84	96.86	98.46	79.53
Finland	89.54	87.68	97.35	91.60	81.53
Denmark	88.33	79.77	96.49	92.94	84.11
Sweden	88.30	82.76	98.14	91.99	80.29
United Kingdom	87.43	83.26	95.80	97.65	72.99
Netherlands	86.12	81.52	96.83	97.33	68.83
Japan	85.68	91.00	95.18	99.80	56.73
Switzerland	85.14	75.79	96.95	98.82	68.99
Canada	84.89	89.92	96.34	76.51	76.79
Norway	84.57	82.19	97.85	74.10	84.12
France	84.55	83.13	94.99	92.10	67.99
Belgium	83.87	81.38	95.44	97.10	61.57
Estonia	83.78	87.35	94.18	92.90	60.67
New Zealand	83.39	82.80	96.52	75.93	78.30
Iceland	82.88	73.28	98.52	68.58	91.16
Israel	82.75	77.40	96.09	93.28	64.22
Spain	81.74	80.87	95.97	97.45	52.68
Poland	81.05	81.44	93.18	77.14	72.45
Australia	80.59	80.46	96.91	73.71	71.29
Italy	80.48	78.97	96.49	95.43	51.02
United States	80.24	74.78	92.80	88.28	65.10
Luxembourg	79.65	66.56	96.09	90.70	65.23
Slovenia	79.56	84.58	95.73	75.72	62.21
Ireland	77.27	86.79	97.11	65.40	59.76
Hungary	77.15	73.04	90.21	75.64	69.72
Latvia	75.09	77.38	91.45	78.38	53.14
Portugal	72.83	80.46	94.52	61.67	54.68
Lithuania	70.45	74.71	90.95	61.20	54.95
Greece	70.44	69.31	94.32	75.25	42.88
Mexico	65.19	49.80	92.18	45.16	73.64
Turkey	64.31	58.11	91.44	44.29	63.41
Colombia	56.19	51.09	88.46	19.61	65.61
한국 순위	1/32	3/32	8/32	3/32	6/32

주: HRMI 제공 데이터셋 분석 결과임.
출처: HRMI Rights Tracker 웹사이트.

<표 4> Quality of Life Score 한국 순위, 2006-2016

연도	Quality of Life Score	Right to Education	Right to Health	Right to Housing	Right to Work
2006	3	2	8	9	6
2007	3	2	8	7	6
2008	3	2	8	8	7
2009	2	1	5	7	8
2010	1	1	5	7	8
2011	1	1	6	7	8
2012	1	1	5	6	7
2013	1	1	5	6	7
2014	1	1	8	3	6
2015	1	2	7	3	5
2016	1	3	8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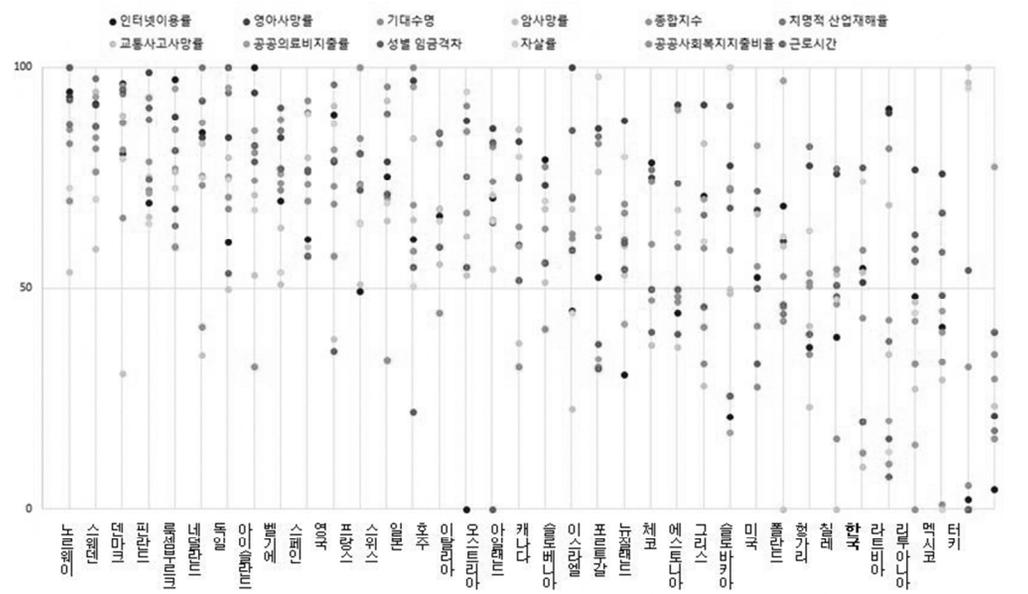
주: HRMI 제공 데이터셋 분석 결과임.

출처: HRMI Rights Tracker 웹사이트.

2.5. 국가인권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수준

- HRMI 경제사회적 권리 지표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으로 매우 양호함을 보여 주고 있음. 하지만 국가인권통계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인권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함. 이 절에서는 국가인권통계를 통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함.
- 아래의 [그림 6]은 국가인권통계 중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국제통계를 활용하여 OECD 36개국(콜롬비아 제외)의 인권상황을 비교한 것임. [그림 6]에 사용된 값은 최상위 국가와 최하위 국가의 지점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수임(최상위 국가는 100점, 최하위 국가는 0점).
- 이 [그림 6]에서 한국은 인터넷이용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암사망률 등에서 선진국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산업재해율, 교통사고사망률, 공공의료비지출, 성별 임금격차, 자살률, 공공사회복지지출, 근로시간 등에서는 평균 이하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공공의료비지출, 성별 임금격차, 자살률, 공공사회복지지출,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공공행정 참여의 인프라(인터넷이용률)가 잘 발달되어 있고 신체적 건강(영아사망률, 기대수명, 암사망률)을 최상위 수준으로 누리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높은 교육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의 권리(성별 임금격차, 근로시간)가 보장되지 못함.
 - 또한 보건 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건강권을 향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이 약해 생명권(자살률, 산업재해사망률, 도로교통사망률)이 위협받고 있음.
 - 이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의 투자(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의료비지출)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즉 한국은 안전권과 생명권, 노동권, 사회안전망 권리에서 국민의 권리가 더 신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한국이 인권의 결과 지표보다는 정부의 복지지출이나 사회안전망, 노동조건 등과 같은 인권의 과정 지표에서 빈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유럽의 선진국들은 결과 지표와 과정 지표에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그림 6] 한국과 OECD 국가의 인권지수



3. 취약집단 인권상황

□ 국가인권통계는 인권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을 포함하고 있음. 본 절에서는 『한국의 인권통계 2019』(한준 외, 2019)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를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을 살펴봄.

3.1. 여성

1) 정치참여

-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1년 24.8%에서 2018년 39.2%로 향상되고 있음.
-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04년 13.0%에서 2008년 13.7%, 2012년 15.7%, 2016년 17.0%, 2020년 19.0%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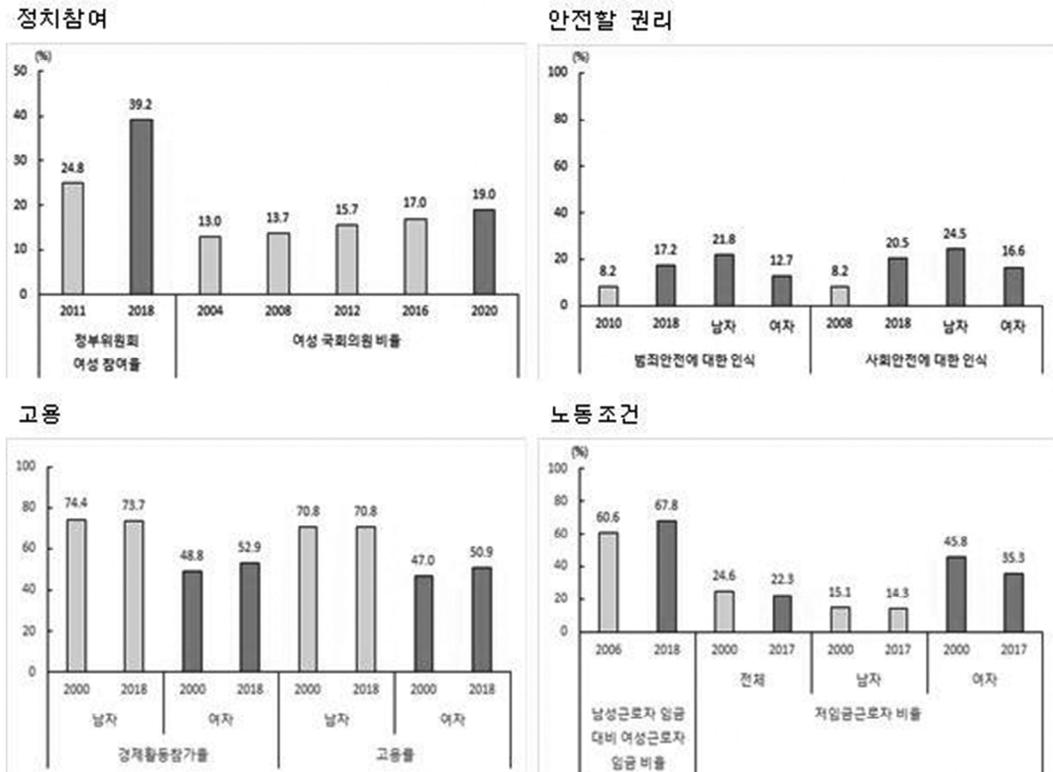
2) 안전

- 한국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내외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들이 인식하는 수준은 더욱 낮음.
- 범죄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8.2%에서 2018년 17.2%로 향상됨. 2018년 기준 남성의 21.8%, 여성의 12.7%가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함.
-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8.2%에서 2018년 20.5%로 향상됨. 2018년 기준 남성의 24.5%, 여성의 16.6%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함.

3) 고용 및 노동조건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52.9%로 같은 해 남성의 73.7%보다 크게 낮음.
-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47.0%에서 2018년 50.9%로 높아졌으나 남성의 70.8%에 비해 여전히 낮음. 2000년 이후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20% 포인트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며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실업률은 2018년 남성과 여성 3.9%와 3.7%로 큰 차이가 없음.
-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2006년 60.6% → 2018년 67.8%)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근로자의 70%에도 미치지 못함.
-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크게 낮아졌으나 남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00년 24.6%에서 2007년 26.0%로 높아졌다가 2017년 22.3%로 약간 낮아짐.
- 남성 저임금근로자는 2000년 15.1%에서 등락 이후 2017년 14.3%로 큰 변화가 없음.
-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2000년 45.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35.3%로 낮아졌으나 남성에 비해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그림 7] 여성의 인권상황



3.2. 노인

1) 고용

-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5.5%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8년 50.9%에 이르고 있음.
-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2000년 44.5%에서 2018년 49.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중고령자의 실업률은 2018년 2.9%임.

2) 빈곤

- 노인가구의 절반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음.
-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 이내(시장소득 기준 19.7%, 처분가능소득 기준 17.4%)인 데 반해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0% 내외(시장소득 기준 56.6%, 처분가능소득 기준 42.2%)로 매우 높음.

3) 학대 및 폭력 피해

-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건수인 노인학대 발생률은 2007년 48.1%에서 2017년 62.8%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남성 노인에 대한 학대는 등락은 있으나 40% 전후로 큰 변화가 없음. 하지만 여성 노인에 대한 학대는 2007년 54.8%에서 2018년 8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약 10명(9.8%)은 학대와 방임, 성폭력(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음.
- 소득1분위 노인의 경우 100명 중 약 14명(14.2%)이 학대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 노인에게서 학대피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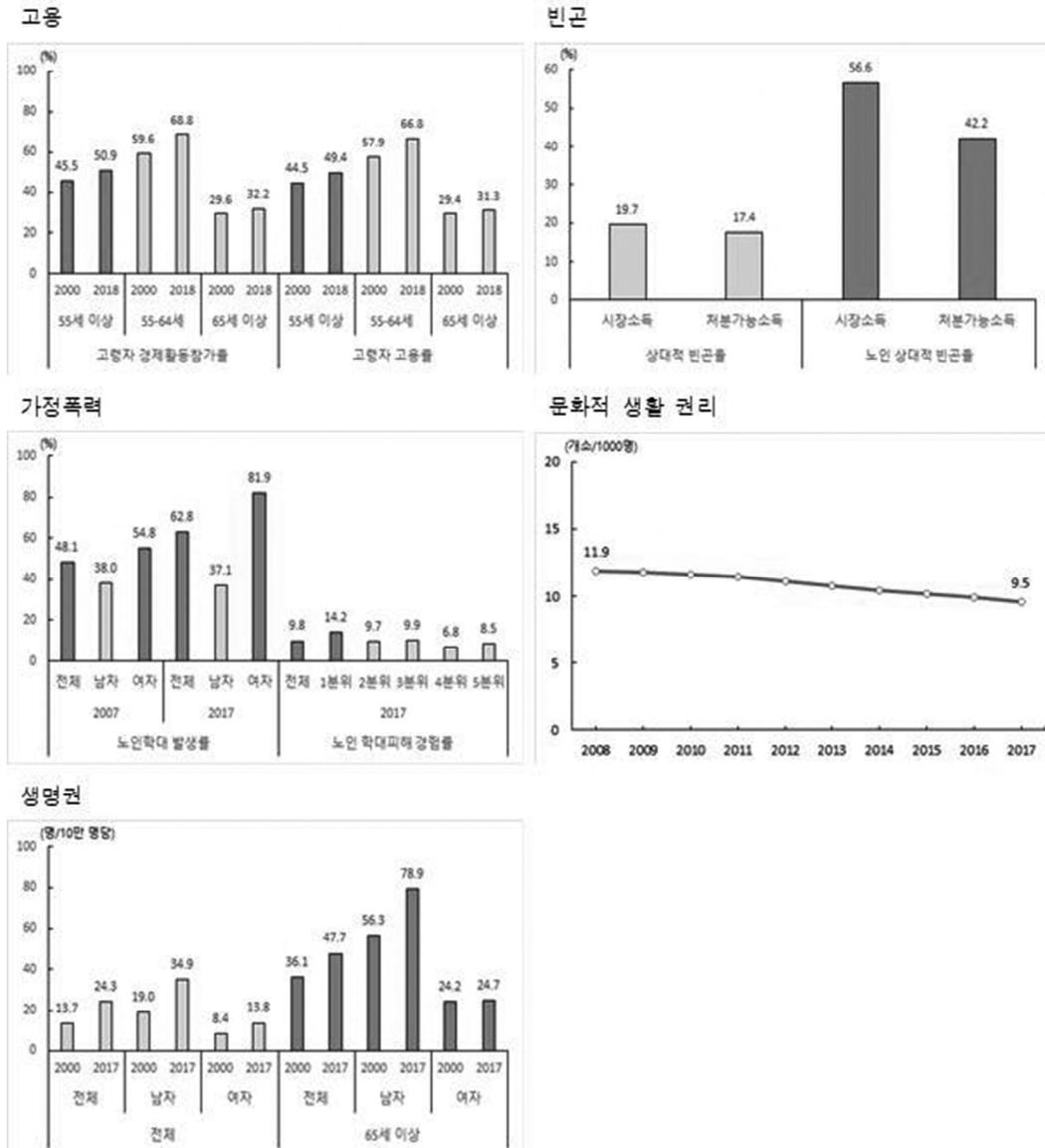
4) 문화적 생활

-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08년 11.9개에서 2017년 9.5개로 낮아져 노인의 문화적 생활 권리는 축소됨. 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증가 속도가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됨.

5) 생명권

- 한국인의 자살률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특히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 더 심각함.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전체 인구의 자살률보다 높으며, 고령자 중에서도 남성 고령자의 자살률이 더욱 높음.
- 고령자의 자살률은 2000년 고령인구 10만 명당 36.1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증가함.
- 2017년 기준 여성 고령자의 자살률은 24.7명에 그치지만 남성 고령자의 자살률은 78.9명으로 여성의 세 배에 달함.

[그림 8] 노인의 인권상황



3.3. 장애인

1) 고용 및 노동조건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현재 37.0%임. 남성 47.1%, 여성 23.1%로 남성 장애인이 두 배가량 높음.
- 2018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5%이며 남성 44.1%, 여성 21.4%로 남녀 간 차이가 큼.
- 2018년 기준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높은 편이며 남성은 6.3%, 여성은 7.4%임.
- 2017년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8.5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257.7만 원의 92.5% 수준임.
-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대부분이 장애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장애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46.6%, 경사로 설치 및 바닥 높이 차이 제거 38.5%, 장애인용 화장실 37.2%, 높이(단차)가 없는 출입문 36.9%, 도로와 분리된 보행로(보도) 36.7% 등에 불과함.

2) 장애인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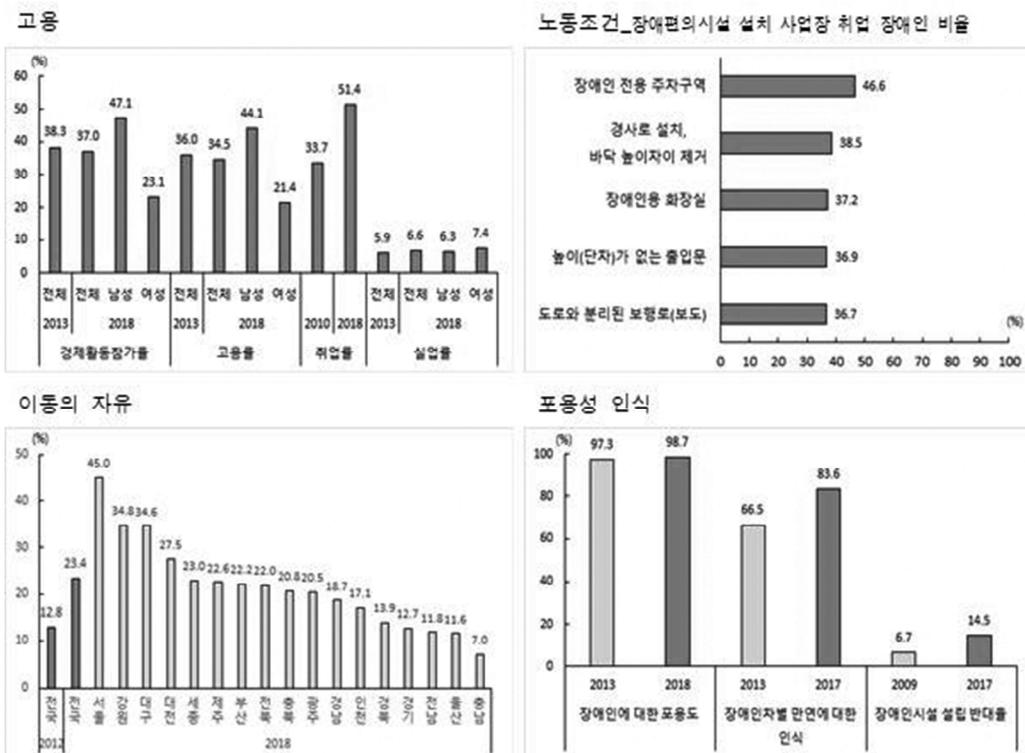
-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2012년 12.8%에서 2018년 23.4%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4대 중 1대에 불과함.

3)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

- 국민 100명 중 99명이 장애인을 이웃, 직장동료,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하여 본인의 장애인 포용성을 높게 인식함.
- 장애인을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97.3%)부터 2018년(98.7%)까지 97%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3년 66.5%, 2017년 83.6%로 높아짐. 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포용성과 타인의 포용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국민 100명 중 15명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함. 이는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 인식과 실천 사이에 차이(gap)가 있음을 보여 줌.
- 자신의 집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는 인구의 비율은 2009년 6.7%, 2011년 6.2%, 2013년 5.8%로 낮아지다가 2015년 7.0%, 2017년 14.5%로 높아짐.

[그림 9] 장애인의 인권상황



3.4. 외국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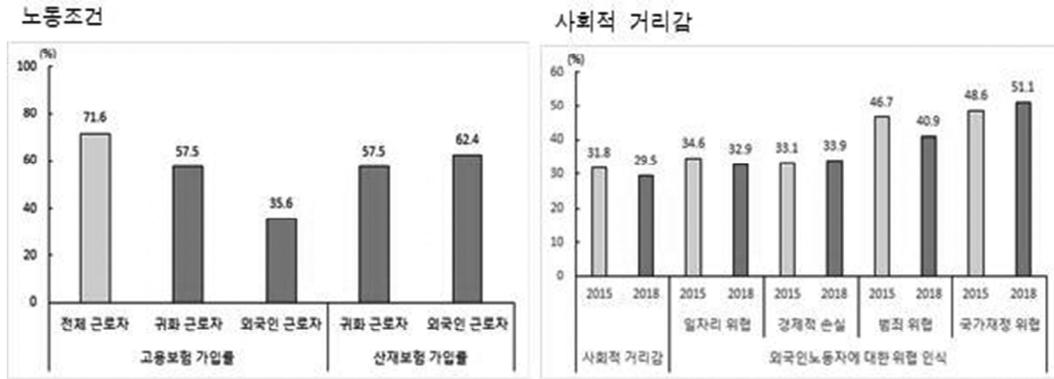
1) 노동조건

-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8년 71.6%(정규직 87.0%, 비정규직 43.6%)에 달하지만 귀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57.5%와 35.6%에 불과함.
- 귀화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7.5%,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2.4%임.

2) 사회적 거리감

-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29.5%임(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18).
- 같은 조사에서 국제 난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55.7%에 달함.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32.9%가 일자리 위협을, 33.9%가 경제적 손실을, 40.9%가 범죄 위협을, 51.1%가 국가재정 위협을 각각 우려하고 있음(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18). 외국인에 대한 포용이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외국인 이민자 및 노동자를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은 94.3%에 달함(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
-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국민의 30%가량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적 거리감 질문이 어느 정도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됨.

[그림 10]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



3.5. 비정규직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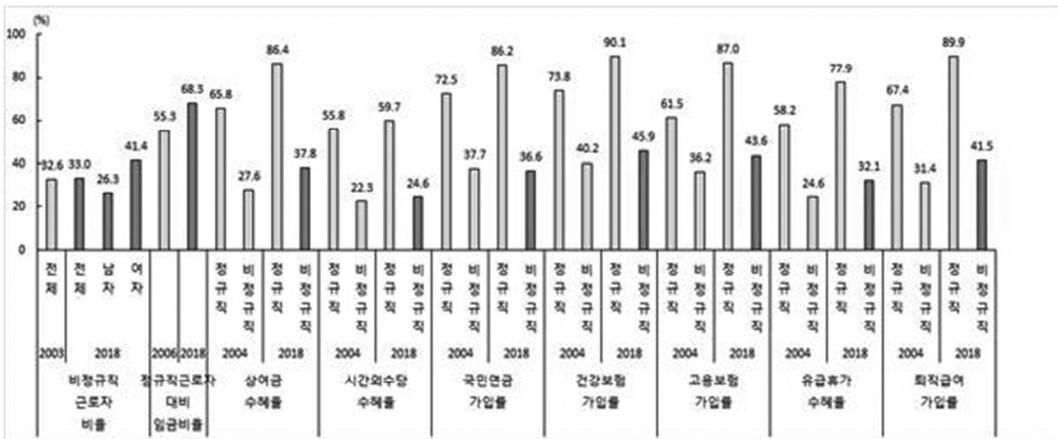
1) 고용 및 노동조건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03년 32.6%, 2004년 37.0%, 2014년 32.2%, 2018년 33.0% 등으로 등락은 있으나 30% 초중반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남성 임금근로자의 26.3%, 여성 임금근로자의 41.4%가 비정규직 근로자임.
-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8.3%에 그침(2018년 기준).
- 2018년 기준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86.4%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7.8%에 불과함. 시간 외 수당을 받는 정규직은 59.7%인 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4.6%에 그침.
- 상여금 수혜율의 경우 정규직은 2004년 65.8%에서 2018년 86.4%로 20.6%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27.6%에서 37.8%로 10.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는 비율도 낮음.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8년 기준 정규직 86.2%, 비정규직 36.6%임.
- 건강보험 가입률은 2018년 기준 정규직 90.1%, 비정규직 45.9%임.
-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8년 기준 정규직 87.0%, 비정규직 43.6%임.
- 퇴직급여 가입률은 2018년 기준 정규직 89.9%, 비정규직 41.5%임.
- 유급휴가 수혜율은 2018년 기준 정규직 77.9%, 비정규직 32.1%임.

[그림 11]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3.6. 저소득층

1) 사회안전망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경제 상황을 불안하게 인식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없음.
- 2018년 기준으로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2명 중 1명(100만 원 미만 55.4%, 200만 원 미만 51.6%)이 본인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5명 중 1명(20.8%)에 그침.
- 2018년 기준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의 39.0%가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1.8%에 불과함.

2) 적절한 주거권

- 저소득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음. 저소득 가구의 자가 거주율은 2013년 49.7%에서 2018년 47.2%로 오히려 낮아짐.
- 2018년 기준 저소득층의 자가 거주율은 47.2%이며 고소득층의 자가 거주율은 75.2%임.
- 저소득층 100명 중 9명(9.1%)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정부가 정한 면적, 방수, 시설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하는 주거시설에 살고 있음(2018년 기준).
- 저소득 가구의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는 각각 2.85점과 2.86점에 그치는 데 반해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3.14점과 3.06점에 달해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2018년, 4점 만점 기준).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도가 높음. 2018년 기준 고소득층의 61.7%, 중소득층의 70.5%, 저소득층의 75.6%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나 대출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함.

3) 적절한 식생활

- 2017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11.8%가 최근 1년간 식생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
 - 이들은 가구 식생활 형편에 대해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응답함.
- 2017년 기준 저소득층의 5명 중 1명(18.3%)은 영양섭취 부족자임.
 - 영양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 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임.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식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2018년 기준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의 100명 중 5명(5.4%)은 지난 1년 중 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끼니를 거른 적이 있음.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낮음.
 - 2018년 기준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4명 중 1명(25.8%)만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6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5명 중 3명(60.4%)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생각함.
- 초중고 학생 역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음.
 - 2018년 기준 고소득 가구 학생의 90.9%, 중소득 가구 학생의 85.6%, 저소득 가구 학생의 70.5%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함.

4) 의료접근권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미진료율이 높음.
 -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9.7%가 지난 1년 중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2018년 기준).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병 발생 시 가능한 경제적 대처에 대해 부족한 비율도 높음. 1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의 10명 중 9명은 중병에 대한 경제적 대처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5) 교육받을 권리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낮으며, 사교육 참여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낮아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분명하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사교육 참여율이 47.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600만 원 이상은 80% 이상).
 - 사교육 참여자의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2018년 기준 200만 원 미만은 9.9만 원으로 10만 원이 안 되는 반면 700만 원 이상은 4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상은 50만 원 이상임.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난 1년 중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비율이 높음.
 - 2018년 기준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3.7%가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반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12.4%에 달함.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육기회 충족도도 낮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72.8%가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29.2%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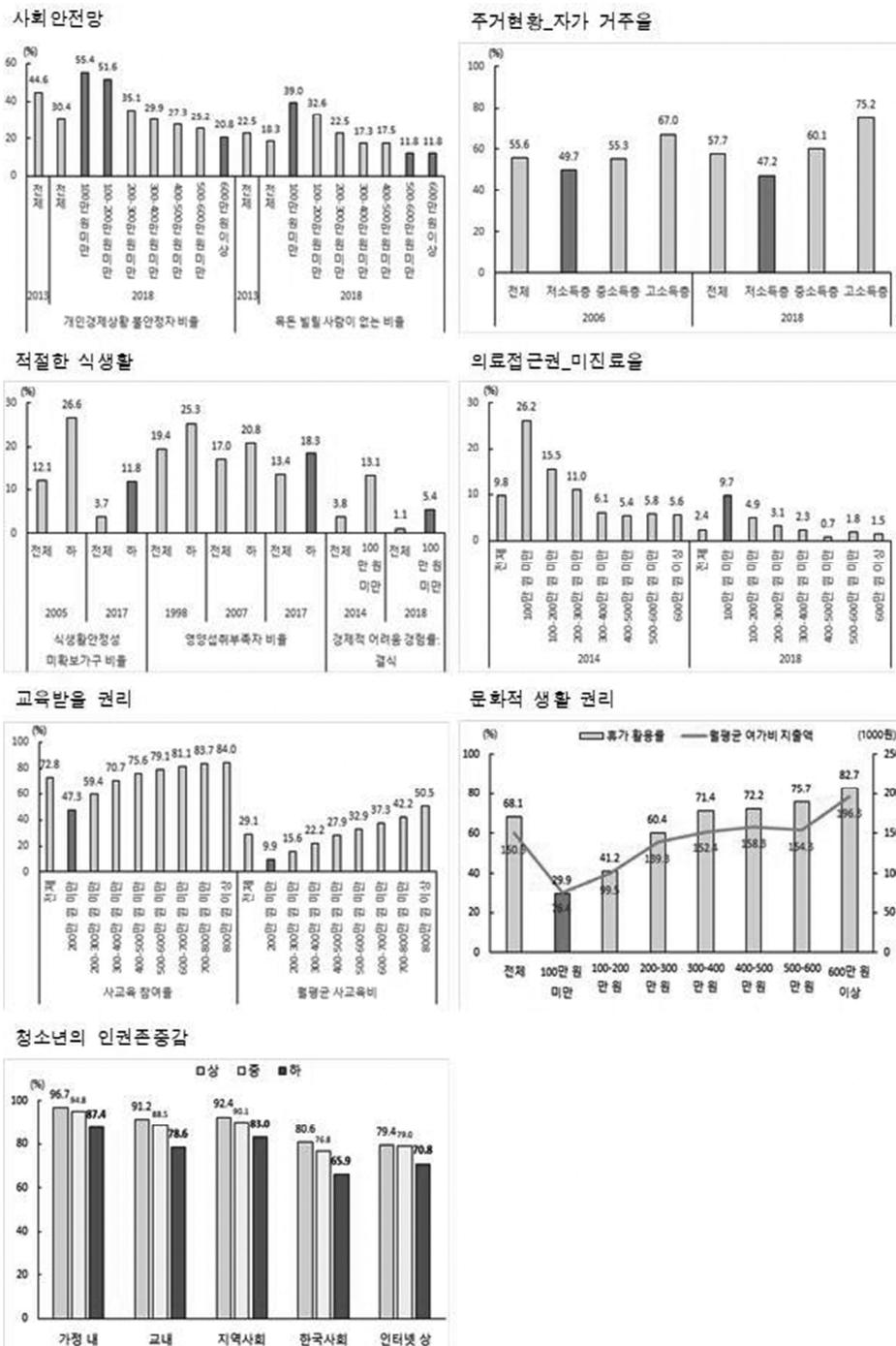
6) 문화적 생활 권리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휴가 활용률도 낮고 여가비 지출액도 낮으며 여가생활 만족도도 낮음.
- 2018년 기준 지난 1년 동안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는 비율은 100만 원 미만의 경우 29.9%에 불과하지만 6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82.7%에 달함.
- 여가생활에 지출한 월평균 금액도 100만 원 미만은 약 8만 원인데 600만 원 이상은 약 20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2018년 기준).
- 자신의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임. 2017년 기준 여가생활 만족도는 100만 원 미만의 경우 14.0%에 그치지만 6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42.4%로 세 배 정도 높음.

7)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권존중감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권존중감이 낮음.
-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고소득 가구 학생은 96.7%가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저소득 가구 학생은 87.4%가 존중받는다고 응답함.
- 교사가 학생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고소득층 학생은 92.2%, 저소득층 학생은 85.1%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임.

[그림 12] 저소득층의 인권상황



4. 국가인권통계 개선과제

- 국가인권통계는 첫째 체계적인 분류 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둘째 국가통계를 활용하며, 셋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3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작성됨.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까지 작성된 국가인권통계의 한계를 짚어 보고 그에 따르는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작성된 381개의 인권통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인권영역과 3개 권리유형, 41개 인권주제로 분류됨.
 - 이렇게 작성된 인권통계에 대해서는 각각의 통계가 인권 현상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통계의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이나 연구진 숙의를 통해 각 통계의 측정 내용과 분류 유형을 검토하고 그 결과 인권 관련성이 낮고 분류 적절성이 떨어지는 통계를 적극적으로 가려낼 필요가 있음.

- 인권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와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를 대상으로 발굴하여 작성됨. 여기에는 조사통계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자료로 집계한 통계들도 포함됨.
 - 하지만 발굴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수집하지 못한 인권 관련 통계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음.
 -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가 행정통계를 보다 광범하게 파악하여 국가인권통계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인권통계는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됨. 최근 국내외 통계 서비스는 간결한 통계에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인권통계는 이러한 최근 통계 서비스 동향을 고려하여 작성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통계가 향후 독립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이루어져야 함.
- 구축된 인권통계로부터 중요 통계를 선별하여 이를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가 가능하고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형태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이때 인권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표 선정과 지수 개발에 관한 방법론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향후 인권지표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에 대한 정의와 산출방법, 지표의 의의와 지표가 나타내는 인권상황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것임.

<표 5> 인권영역·권리유형·인권주제별 국가인권통계 수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거버넌스(37)	시민·정치적 권리(30)	평등권(7)	정치참여의 평등	7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1	
		양심의 자유	0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19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3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67)	시민·정치적 권리(67)	안전할 권리	51	
		사생활 보호 권리	8	
		공정한 재판 권리	4	
		사법적 구제 권리	3	
		임의 체포와 구금	1	
물질적 생활수준(2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4)	사회안전망 권리	18	
		인권과 빈곤	6	
주거와 교통(35)	시민·정치적 권리(10)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5)	적절한 주거 권리	25	
가족(4)	시민·정치적 권리(4)	가정폭력	4	
노동(68)	평등권(29)	고용에서의 평등	17	
		노동조건의 평등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39)	일할 권리	7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2	
건강(54)	평등권(7)	보건서비스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9)	생명권	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38)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3
			적절한 식생활 권리	6
			의료 접근권	15
			모성 및 아동 보호	4
교육(32)	평등권(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4)	교육선택의 자유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3)	교육받을 권리	23	
문화·미디어·정보(39)	평등권(23)	다양성 존중	23	
	시민·정치적 권리(0)	표현의 자유	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16)	문화적 생활 권리	13
			정보 접근권	3
환경(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13)	쾌적한 환경 권리	11	
		식수 및 위생 권리	2	
가치와 의식(8)		인권실태 평가	5	
		인권 인식과 교육	3	
합계			381	

* () 안은 해당 인권영역 및 권리유형으로 분류된 통계 수임.

참고문헌

한준 외, 2019. 『한국의 인권통계 2019』, 국가인권위원회.

OECD, 2020. *HOW'S LIFE? 2020*.

HRMI Rights Tracker 웹사이트, <https://rightstracker.org>.

Our World in Data 웹사이트, <https://ourworldindata.org/human-rights>.

지정토론

1.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2.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3.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1.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1. 인권의식 관련

- 17-18쪽;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 ‘맥락’에 대한 질문이 필요했다고 봄. 중앙 일간지와 구글 트렌드 검색을 통한 인권 언급 횟수가 만약 성폭력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 등 사건의 증가로 늘어난 것이라면 친인권적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까? 선정적인 소위 ‘낚시질’ 제목에 클릭한 것이라면? 어떤 맥락에서 인권이란 단어를 접했는지를 질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또한 ‘인권’을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됐는지, 긍정적인 의미로 인권을 접했는지(당연하다 혹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접했는지(왜 저런 것까지 권리라 하나, 왜 문제를 굳이 만드냐는 의미에서), 인권을 접하게 되는 맥락이 드러났으면 함.
- 19-21쪽;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 ‘세계인권선언’이 인권에서 중요한 문서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지도를 일상에서의 인권의식과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함. 오히려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산업안전 관련 규정 등), 성폭력 방지법, 아동권리에 관한 법 등 일상에서 자기와 관련 있는 인권관련 규범과 제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적절할 듯. 언론에서 언급된 인권 규범도 ‘세계인권선언’ 보다는 더 구체적인 법률로 나타날 듯함.
- 20쪽; 해석의 문제점; “40대 사이에서 60대 사이의 여성들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음”; 이것은 전형적인 공사 이분법적인 표현으로 이 자체가 젠더 감수성의 결여로 보일 우려가 있음.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노동을 비가시화하는 측면이 있고, 한국사회에서 많이 지적돼온 여성의 빈곤, 불안정 저임금 노동,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적인 영역’의 문제일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 요소로

봐야지,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에 더 관심”이라는 식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 22쪽; 세계인권선언을 접해본 여부에 대한 성별 차이를 굳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지, 유의미성을 모르겠음. 그보다는 성별, 세대별로 자주 접해본, 또는 적극적으로 찾아본 인권규범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음.
- 23쪽; 전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일반론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여기더라도, 사회 속에서의 ‘위치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장애인에게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에게, 노인에게, 이주민에게, 아동에게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부가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으로’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음. ‘비장애, 성인, 정규직, 남성’에게 묻는 질문이 아닌 이상 ‘전반적’이라는 표현으로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임.
- 24쪽;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본인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 앞서 말한 ‘위치성’을 드러내는 듯함.
- 27-29쪽; 해석에 사용된 용어들과 개념이 불분명함. ‘개인의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하면 사회구조와 무관한 개인의 각성으로 오인될 여지가 큼. 부연 설명으로 “인권의식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각성으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되어있으나, 전체적인 언어 사용에서 이 점이 분명해 보이지 않음. 개인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과 개인의 결단 내지 개인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다를 수 있음. ‘관계성’, ‘연루됨’ 속에서의 인권이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29쪽 “인권의식은 도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표현에서 ‘도덕성’이란 용어에도 의문이 듦. 인권의식은 도덕성이 아니라 부당한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이란 점이 부각돼야 한다고 봄.
- 33쪽에서 인권의식이 낮거나 높은 것을 ‘학력 효과’라고 판단한 것은 아주 위험해 보임. 종속성이 약점이 되고, 피억압자가 억압적 상황에 적응 내지 순응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인간화와 인권침해인데, ‘학력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임. 여성 20-30대의 인권의식 또한 ‘학력 효과’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주목된 페미니즘, 미투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더 관련지어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닐지.

- 33-36쪽;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4개(인간이 존엄한 사회, 관용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간의 별다른 충돌이 없어 보이는 데, 개인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나머지 예시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 같지 않음. ‘경제적 풍요’를 1순위를 꼽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머지 예시된 가치들과 대립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임.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왜 어떤 점에서 다르게 제시돼야 하는 지 의문임. 오히려 같은 항목을 제시했을 때, 개인적 가치에서 꼽는 것과 사회적 가치로 꼽는 것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지. 설문에서 제시되는 가치 사례와 언어는 좀 더 정선할 필요가 있음.

2. 혐오표현 경험 관련

- 질문지 14쪽에서 “대표적인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된장녀, 한남충, 맘충, 틀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을 이해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런 예시를 설문에 등장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
- 일상어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음; 폭언, 모독, 비하 발언,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싸잡는 표현, 특정 상징의 활용 예시 등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어떨지. ‘혐오표현’이란 용어의 개념 자체가 학계와 언론에서 다뤄진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음. ‘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교육과 토론의 주제이기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여성 혐오’를 말해도 ‘나는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데’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현실임.
- 110쪽. 위와 관련, “중학교 이하에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74.6%”이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을 더 자주 접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에 의문이 듦.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인지 여부’가 아닐까 싶음. 혐오표현이 온라인의 특정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생성·유포되는데 그런 매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인지되는 혐오표현은 다른 것일 수 있음.

3. 인권교육 관련

- 질문지 30번;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사소한 것이지만, ‘받은 적’ 보다는 ‘참여한 적’이 더 좋을 듯. 인권교육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참여적이고 대화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 어디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았냐는 질문에서 심화 질문이 있으면 좋을 듯; 의무적/자발적, 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교육주제 등에 따른 차별성을 진단하는 질문이 필요.
- 질문지 34번에서 표현들의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소수자, 약자를 돕는” 등의 표현은 인권활동을 동등한 시민사이의 활동으로 여기기보단 시혜나 봉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인터넷 사이트에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 또는 댓글달기”는 반인권적 활동 당사자들도 그것을 인권관련 활동으로 생각하고 답할 여지가 있음. 인권관련 공론장의 의미가 더 부각되는 사례와 책임성 있는 표현의 여지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음.
- 114쪽. 기업 내 인권교육 비중의 증가; 설문 대상이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학교보다 직장이 주관한 비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 추정. 성희롱예방교육 등은 중요성이 크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인권교육이 아닌 특정 주제에 집중한 교육임. 인권교육과 연관되는 주제이더라도 인권교육과 등치시키기에는 부족함 점이 많음. 가령 많은 기관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어떤 주제의 교육이든지 집체교육을 하면 인권교육으로 통치는 경향이 있음. 직장에서 주관한 인권교육의 주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총체적인 인권교육(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한)과 세분화된 주제별 교육의 연결성을 조율해야 함. 기업내 인권교육이라고 답변한 것이 인권교육에 부합하는 것인지, 유사 주제의 강의를 들은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116쪽.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집단은 대체로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지목하였음; 딜레마; 각종 인권교육 현장을 다니다보면, 참여자들의 평가 중에 ‘왜 우리만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않는 데’라는 것이 많음. 즉, 잠재적 가해세력, 구조적 인권침해의 핵심에 있는 결정권자들은 제외하고, 정작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자신들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모순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음. 의사결정 및 집행 권력을 행사하는 쪽의 인권교육이 그렇지 않은 쪽의 인권교육과 같을 수는 없음. 이것을 같은 층위에 두고 인권교육으로 해석해야 할지도 의문. 양성과정에서의 필수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운동 뿐 아니라 유엔 등 인권관련기구의 오랜 요구사항이었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집단을 끄는 질문에 부가적으로 어느 수준의 ‘의무화’를 요구하는지를 파악했으면.

- 117쪽. 인권규범 인지에 대해; ‘2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잘 알고 있다’; 성폭력이나 직장괴롭힘 등의 상황을 가정하면, 주요 피해 집단과 가해 집단이 동시에 인권규범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되니 당혹스러움. 무엇을 인권규범으로 인지하는지가 의문임.
- 120쪽. “남성들과 달리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인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앞서 ‘공사 이분법’에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 의문임. 평소 인권교육 현장을 다니다보면, 시민사회단체나 공공기관이 개설한 인권강좌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 직장인 의무교육인 경우에도 하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아 여성이 대다수임. 그리고 시민단체 참여자 중 상당수가 일회성 교육이 아닌 조직을 이루어 매년 심화학습을 하고 있고 교육 이수 후에 성평등 강사나 노동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음. 인권교육 유경험자 집단 내에서 세분화하여 질문할 필요성 있음.
- 121쪽.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으면 인권의식이 낮은 편임.”; 인권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과 인권의식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다름.
- 124쪽. 인권교육의 주제; 제시된 인권교육의 주제가 특정분야(성평등, 혐오/차별 예방)와 특정집단에 관한 주제(장애인 등)에 국한돼 있는데, 인권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것을 추가할 필요 있음. 인권교육을 소수자인권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우려됨.
- 125쪽. 인권 관련 활동 참여; 앞서 질문지 관련해서 지적했듯이, 시혜나 봉사활동으로 인권활동을 오인할 우려가 있음.
- 126쪽. ‘개인의 노력’; ‘개인의 노력’이 갖는 함의가 불분명함. 권리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으로 해석할지, 구조적·제도적 노력보다 각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할지...자칫하면 인권증진 노력이 개인의 선택 내지 헌신으로 오해될 여지가 큼.

4. 기타

- 이 통계에 대한 질문지와 해석을 읽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인권교육의 과정이라고 봄.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정제할 필요가 있음.(가령 130쪽의 “아동청소년의 미성숙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사이분법, ‘학력’관련 인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을 인권의식이 낮은 것으로 표현한 것, 질문지에서 사용한 용어설명 등)
- 설문대상이 ‘19세 이상 성인남녀’라 했을 때, 제3의 성은? 국민이라 했을 때, 여기에 포함되는 이는? 결혼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처음부터 ‘타자’로 설정하고 묻는 질문들(가령 “귀하의 가족, 이웃, 친구 중에 아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란 질문, 옆집에 이사 와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일종의 정상성, 표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지.
- ‘가치’들과 관련된 질문을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인권에 반하는 가치를 정선하여 제시할 필요성
-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집단과 조직을 보면, 인권침해의 주체로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의 인권의식과 가장 괴리된 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성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연구진들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략한 몇가지 질문과 제언 드립니다.

1. 인권에 대한 분석 중 언급이 증가하는 것과 감정에 대한 태도는 상이할 것이다. 현재 전사회적으로 인권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범과 가치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종에 인권에 대한 감성 분석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감성 분석 등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댓글 등 분석을 통해 인권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성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인식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2. 인권선언 언급회수, 인권의 언급회수의 증가등을 이야기 할 때, 매체 비율 검토를 해야할 것이 아닌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구글의 ngram의 경우에는 문헌수에서의 발생 비율을 검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기본적으로 매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빈도의 증가 자체는 매체수, 종수의 증가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의 DB에는 소위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것을 비율 등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3. 차별 경험에 대한 세대별/ 젠더별 차이
 차별 경험에서 젠더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혹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졌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료화 테제(medicalization)에서 항상 지적이 되는 것인데, 어떤 질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질병의 실제적 증가라기 보다는 발견 기술이 높아

지면서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경험 조사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차별이 증가하는 것인지 혹은 이전에는 차별로 인식되지 않았던 여러 사회적 관계와 행위들이 차별로 인식되도록, 특정 세대에서 인권의식과 차별 관련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이런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타겟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인구집단 변수별로 어떤 방식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수 있을지? 조사결과가 구체적인 교육 대상, 내용, 방법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드린다.

- 인권교육 대상자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연구결과에 대해 기반해 제안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주요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때,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문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력과 인권의식의 상관성, 포용과 관련된 분석(서울서베이)에서도 다른 집단에 대해 포용성이 높은 집단은 대체로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장애 제외). 그렇다면 학력이 높은 집단은 비교적 인권의식도 높은 집단이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에 비해 인권의식 등이 높을 가능성이 높는데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 현재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교육은 규범에 대한 지식과 제재를 인식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실질적 인권의 문화/ 평등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할 경우, 그 교육의 교육목표에 대한 일종의 지표체계 형성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연구 결과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또한 이런 분석은 인권위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정하는데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권의식이 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교육내용, 교육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 개인적으로는 인권교육에서 인권문화, 문화다양성의 요소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오고 있다. 인권과 관련된 문화활동, 인권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규범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질성, 차이의 포용을 할 수 있는 방향,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범에 대한 이해, 차별금지제

대한 인식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에 대해 인식과 이해,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규범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루어졌지만, 인권 감수성/정서적 영역, 문화, 경험 영역에 대한 조사는 다소 소략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조사와 정책 개발과정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를 기원한다.

인권의식 현황과 인권교육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은 인권의식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몇 가지 제언과 그것이 인권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권의식과 현황에 대한 소중한 자료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인권정책 수립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사회집단별로 의식이 불균등하다는 점과 특징적인 점들을 발견하여 이후 인권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한국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의식의 개념화에 대한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이후 인권의식 조사표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사 분석은 인권의식을 인지, 정서, 행동의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각 차원의 측정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적절성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등의 지식으로 인권의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조사에서도 유엔의 활동 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비율이 잘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오히려 인권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들이 실제 권리로 인식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인간다운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등을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추상적이거나 레토릭으로 인권이 아닌 일상의 인권에 초점을 둔 조사와 정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운동, 청와대국민청원, sns를 통한 일상에서의 실천 등을 통해 일상에서, 손에 잡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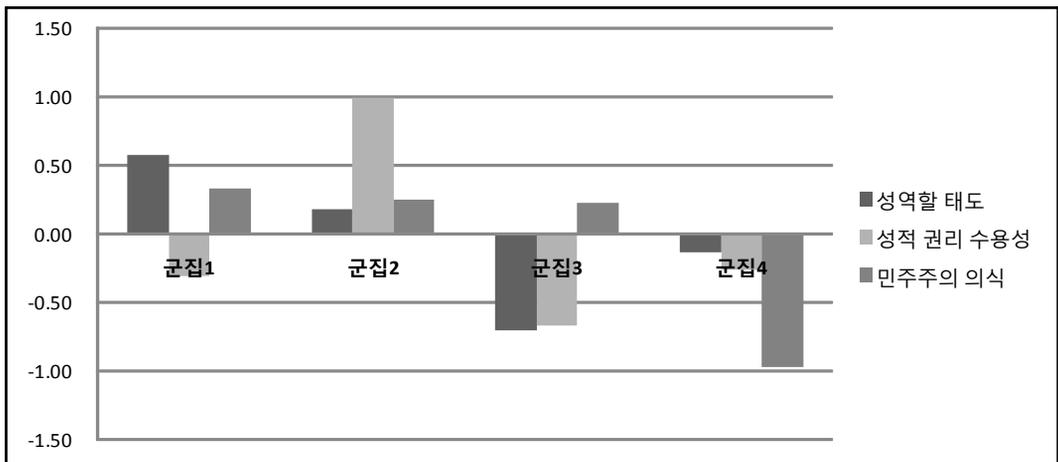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차별, 반민주적 행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이 주는 장점이 있으나, 국제지표들은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공통지표를 추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더해 국내실정에 맞는, 시민의 삶과 가까운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조사에서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주로 직업에 따른 대상으로 정했는데, 누구에게 침해를 경험했는지를 파악 하는데 유용한 것인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판검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에 직접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세계와 노동세계를 중심으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 혹은 구매하는 사람, 가족, 직장동료나 상사 등 일상의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거리와 인권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동의 비율 73.6%로 전반적으로 수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에서 20대 남성, 고학력층에서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나타나는 소위 20대 남성 현상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문에서는 장애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질문하여, 집단별로 수용성이 정도가 다른 점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낙후된 대표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경우에 적극적 조치에 대한 수용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평등이 달성됐다는 착시로 인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저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와 사회적 관용에 대한 의식은 전반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사회적 바람직성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후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결을 포착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제가 2016년에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의 미스매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식분석에서 이런 점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의식과 젠더의식을 조합하여 네 유형으로 균집을 만들었는데, 세 유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나, 구성원의 2/3 이상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더라도,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성을 나타내 민주주의 가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 줍니다. 이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 의식과 젠더의식이 부조응하는 의식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식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서 쟁점별로 하위 개념별로 여러 가지의 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포착해야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김경희, 송리라 (2016),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2010-2014년 웨이브 자료(6차)를 분석, *민주주의 의식: 부의 재분배, 실업자 구제, 자유선거, 양성평등의식 * 성적권리: 사회적 관용의 지표로 낙태, 이혼, 동성애,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미세한 것이지만, 사회적 거리에 대한 질문에서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에는 성 소수자가 없고, 차별받기 쉬운 조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주노동자에게 정주권이나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닌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조사결과에서 젠더와 연령에 따른 해석은 유교문화 환원주의 혹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귀착시키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분석에서 주요 독립변인으로 성별, 연령, 정치성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정 내에서 중고령 여성이 차별받는다라는 인식이 높게 나온 것을 유교문화로 해석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0 남성들의 가정 내의 차별 인지가 높은 이유로 성역할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으로 설명했지만,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역차별 경험 혹은 정서, 2030의 결혼의향이나 지연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 군대를 꼽은 비율이 전 연령, 성별로 높는데, 굳이 50대 여성의 응답에 대해 자녀 군복무 경험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대문화가 사회로 확산되고 그 영향의 주요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찾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법정 의무교육이 있으며,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히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행하므로 내용의 업데이트 문제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넓게 보자면 인권교육은 각론의 법정 의무교육 (예: 폭력예방,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도 있으며, 좁게는 인권교육의 이름으로 일반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권교육을 광의와 협의로 이해하게 될 때 인권개념의 정립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리 개념도 교육주체에 따라 달리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등을 기회의 평등으로, 이를 극복한 더 나은 개념으로 공평성 혹은 공정성으로 교육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2030세대의 화두인 공정성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인권교육의 출발점은 인권을 둘러싼 각축하는 혹은 애매한 개념과 담론에 대한 토론과 잠정적 합의, 사회적 대화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결과가 이러한 출발점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
- 이희길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공석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 <2019 인권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를 리뷰하는 동안 인권 침해, 차별 그리고 쟁점 관련해서 아래 5가지 이슈를 떠올리게 됨
 - 인권개선의 주체, 20-30대 여성의 부상 주목
 - 세대게임: 민주화 경험에 대한 공동의 기억 그리고 2016-17년 촛불 시민혁명의 공동경험
 - 사회적 양극화 강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조직화 위기, 인권침해를 인권의식 제고로 전환하지 못함
 - 국가의 귀환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목, 그리고 ‘정의’ 마스터 프레임으로 수렴을 통한 연대의 조건 마련 그러나 영역 넘어서기는 지체

1. 인권침해

- 20대 여성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 최근 ‘20대 남자’는 문제인 정부의 정책을 여성에게 유리한 편파적 지원이라고 역차별을 강조함; (반론)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못함 (예) 20대 남녀의 사회진출 첫 직장 분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동일한 교육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진입부터 성별에 따른 일자리 분포가 차이가 존재함
- 차별의 문제가 기존의 갑질 문제에서 ‘꼰대’ 문화로 화두가 확대되고 있음. 상호 인정의 자세 부족 (예)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정당한 보상” “강요된 헌신”을 두고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 열려 있고 수평적이라고 나름 자부하는 NGO에서도 심각한 상황

- 정보인권 후퇴, COVID-19로 인해 감시체제의 강화 우려; 생명권, 안전권인가? 자유권, 정보인권인가라는 양자택일로 접근하는 것의 문제
- 요인분석 결과, 세 개요인 것으로 범주화한 것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 (사회권, 평등/참여 그리고 자유권) 20대는 사회권과 평등 참여의 문제에 주목하는 반면에 50대는 자유권을 주목하고 있음; 사회적 성취 안전망을 갖춘 세대, 과거 민주화 과정을 통해 자유권의 중요성을 체감하였기에 이것에 초점을 둔다. 한편 20대의 경우는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된 상황 속에서 사회권의 위기를 마주하며 최근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정보인권,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경험하기에 이를 주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농업/어업 직종의 위의 세 요인에 대해 권리 존중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삼농-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240만 명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의 문제로만 접근하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인식 및 보호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 최근에는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s)로 불리는 이들의 자리를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이들이 정상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외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미혼/비혼, 싱글맘 여성들은 차별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 사다리를 통한 사회이동이 희박한 상황이기에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자신이 부당하게 받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정도로 조직화를 이루지 못함 (개별화/ 파편화)
- 사회권, 특별히 환경권 침해에 대해 20~30대 여성이 높은 인지와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후쿠시마 재앙,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그리고 미세먼지 공포 등으로 젊은 엄마들의 생명, 안전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 주목 (예) YWCA, 정치하는 엄마들,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학습공동체)

2. 차별 경험

- 한국에서 여성과 청년의 차별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 유의미하게 나타남; 이중, 삼중 차별을 주목해야 함, 그 핵심은 빈곤임 (예) ‘이주-여성-농업-노동자’
- 인종, 민족이 차별 요인으로 크게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이주민의 증가 (전 국민의 4/7%)를 간과하고 있는 것임;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차별을 강화한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다문화지원 정책’임 ‘다문화’라는 호칭 자체가 차별의 언어로 굳어짐; 다문화로 ‘통치는’ 정책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복잡한 인종, 전통, 종교, 문화, 생활방식 등을 획일화하는 문제가 드러남;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다문화 정책, 인권, 교육, 진로를 고민하고 적절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제는 단순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못함

3. 인권 쟁점

-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 인권의식을 높이는 더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엄벌주의를 통해 인권침해를 낮추겠다는 접근은 제한된 접근임;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답을 찾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필요함; 손쉬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조건) 만 답이라고 생각 하는 편협한 모습;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자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고 양형도 높이자는 주장 역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한계가 존재함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inclusion)보다 배제, 구별 짓기, 폐쇄성이 30~60대 여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가정에서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함: 남성의 경우 직장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공간에서 이주민을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기여를 인정하게 됨. 그러나 좀 더 부연하면 여성 특별히 주부의 경우는 가족이기주의 (유교 문화)를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임. 학교에서 아이들은 다문화 배경 학생을 친구로 삼는 것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음. 그러나 집에서 부모들의 경계 짓기, 이웃 배척 등을 통해 학교에서 받는 다문화 교육, 인권교육이 가정에서 왜곡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교육의 70%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인권교육은 학교(공교육), 학원(사교육) 그리고 가정의 협력 관계에서 한 목소리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성훈(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

1. 인권통계로 드러난 인권상황의 변화의 의미

- 인권상황의 변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태도에 대한 평가 - 정부 교체와 특정 정책의 변화와의 연계 해석.
- 국제비교의 신뢰성 : 한국의 인권침해 심각성 인지 수준과 미국 및 유럽과의 비교
- '경제적 풍요 추구'와 '의미와 보람 추구'는 대척점에 놓여있는가?

2. 향후 국가인권통계/데이터 활용과 보완 및 개선 방안

-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넘어서 인권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확장.
 - 국가의 인권의무 - 존중, 보호 및 실현 - 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인권정책 개발
 - 인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와의 연계 방안 - 연계 해석 등.
 - 자유권과 사회권의 개별 인권 항목과 이슈에 대한 데이터를 넘어 이른바 제3세대 권리 '연대권, 발전권, 평화권'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
 - 인권통계에 대한 심층적, 객관적 해석을 위한 FGI를 통한 보완과 연계 필요성
- 지차체와 연계해서 지역간 비교 인권통계 데이터 구축

□ K-SDGs 에 대한 인권통계 개발 및 인권통계와의 연계 방안

**시스템 이슈 -데이터, 모니터링과 책임
(Systemic issues-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세부목표 17.8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국가별 상황에 따른 기타 특징 별로 세분화되는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 도서국 등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세부목표 17.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할 지속가능발전의 성과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계획을 기반으로 통계 분야의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한국의 인권통계를 국제인권통계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온라인 툴 개발

○ Universal Human Rights Index <https://uhri.ohchr.org/en>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 덴마크인권연구소

<https://www.humanrights.dk/>

○ Human Rights Measurement Index HRMI

<https://humanrightsmmeasurement.org/>

□ 북한의 인권 데이터 연계 남북 인권통계 기반 조성 (UNESCAP의 북한 데이터 역량 강화 사업)

□ 코이카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인권통계 역량강화 사업 (예: SDG 16과의 연계)

□ 코로나19와 인권 국제비교 - 서울대코로나19국제비교연구팀과 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 16.8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
-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인권상황의 변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희길(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1. 인권통계 구축의 의의

-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임
 -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발전도 필요하고 민주화도 요구되는 것임
 - 국가 사회통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사회는 경제적 성취나 물질적 생활수준에 비추어 ‘국민의 삶의 질’은 이에 비례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OECD BLI, UN의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는 우리사회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평등 심화, 투명성 결여, 인권, 사회통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지 못했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사회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측정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를 다루는 것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이고 집단주의적 경향이 잔존하고 있어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인권침해와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분노와 불만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의 구축 및 사회적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이런 관점에서 향후 인권통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인권통계 발전방안

□ 인권통계 측정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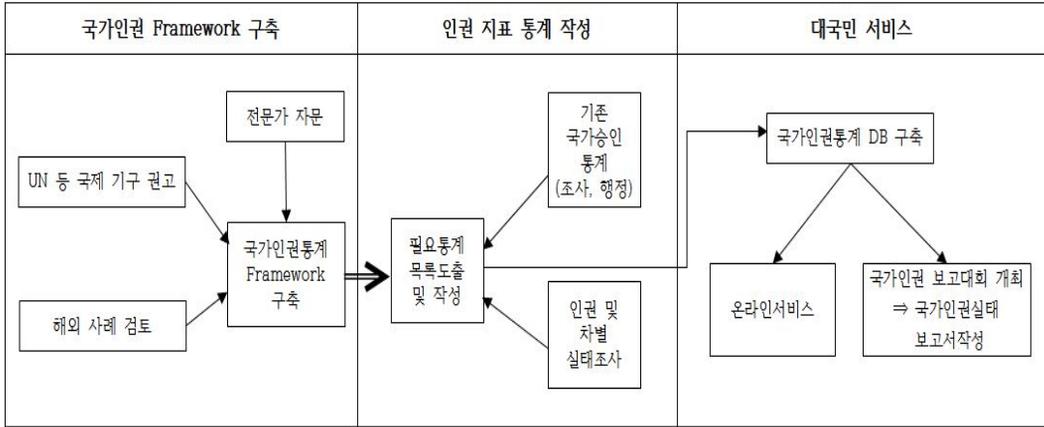
- 취약집단의 인권침해/차별경험 실태 파악 노력
 - 5대 인권 취약집단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한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들 집단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인권위에서 각 집단별 전문조사에 필요한 공통항목 모듈을 일정 주기로 측정 협조
 - *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양성평등(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주민/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통계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 외에도 ‘군인’,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
- 인권지표 지속개발
 - 다양한 부처의 행정통계와 기존 국가승인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권영역 및 취약 인구집단에 걸친 지표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 특히 지표통계는 시계열 축적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3. 자료공개, 분석 및 서비스

- 원자료 자료공개 및 분석
 - 국가승인통계로 ‘19년에 처음 작성된 국가인권실태조사 최종 원시자료를 공개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 및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조사결과가 작성기관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자료를 공개하여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인권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어야 함. 그 방안으로 '인권보고 대회' 논의가 매년 정례화되어 추진되어야 함
- 인권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한 것도 이런 목적을 위한 것임
- 인권지표통계 DB 구축 및 서비스
 - 구축된 인권지표와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인권지표를 구축하고, 국제인권 관련 비교 통계 등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여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권과 차별'에 대한 지표통계(서비스)는 학술연구, 인권교육 등의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인권보고서'의 정례적 작성
 - 국가인권실태조사가 20년에 실시되면 2차 Wave 자료가 축적되고, 또한 인권지표도 보완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인권보고서' 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역별 침해 실태,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쟁점, 인구집단별 인권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한국인권보고서' 정기 발간

< 국가인권통계 작성 및 서비스 방안 >



4. 정책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 보건복지부(아동/장애인), 여성가족부(청소년/여성), 고용노동부 등의 정책부서에서 인권통계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추진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함

3.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센터장)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미리(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센터장)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의 의의

통계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평균 몇 살에 사망하는 지 등 그 사회의 인구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가 필요하고, 특정 사회의 사회적 변화 양상과 사람들의 행위와 사고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통계가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타인을 향한 태도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이해에 근거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권통계가 우선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처음으로 국가인권통계 구축의 기본 틀로서의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 기본 틀에 근거해 ‘19년 국가인권통계를 구축한 것은 한국인권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첫 발을 대딛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통계를 통해 이제 국민의 일상생활 영역별 인권수준과 마이너리티 집단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2. 국가인권통계와 국가인권지표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정의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입각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측정의 기준을 지표라 부른다. 통계가 일관성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지표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가인권통계 작업은 국가인권지표 작업에 앞서 39개의 인권 주제로 분류되는 381건의 통계로 구성되어있다. 국가인권통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지표 작업이 향후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표와 데이터는 상호 보완적인 작업과정이다. 아무리 좋은 지표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지표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다면 그 지표는 무용하며, 아주 많은 통계를 모아두었다고 해도 측정의 일관된 기준으로서 지표체계가 없다면 우리사회의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인권통계와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인권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만들고, 이 체계에 근거해 어떤 인권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자료에서 생산되지 않는 지표의 경우는 실태조사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구축해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표, 지표정의서, 데이터출처, 데이터 생산주기, 분석단위, 데이터유형 등에 대한 일관된 체계정립을 통해 국가인권지표와 국가인권통계가 우리사회의 인권을 모니터링 하는 지속가능한 틀로 자리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취약집단 인권상황 분석 기준에 대하여

이번 국가인권통계보고서에는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비정규근로자, 저소득층 등 6개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여성은 정치참여, 안전, 고용 및 노동조건 등 4개영역에서, 노인은 고용, 빈곤, 학대 및 폭력 피해, 문화생활, 생명권 등 5개 영역에서, 장애인은 고용 및 노동조건, 이동, 포용성 등 3개영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조건, 사회적 거리감 등 2개 영역에서, 비정규근로자는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해서만, 저소득층은 사회적 안전망, 적절한 주거권, 적절한 식생활, 의료접근권,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 권리, 저소득층청소년의 인권존중감 등 7개 영역에서의 각 집단이 가진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취약집단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을 분석하는 기준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공통적인 영역과 취약집단이 갖는 특수성을 분류한 다음 그 기준에 따라 인권상황을 분석한다면 향후 취약집단 중 어느 집단이 가장 취약한 집단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약집단별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 기준이 설정된다면 이의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evidence_based policy)을 마련하는 데 아주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 부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가인권통계 표출 방식에 대하여

2년에 걸친 국가인권통계 구축 과정은 체계적인 분류 프레임워크에 근거해, 국가통계를 활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 해 작성되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통계는 국민들이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권 지향의 시민’으로 변화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한 눈에 보는 한국의 인권’이라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발간물(웹진이든 인포그래픽 발간물이든 유형에 상관없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독성있는 자료, 표준화된 틀, 일정한 주기성 등이 반영된 발간물 형태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각 부처에서 국가인권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된 국가인권통계와 국민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정부부처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맞춤형 보고서’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 부처가 함께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상호 소통의 원활성에 기반 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사회학 박사)

1. 국제인권지표의 선정에 대한 의문 및 제안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이하 ‘발표문’이라고 함) 초반에는 국제인권지표를 나열 하면서 이 중 한국의 순위(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Our World in Data’에서 추출한 Human Rights Protection Score, Human Rights Violations Score 등과 HRMI 인권지수에서 한국의 위치를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토론자의 과문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각 통계자료의 선정 이유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위 각 자료들이 어느 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어떤 평가를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추가되어야 여러 국제지표 중 위 지표를 사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Human Rights Protection Score, Human Rights Violations Score에서의 한국 순위가 중위권에 머무는 점과 HRMI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양호’하게 확인되는 점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아쉬운 점이다. 발표문에 기재된 것과 같이 “HRMI가 시범적으로 작성한 지수여서 비교 대상국의 수가 많지 않아 한국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HRMI 지표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인권통계의 ‘축적’을 시작함에 있어서 국제지표와의 계속적 비교를 통한 추세확인이 필요한데, 핵심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몇 가지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발표문이 “한국과 OECD 국가의 인권지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동영역(근로시간, 산업재해사망률), 사회안전망영역(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의료비지출) 등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영역을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한국 및 국제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추세’에 있어서는 지표확인을 넘어 지표의 변동이 있었던 사례를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정책변화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인 국제비교 작업이 될 것이다.

2.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 문항의 배제 제안

인권인식 조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점 중 하나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확인되는 문항을 배제하는 설계이다.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거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답(사회적 승인이 높은 답)을 선호하는 경향은 인권과 같은 ‘규범’에 대한 인식 조사에 있어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을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2013년, 2018년 모두 9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 ‘외국인 노동자’에 있어서 “외국인 이민자 및 노동자를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도 2018년 94.3%가 긍정적 응답을 한 것이 있는데, 이는 모두 같은 시기 이루어진 조사에서 확인되는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배타적 태도와 모순되는 결과이다. 발제문에서는 이를 포용적 인식과 실천 사이의 ‘격차’라고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분석해야 할 격차라기 보다는 문항 자체가 가진 한계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분석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문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사회적 거리감’은 이번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장애인의 경우 옆집이웃과 친구에서 모두 85% 이상의 높은 긍정비율이 확인되었으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80% 이하의 긍정비율이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실태조사의 경우 인식변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인권통계에 대응하는 인권의식조사의 필요성

주간지 시사인의 2020. 6. 9.자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권위주의자입니다’ 기사는 KBS와 시사인이 공동조사한 문항을 소개하였는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면 안된다’,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다’와 같은 문항이 존재하였다.

‘국가인권통계’와 ‘국가인권실태조사’가 별개의 조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통계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의료비지출이 OECD국가 중 현저히 낮은 이유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 필요한데, 앞서 확인한 시사인과 KBS의 조사문항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피하면서도 가치관의 분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인식조사는 규범적이거나 당위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문항이 많아 보이기에 이를 탈물질주의 지표와 같이 가치 대립적인 선택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보인다.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한 사회의 인권 문제를 통계로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사실 인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권이 인류적 가치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에서 통계나 숫자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즉자적인 감각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인권이라는 가치가 규범적으로 정립되고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문제를 통계적으로 계량화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권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다. 인권통계 역시 이러한 목표에 복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권 통계의 의미를 따져보면 대략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점이 취약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량화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오늘날 인권이 정치화되고, 인권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권 개념이 남용되고 있어, 인권이 극도로 ‘상대화’되고 있다. 어떤 관점을 택하냐에 따라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계량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권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난맥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으로 국제비교를 위해서다. 국제인권공동체는 그동안 세계 인권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런데 국제인권의 차원에서도 국가별 사정을 극단적으로 내세우고 상대화된 가치판단 기준이 난무하면서 일률적인 비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을 계량화하여 국가별, 항목별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제기구와 국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인권지수를 개발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국가인권통계를 구축하려는 것도 이러한 취지일 것이다. 한 편으로는 한국의 인권 수준을 평가하고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인권을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일테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인권통계의 구축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국가인권통계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미 관리되고 있는 수많은 통계 중에 인권통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적지 않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을 모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집약시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통계의 구축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만 기존의 통계자료들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축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한계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통계의 분류와 목록 자체가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의 모든 목록들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량화된 인권의 목록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통계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이 제시하는 381개의 통계 목록에는 여러 한계가 엿보인다. 실제로 381개의 통계를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보인다. 먼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통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집회의 자유 2건, 결사의 자유 1건, 사상의 자유 1건, 종교의 자유 1건, 양심의 자유 0건, 표현의 자유 0건이다.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 비해 항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국가안보(예: 9.11 테러, IS 등)나 사회적 재난(예: 코로나19 등), 사회복지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후퇴하는 것은 소위 '선진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 사회안전망, 노동, 보건/의료, 문화, 환경 등에 대한 통계들은 기존의 자료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 비교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통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들은 이미 해당 분야에서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국가인권통계'라는 이름으로 관리되어 공표되는 것이 의미는 제한적이다.

일국의 인권/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가면 평등/차별의 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부각되는 일이 많다. 제시된 국가인권통계의 항목에서는 '평등권'이라는 중분류 하에서 '정치참여의 평등', '고용에서의 평등', '노동조건의 평등', '보건서비스의 평등', '교육기회의 평등', '다양성 존중'이라는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대체로 경제적 격차와 노동영역에서의 지위(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문제는 잘 포착된 편이나,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자, 난민 등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소수자 차별의 문제는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성 존중 항목은 주로 포용도나 거리감 등에 관한 통계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회적 차별의 현실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현장의 인권활동가들에게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를 묻고 어떠한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묻는다면, 아마 이 통계가 다루고 있는 항목하고는 상당히 다를 대답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통계 작업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인권 문제와 국가인권통계가 보여주는 인권 문제의 간극이 어디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끊임 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개별 항목의 통계를 구축할 때 인권지향적 관점이 적절히 투영되었는가의 문제다. 통계 작업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다.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통계를 왜곡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향이 통계 구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인권통계 구축과정에서 ‘국가인권실태조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는 다른 경로로 수집되는 국가인권통계의 불충분한 부분들을 충실히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인권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서는 인권취약집단에 대한 조사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의 인권 의식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인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있어, 이러한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라는 용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국민들이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정부가 인권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식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이슈에 대해서는 사형제, 범죄피의자 얼굴공개, 국가보안법, 학생체벌, 난민 등의 문제를 다뤘는데, 사형제 폐지 반대가 86.1%,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이 95.1%,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이 77.4%, 학생체벌 허용이 66.3%, 난민수용반대가 62.5%가 나왔다. 매우 암울한 결과이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러한 설문조사는 어떤 판단에 따라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를 선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질문한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인권정책에 부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사형제, 범죄피의자, 국가보안법, 체벌, 난민 등의 이슈를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물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얼마든지 예상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면 대다수 정치인들은 늘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핑계로 차일피일 인권 개선의 책무를 도외시해왔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통계조사의 결과는 정치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인권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뻔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공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인권통계는 정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러한 현실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천명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통계를 조작하거나 현실을 호도하는 작업을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다만 ‘전략’은 필요하다.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바꿀 수도 있고, 아예 설문조사 대상 이슈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원점에서 재고해볼 필요도 있다.

국가인권통계의 구축은 통계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통계 구축의 목적은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결과적으로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 ‘국가인권통계를 구축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며, 과연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 기여하는 것일까’, 통계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 발행일 | 2020년 6월 16일

| 발행인 | 최 영 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793 | F A X | (02) 2125-0913

| 웹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 F A X | (02) 2278-1992

ISBN 978-89-6114-757-6 9331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